정책연구보고서 2024-1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Designating Sorokdo as Cultural Heritage

박일향 Park, Ilhyang
신치후 Shin, Chihoo
손은신 Son, Eunshin

정책연구보고서 2024-1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Designating Sorokdo as Cultural Heritage

지은이 박일향, 신치후, 손은신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4년 06월 10일, 발행: 2024년 06월 14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9-11-5659-462-8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박일향 부연구위원
연구진	신치후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최소정 조사원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	김정동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 이연경 연세대학교 교수 김경완 성균건축도시설계원 연구소장 박진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기획조정실장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장성곤 온공간연구소 과장

연구요약

Summary

이 연구는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에 쟁점이 되었던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의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소록도(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이며,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문화유산 관련 법제도를 검토의 범위로 삼았다. 문헌조사, 소록도 현장답사 및 관계자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대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록도 실정에 적합한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의 제2장에서는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을 정리했다. 소록도는 섬 전체 면적의 97%를 보건복지부가 소유하며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하는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 병원본관을 중심으로 병사구역과 관사구역으로 구분되며 환자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록도 내 지정 · 등록된 17건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학예연구사 1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지원팀이 담당하며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소록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의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안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 유형을 사적으로, 관리주체를 통합관리조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 애생원은 사적 지정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지정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화조사 추진이 미흡한 소록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의 제4장에서는 관계자 면담 및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화유산 지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유형별 특징 및 소록도 건축물 분포 현황의 분석을 통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 방안, 현행 문화유산 제도 특성을 반영한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의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의 특징 분석과 선행연구, 관계자 면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기되었던 대안들의 검토를 거쳐, 통합관리조직의 구성을 제안했다. 명칭에 대해서는 관계자간 1차적인 합의에 도달한, 사적 지정 신청 당시의 명칭을 문화유산 명칭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병원 운영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문화유산 지정 관련 로드맵을 제안했다. 지정범위과 관련해서는 단기에는 서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및 이외 구역에 대한 조사 · 연구, 중기에는 구북리, 남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병원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이외 구역에 대한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 · 등록, 점단위 문화유산의 추가 등록 및 승격 지정, 장기에는 소록도 섬 전체에 대한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 · 관리체계 구축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단기에는 국립소록도병원의 문화유산 관리 및 박물관 기능 강화, 중장기에는 통합관리조직 및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한센' 용어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큰 현황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한센병 관련 시설로서의 특징을 부각할 필요가 생겼을 때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의 제5장인 결론에서는 소록도를 통해 살펴본 문화유산 보존 · 관리의 시사점으로서 국유문화유산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 관리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서술했다.

주제어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국유지, 문화유산, 국가유산, 세계유산

차 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차별성 9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 13

1. 소록도의 기본현황 13
2. 소록도 관련 여건 변화 29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 검토 33

1. 면단위 문화유산 관련 제도 현황 33
2.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55
3. 국내외 사례 검토 65
4.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종합 81

제4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제안 83

1.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83
2. 지정범위의 대안 검토 100
3. 관리주체의 대안 검토 122
4. 명칭의 대안 검토 132
5.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로드맵 제안 135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3

SUMMARY 14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문화유산기본계획의 활용 관련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1
[표 1-2] 근현대 조성된 문화유산의 구분 2
[표 1-3] 소록도 관계자별 역할과 입장 4
[표 1-4] 본 연구와 관련된 문화유산 법률의 주요 제·개정 사항 7
[표 1-5] 선행연구 현황 10
[표 2-1] 소록도 내 부지 소유자 현황 15
[표 2-2]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환자 현황(2023년 기준) 17
[표 2-3] 소록도의 주요 공간구성 19
[표 2-4]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거주방식 19
[표 2-5] 소록도 내 건축물 현황(2020년 기준) 20
[표 2-6] 소록도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현황 21
[표 2-7] 소록도 내 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시행내역 24
[표 2-8] 소록도(소록도갱생원)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판단 28
[표 3-1] 국가유산 체계에서의 문화유산 분류 33
[표 3-2] 사적 지정 현황 35
[표 3-3] 근대사적 지정 현황 35
[표 3-4] 사적 보호구역 지정 기준 38
[표 3-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역별 특징 38
[표 3-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 및 건축 허가 여부 결정 절차 39
[표 3-7]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예시 40
[표 3-8] 국가유산청장 및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 41
[표 3-9]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현황 및 소록도와의 비교 44
[표 3-10]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46
[표 3-11]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48
[표 3-12] 국유재산의 종류 49
[표 3-13]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50
[표 3-14] 사적 명칭 부여 기준 53
[표 3-15]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의 주요 내용 55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16] 가치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른 조사 결과 58
[표 3-17]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등록범위(안) 60
[표 3-18] 소록도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의 주요 내용 62
[표 3-19] 보존·관리 종합계획 및 사적 지정 신청 연구에서 제시한 관리주체 비교 64
[표 3-20] 애생원 장래 구상 67
[표 3-21] 역사적 장소의 구성요소 70
[표 3-22] 지정범위에 따른 소유·관리(안) 70
[표 3-23]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관리 현황 74
[표 3-24] 군산 내항 철도의 관리 현황 76
[표 3-25] 한국의 서원의 관리 현황 78
[표 3-26] 지정범위 관련 제안의 정리 81
[표 3-27] 관리주체 관련 제안 및 사례의 정리 82
[표 4-1] 관계자 면담 일정 84
[표 4-2] 기존 문화유산 제도의 특징과 쟁점 95
[표 4-3] 문화유산 유형 및 지정범위 관련 의견 종합 99
[표 4-4] 문화유산 관리주체 및 명칭 관련 의견 종합 99
[표 4-5] 문화유산 유형별 특징 비교 103
[표 4-6] 서생리의 주요 현황 106
[표 4-7] 구북리의 주요 현황 107
[표 4-8] 남생리의 주요 현황 108
[표 4-9] 중앙리의 주요 현황 108
[표 4-10] 녹생리의 주요 현황 110
[표 4-11]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의 주요 현황 110
[표 4-12] 관사구역의 주요 현황 111
[표 4-13] 구역별 특성에 따른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 방안 114
[표 4-14] 구역별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 방안 117
[표 4-15]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 119
[표 4-16] 지정범위의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0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7] 지정범위의 대안 비교표 121
[표 4-18]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소록도 관리주체 대안 및 주요 내용 124
[표 4-19] 관련 사례의 관리주체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125
[표 4-20] 소록도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주체 대안 검토 126
[표 4-21] 시기별 관리주체 설정 방안 128
[표 4-22] 관리주체의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1
[표 4-23] 지역명이 생략된 사적 명칭 사례 132
[표 4-24] '근대유산' 관련 용어의 특징 133
[표 4-25] 문화유산 명칭 부여 방안 134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소록도 관련 관계자 — 8
[그림 1-2] 연구흐름도 — 12
[그림 2-1] 녹동항에서 바라본 소록도 전경 — 14
[그림 2-2] 소록도 내 구역 배치 및 건축물 분포 — 18
[그림 2-3] 소록도 내 문화유산 배치도 — 22
[그림 2-4] 국립소록도병원 조직도 — 23
[그림 2-5] 소록도 방문객 통제 현황 — 25
[그림 3-1] 근대 조성된 사적 및 근대사적의 예시 — 36
[그림 3-2]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주요 보존대상 위치 — 59
[그림 3-3] 일본 애생원의 구역도 — 66
[그림 3-4] NPO 법인 한센병 요양소 세계유산 등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주요 활동 — 68
[그림 3-5] 애생원 보존·활용 기본방침 — 69
[그림 3-6] 애생원의 사적 지정범위(안) — 71
[그림 3-7] 지정범위 3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별한 중요 시설물 배치도 — 72
[그림 3-8]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관련 기관별 업무 수행현황 — 75
[그림 3-9]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전경 — 75
[그림 3-10] 군산 내항 철도의 관련 기관별 업무 수행현황 — 76
[그림 3-11] 군산 내항 철도의 전경 및 배치 — 77
[그림 3-12] 9개 서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 80
[그림 4-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마스터플랜(일부) — 101
[그림 4-2] 소록도 건축물 분포 현황 — 105
[그림 4-3] 동생리의 사용구역과 폐쇄구역(동생리1구) — 113
[그림 4-4]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주요 로드맵 제안 — 13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차별성
4. 연구흐름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① 근현대 조성된 건축물, 시설물, 기념물 등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 존재

-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현대 조성된 공간은 현재도 기능을 유지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질 수 있음

[표 1-1] 문화유산기본계획의 활용 관련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문화유산 자원화를 통한 가치 창출**	**친근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공감 확산**
•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다양화, 브랜드화 • 친절하고 편리한 문화유산 향유 환경 조성 • 디지털 시대를 여는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 자원 발굴 • 지역 재생 및 발전의 동력으로서 문화유산 • 문화유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조성	• 문화유산 교육의 양적 ·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제작 · 보급 •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문화유산 교육

출처: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청, p.20.

- 기존 문화유산 체계에서는 근현대 조성된 건축물을 등록문화유산(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으로 관리해왔으며,[1] 면단위로는 일정 영역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지원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이중에 등록문화유산 ·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활용을 전제로 하며, 근대사적은 보존 가치가 높은 우수한 건축물로 한정되어옴
- 따라서 활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건축적 완성도는 떨어지나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장소에 대한 보존 · 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 근현대 조성된 문화유산의 비중이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문화유산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여 문화유산 보존 · 관리정책을 보완해갈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적 지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소록도를 사례지로 선정하여,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함

[표 1-2] 근현대 조성된 문화유산의 구분

대상	건축물		장소
문화유산 유형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근대역사문화공간)
특징	• 지정문화유산 •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법적 기준 없음)	•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것 중에 보존과 **활용** 조치 필요한 건축물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재생사업

출처: 연구진 작성

② 소록도의 사적 지정이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소록도는 병원, 거주공간, 문화유산으로서 다차원적 성격을 가짐[2]

-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병원(국립소록도병원)으로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1916년에 설립된 소록도자혜의원을 모태로 하며, 현재까지 국내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짐
  - 근대 의료공간, 한센인 격리 수용소, 한센인 강제노역과 생존권 투쟁의 현장, 한센인 마을, 국제적 봉사실천의 장소 등 다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1) '근대사적'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지정문화유산인 '사적'에 포함되나, 역사적 장소(터, 공간)가 아닌 개별 건축물로 한정되어왔으며 등록문화유산보다 보존 가치가 높다고 받아들여짐

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p.3-4.

-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건물과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음. 의료시설은 소록도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리에 집중 배치되며,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병원본관의 치료병동에 입원하거나 소록도에 산재한 마을의 생활병동에 거주함
- 기존 한센병 환자의 고령화와 신환자 발생이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하여, 병원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임
  - 소록도 환자 수의 감소에 따라 미사용 건물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소록도 내 문화유산 관리의 쟁점

- 보건복지부는 소록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97%)을 가지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이 병원 운영 및 소록도 관리 전반을 담당함
- 현재 소록도 내에는 시 · 도지정문화유산(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1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6건이 위치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립소록도병원이 해당 문화유산 대부분의 소유자 및 관리자임
- 그런데 문화유산의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지자체 간 역할에 따른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해옴
- 소록도의 소유자(관리자)인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는 환자의 치료, 보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문화유산의 개방 · 활용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록도 사적 지정 과정에서의 쟁점[3)]

- 2016년의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소록도의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처음 제기됨. 이후 개별 건축물 중심 보존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이 참여하는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협의체'가 구성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함
  - 소록도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사업을 통해 신규(우선)추천 목록으로 선정됨[4)]

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p.5, 11.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단계로서 고흥군이 소록도를 면단위 문화유산 관리체계인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2022년 2월에 고흥군이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

- 이에 국가유산청은 소유자인 보건복지부에게 사적 지정 동의를 요청함. 보건복지부는 사적 지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신청내용은 고흥군의 연구용역 결과이므로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에 대한 재검토 후 최종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2년 8월에 조건부 동의한 상태로 현재에 이름

※ 고흥군의 소록도 사적 지정 신청서 주요 내용 (2022.02.28.)

- 신청종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 문화재명: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
- 지정범위: (시간) 1916년 자혜의원 개원~현재, **(공간) 소록도 섬 전체**
- 관리단체: **국립소록도병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2). 소록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복지부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1.

[표 1-3] 소록도 관계자별 역할과 입장

관계자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고흥군)
성격	소록도 소유 · 관리		문화유산 보존 · 관리 · 활용	
역할	소록도 부지 및 건물 소유	병원 운영, 소록도 관리	문화유산 지정 · 등록 국고보조사업 지원	문화유산 지정 · 등록 신청 국고보조사업 시행
입장	일반인 출입 제한 필요		문화유산 활용 도모	관광 활성화 도모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

□ (지정범위) 소록도 섬 전체를 사적 지정 시 현상변경 규제로 인해 병원 운영 등에 제한 발생 우려[5)]

- 국립소록도병원이 병원 기능 확대 등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섬 전체를 사적 지정 시 병원 기능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발생함

- 거주 환자들의 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병원 기능을 유지 또는 변화하기

4)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pp.156-157.

5)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p.5-6.

위해, 지정범위를 병원 건물 및 주거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관리주체) 문화유산 지정 시 관리·보호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관리주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6)]

- 국립소록도병원을 관리주체로 지정 시 환자 치료 ·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역할이 상충할 우려가 있고,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 예상됨
- 관할 지자체를 관리주체로 지정 시 문화유산 활용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소록도 개방, 개발압력에 의해 소록도 고유 기능과 정체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협의체 구성 등 지속가능한 관리주체 설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칭)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의견 수렴 후 문화유산 명칭 결정 필요

- 소록도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명칭에 '고흥', '소록도병원', '한센' 등 주요 용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소록도 문화유산의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에 대한 각 대안의 특징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제안

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p.5-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소록도(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3,782,099㎡)를 대상으로 함

□ 법제도 검토의 범위

- 2024년 시행 예정인 문화유산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검토를 수행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로 개정되어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임. 보건복지부가 2024년 하반기에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의 제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7]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문화유산법」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함
  - 2024년 2월 현재 법제처를 통해 2024년 5월, 7월, 8월, 9월, 11월, 2025년 1월, 2월 시행 예정인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에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음
  -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으며, 신설된 사항으로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지원(2024.07.24. 시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 시행(2024.11.01. 시행) 등이 있음
  -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서 등록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관련 사항이 정비됨(2024.09.15. 시행)
  - 본 연구에서는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으로서 사적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따라서 2024.11.01. 시행일 기준의 「문화유산법」 및 2024.09.15. 시행일 기준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연구의 범위로 삼음

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6.

[표 1-4] 본 연구와 관련된 문화유산 법률의 주요 제·개정 사항

법령명	호(공포일)	주요 제·개정 사항		시행일
문화유산법	제19590호 (2023.08.08.)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유산 관련 개별 법률 정비		2024.05.17.
	제20077호 (2024.01.23.)	제2조(정의)	• 보호구역 정의 변경 (보호→보존·관리·정비)	2024.07.24.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비용 보조 신설	
	제19704호 (2023.09.14.)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관련 규정 삭제·정비		2024.09.15.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 문화유산위원회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변경, 해제 관련 심의 추가	
	제19796호 (2023.10.31.)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2024.11.01.
	제20286호 (2024.02.13.)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	2025.02.14.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9702호 (2023.09.14.)	제3장(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활용계획 수립, 특례, 지원, 관리	2024.09.15.

출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일부개정; 법률 제20077호, 2024.01.23. 일부개정; 법률 제19704호, 2023.09.14. 일부개정; 법률 제19796호, 2023.10.31. 일부개정; 법률 제20286호, 2024.02.13.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문화유산 관련 법제도 및 소록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 소록도 현장답사

- 소록도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답사

□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고흥군 등 관계자 면담
-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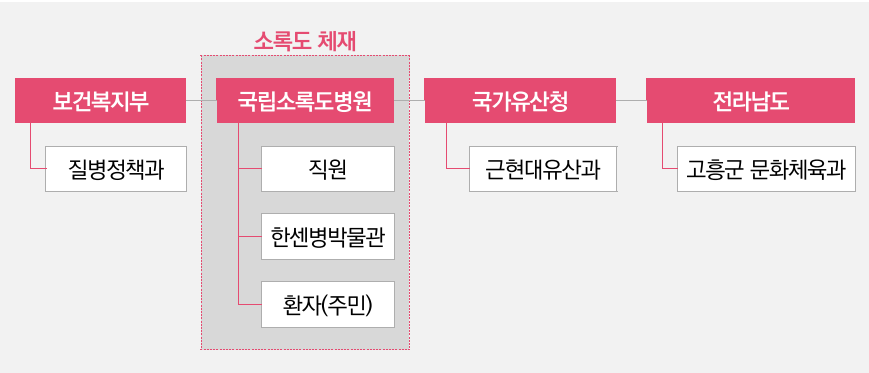

[그림 1-1] 소록도 관련 관계자
출처: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현황

□ 역사적 변천 관련

- 소록도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표 1-5]의 [선행연구1]을 들 수 있음. 관련 사료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록도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시기 구분을 하고, 소록도의 공간, 주체, 행위별 특징을 도출해냄으로써, 역사적 장소로서 소록도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함

□ 사적 지정 관련

- 소록도 사적 지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는 [선행연구2]와 [선행연구3]을 들 수 있음. 위 연구를 바탕으로 고흥군이 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
- [선행연구2]는 소록도 섬 전반의 역사문화환경,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의 지정범위, 관리주체의 대안을 제시함. 「문화유산법」에 근거한 사적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해당하는 [선행연구3]은 [선행연구2]의 주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적의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을 제시함
- [선행연구2]와 [선행연구3]은 이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3장에서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함

□ 협의체 구성 관련

- [선행연구4]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자 소록도를 시범사례로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식, 의사결정 절차를 제안함
- 위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 · 활용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해 문화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리주체를 제안하는 데 협의체 구성의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병원 발전방안 관련

- [선행연구5]는 국립소록도병원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보건 의료 분야' 및 '문화유산 분야'로 구분하여 각 선행연구 및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기획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기적 관점에서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선행연구2]와 [선행연구3]에 대부분 기대고 있음

[표 1-5] 선행연구 현황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제목: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 연구자(연도): 장성곤 외 (2018) - 목적: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특성 도출	- 문헌고찰 - 현장조사 - 인터뷰	- 시대별 변천과정 분석에 따른 7개의 시기 구분 - 소록도 주요 시설물 · 구조물 현황 - 공간별, 주체별, 행위별 관점에 따른 특성 도출
	2	- 제목: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연구자(연도):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 목적: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리, 중장기 종합계획 · 보존활용방안 마련	- 문헌고찰 -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자원 조사	- 소록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안 - 400개소 건축물, 59개소 비건축물의 가치 등급화 - 문화재 지정 및 등록 범위(안)(사적, 등록문화재, 사적+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등록문화재) 제시 - 세계유산 등재 고려하여 섬 전체 사적 지정 제안
	3	- 제목: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연구용역 - 연구자(연도): 지역유산연구원(2021) - 목적: 사적 지적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 문헌고찰 - 해외 사례조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작성 - 향후 한센병 환자 영역 축소, 외부인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소록도의 역사성, 장소성 유지를 위해 섬 전체 사적 지정 제안
	4	- 제목: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 연구자(연도): 권영란 외 (2022) - 목적: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제안	- 문헌고찰 - 해외 사례조사 - 대국민 인식조사 - 시범사례 분석(소록도)	- (소록도 관련) 이해관계자별 건축유산 보전 · 활용, 소록도 개방과 관광화, 문화재 지정 및 등록에 대한 입장 파악 및 갈등양상 예측 - 의사결정체계(주체별 역할, 협의체 운영방식, 의사결정 절차) 제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 제목: 국립소록도병원 마스터플랜 기획연구 – 연구자(연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3) – 목적: 병원 기능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의 근거 마련 및 방향성 제시	– 문헌고찰 – 해외 사례조사 – 관계자 의견수렴	– 소록도병원의 병원 현황, 기능, 역할 분석 – 소록도병원, 소록도 발전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여론동향 분석 – 소록도병원 마스터플랜의 필수 연구 영역 제시
본 연구	– 제목: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 목적: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에 대한 각 대안의 특징 검토 및 실행방안 제안	– 문헌고찰 – 국내외 사례조사 – 관계자 의견수렴	–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의 대안 검토 및 실행방안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에 집중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도 분석,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대안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록도 실정에 적합한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4.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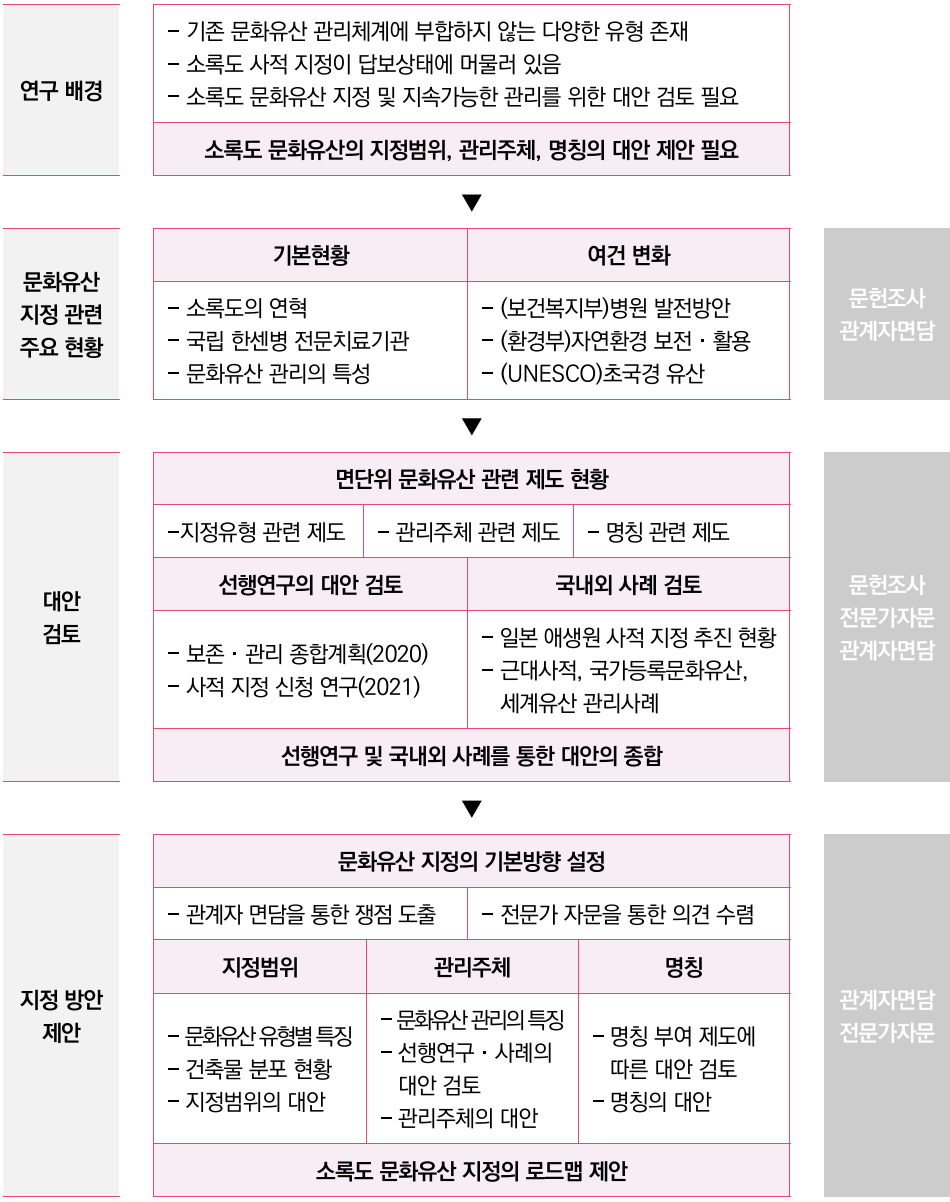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

1. 소록도의 기본현황
2. 소록도 관련 여건 변화

1. 소록도의 기본현황

1) 소록도의 연혁[8)]

- 1916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를 격리 · 수용하기 위한 특수 병원인 소록도자혜의원을 설립(「조선총독부령 제7호」)
  - 1916년 소록도자혜의원, 1934년 소록도갱생원, 1949년 중앙나요양소, 1951년 갱생원, 1957년 소록도갱생원, 1960년 국립소록도병원, 1968년 국립나병원, 1982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명칭 변경[9)]
- 1916-1932년(형성기): 소록도자혜의원 설립 이후 한센병 환자 수용소로서의 기반 조성
  - 1917년 5월 17일 소록도자혜의원 개원(국립소록도병원 개원기념일)
  - 조선총독부가 소록도 서남쪽으로 원주민 토지 매수하여 병사구역(환자구역)인 구북리, 관사구역(직원구역)인 서생리 조성. 수용 환자 증원 위해 1926년에 토지 추가 매수하여 남생리 조성

8) 장성곤,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4), pp.106, 110-115.

9)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https://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menu_cd=06_03&depth=hi(검색일: 2024.02.14.)

- 소록도 선착장(녹동항 인근)을 통해 이동

- 1932-1945년(확장기): 조선총독부와 제4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周防正季) 주도하에 3차에 걸친 대규모 시설 확장공사 진행. 환자들의 건설 강제동원 실시. 현재 소록도의 공간적 틀 형성
  - 관사구역을 소록도 동쪽으로 이전. 서생리는 병사구역에 편입
  - 병사구역으로 동생리, 중앙리, 신생리 조성
  - 선착장 추가 건설, 중앙공원 조성
- 1945년-현재: 해방 이후 원장이 한국인으로 전환. 병원 운영의 혼란기를 거쳐 제도 및 생활환경 개선, 시설 개보수 진행되어 한센병 치료체계(치료, 보건교육, 사회 복귀, 연구, 의료지원 등)를 갖춘 국립병원으로 정착
  - 병사구역인 장안리, 음성환자를 수용하는 구새마을, 신환자 수용하는 녹생리 조성
  - 1963년 환자 전용 선착장인 제비선창 건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을 계기로, 한센병 환자 차별의 증거인 제비선창 폐쇄
  - 2009년 소록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 선착장 폐쇄. 직원들의 관사 거주 이외 출퇴근 가능해짐. 환자들의 육지와의 소통, 관광객 유입 등 생활 변화
  - 1996년 소록도 개원 80주년(소록도생활자료관 개관), 2016년 소록도 개원 100주년(한센병박물관 개관)
  - 일반인 진입 허용구역은 중앙공원으로 한정되어왔으며, 한센병박물관 개관 이후 박물관까지 확장. 중앙공원은 1980년대에도 인근 주민들이 소풍 오는 일종의 유원지로 인식[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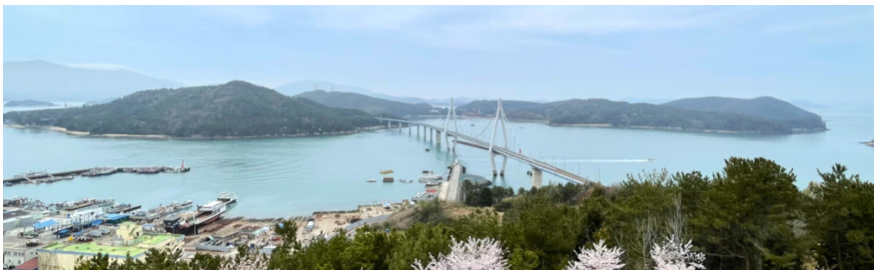

[그림 2-1] 녹동항에서 바라본 소록도 전경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4.02.)

10)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 면담(면담일: 2024.04.01.)

2)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소록도의 특성

□ 국유지로서 섬 전체 면적의 97%를 보건복지부 소유, 국립소록도병원 관리[11)]

- 전체 면적의 약 97%가 보건복지부 소유 국유지
  -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소록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96.92%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니며, 관리는 국립소록도병원이 담당
  - 전체 부지 3,782,099㎡(1,999필지)가 국 · 공유지로 관리

※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성

[표 2-1] 소록도 내 부지 소유자 현황

소유자	면적(㎡)	비율(%)	관리자
보건복지부	3,665,483	96.92	국립소록도병원
국토교통부	64,215	1.70	-
산림청	24,935	0.66	-
전라남도	22,417	0.59	-
해양수산부	1,902	0.05	-
미상	3,147	0.08	-
합계	3,782,099	100.00	

출처: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근대유적 사적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7; 국립소록도병원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섬 전체가 국립병원으로서, 국내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

- 국립소록도병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최초 설립되었으며(소록도자혜의원), 현재 설치 근거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따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이하 생략)

11)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근대유적 사적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3, 11-12.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336호, 2024.03.26. 일부개정)

- 한센인에 대한 정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름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65호, 2019.01.15. 일부개정)

-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는 환자(한센인입소자) 370명 거주 중[12]
  - 2023년 기준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환자는 370명으로 평균연령은 78.4세이며, 특히 65세 이상이 345명으로 93.2% 차지. 환자 대부분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한센병 합병증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44명으로 집계

  ※ 이밖에 매년 소수의 환자가 국립소록도병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 국내 한센병 환자 수는 총 8,109명으로, 거주형태에 따라 재가 65%, 정착촌 27%, 국립소록도병원 5%, 생활시설(성나자로마을, 애양평안요양소, 안동성좌원, 대구애락원, 산청성심원) 3%로 구성[13]

1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2.

13) 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 p.44.(2024.04.29.);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 생활시설 및 정착마을. http://www.khwa.or.kr/sub.asp?maincode=482&sub_sequence=531&sub_sub_sequence=(검색일: 2024.04.30.);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면담(면담일: 2024.04.01.)

-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환자는 치료병동에 입원하거나(95명), 생활병동(마을)에 거주하며 외래진료 이용(275명)

- 이밖에 직원 214명(복지 · 행정인원 80명, 의료 134명), 기타 직원 가족 및 종교인 등 거주

[표 2-2]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환자 현황(2023년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자 수		498명	486명	465명	441명	402명	370명
2023 연령분포 (평균 78.4세)	계	59세 이하	60-69	70-79	80-89	90-99	
	370명	4명	54명	143명	139명	30명	
장애정도 (WHO기준)	계	Ⅰ	Ⅱ	Ⅲ	Ⅳ	Ⅴ	
	370명	14명	18명	78명	178명	82명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2.

□ 소록도는 병원본관을 중심으로 병사구역(환자구역)과 관사구역(직원구역)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500여 개소 분포

- 병원본관을 중심으로 섬 서쪽의 '병사구역(환자구역)'과 동쪽의 '관사구역(직원구역)'으로 구분

  - 병원본관은 소록도 중앙에 위치

  - 병사구역(중앙리, 녹생리, 신생리, 새마을, 남생리, 구북리)의 각 마을은 기본적으로 병사, 사무실, 치료실로 구성되며,[14] 이밖에 종교시설 등 위치. 업무시설은 중앙리에 많이 조성됨[15]

  ※ 서생리, 구새마을, 장안리는 폐쇄됨

  ※ 1922년의 기독교 종교집회가 소록도 교회의 시작으로 간주되며,[16] 주민 전체가 대부분 교인으로 소록도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17]

  - 관사구역: 주로 주거시설(관사)로 구성되며, 병원 직원 대부분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음.[18] 이밖에 종교시설, 초등학교 등 위치

14)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2.)

15)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p.207-208.

16) 김재현. (2016).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1916-2016.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p.59.

17)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면담(면담일: 2024.04.02.)

18)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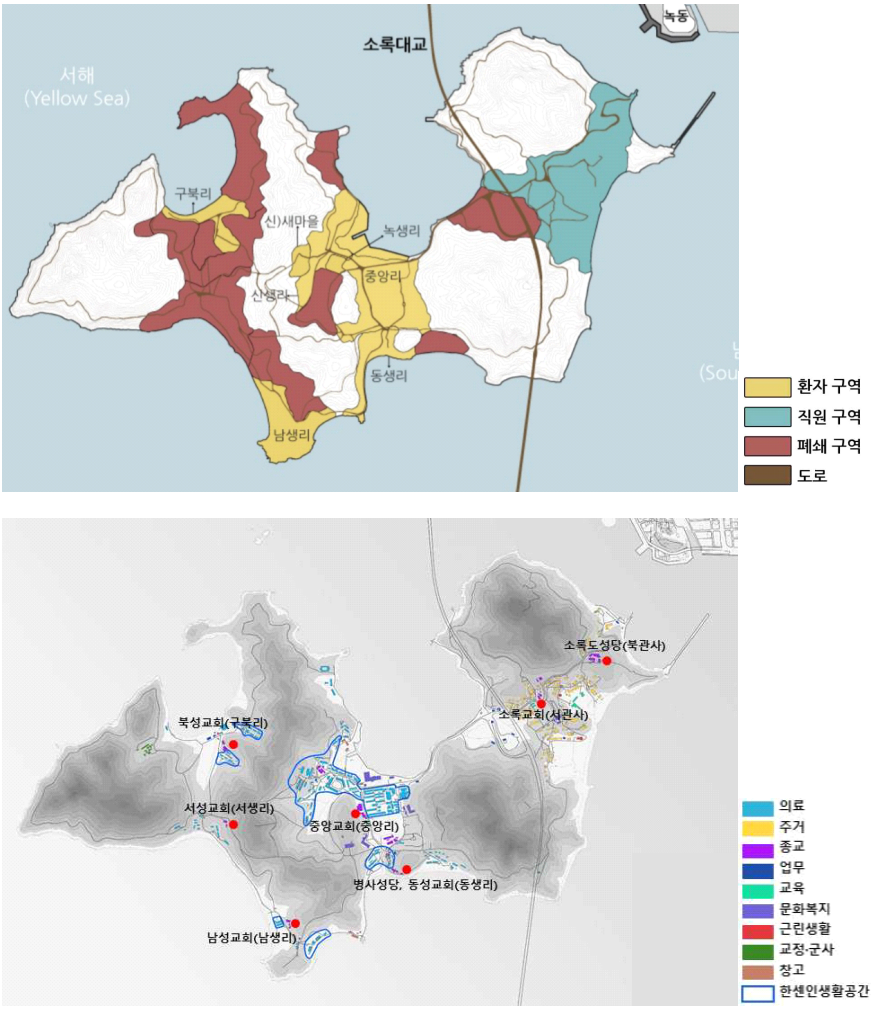

[그림 2-2] 소록도 내 구역 배치 및 건축물 분포

출처: (상) 장성곤,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4), p.115의 〈그림 15〉; (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208의 [도면 Ⅲ-19]를 재인용

[표 2-3] 소록도의 주요 공간구성

구분		사용	특징
병원구역	병원본관	사용	• 병원본관(치료병동)에 와상환자 입원
	중앙공원	사용	• 일반인 공개구역 (박물관 설치 이후 박물관까지 공개구역 확장)
병사구역	중앙리	사용	• 중앙리 생활병동(병사)에 가장 많은 환자 거주 • 박물관 위치
	구북리, 남생리	사용	• 소록도 최초 병사구역 • 30여명 거주
	서생리	미사용	• 소록도 최초 관사구역 → 병사구역으로 변경 • 폐쇄 후 소록도 서생리 마을 옛터 보존사업(2016-2017) 실시
	녹생리	사용	• 신환자 거주 • 생활병동 3개동(안전진단 C · D등급, 1개동 리모델링 진행)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	사용	• 환자 거주
	구새마을	미사용	• 폐쇄
관사구역		사용	• 직원 대부분 거주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1., 2024.04.02.)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사구역 내 거주공간을 이전함
  -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병원본관과 근접한 중앙리 또는 녹생리 생활병동으로 우선 배정

    ※ 녹생리의 원래 이름은 '신병동'이었으며, 생활병동 3개동으로 구성[19]

  - 경증환자는 녹생리, 중앙리 외 병사구역에서 자가생활하며 외래진료를 이용. 중증환자는 병원본관 인근의 중앙리 생활병동으로 이전하여 배식생활하며, 현재 가장 많은 환자가 중앙리 생활병동에 거주.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는 병원본관(치료병동)에 입원[20]

[표 2-4]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거주방식

구분	생활병동			치료병동
	녹생리	녹생리, 중앙리 외	중앙리	
특징	신환자 거주 →	경증환자 자가생활 →	중증환자 배식생활 위주 → 가장 많은 환자 거주	와상환자 입원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원생자치회 면담(면담일: 2024.04.01., 2024.04.02.)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9)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면담(면담일: 2024.04.02.)

20)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면담(면담일: 2024.04.01.)

- 소록도 내 건축물은 2020년 기준 총 544개소로 파악됨[21)]

  - 소록도 내 전체 건축물의 현황은 2020년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개괄적으로 정리됨. 해당 기관은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을 조사하여 소록도 내 전체 건축물의 수량을 544개소로 파악함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수는 111개소임

[표 2-5] 소록도 내 건축물 현황(2020년 기준)

구분		합계	병사 구역	직원 구역	비고
멸실		12	(미조사)	(미조사)	
확인 불가		16	(미조사)	(미조사)	
문화유산		14	(미조사)	(미조사)	
일반 건축물 (조성연대별)	1910년대	1	1	–	근현대 보전자산 400동
	1920년대	1	1	–	
	1930년대	188	76	112	
	1940년대	21	8	13	
	1950년대	–	–	–	
	1960년대	26	20	6	
	1970년대	44	36	8	
	미상	119	89	30	
	1980년대 이후	103	(미조사)	(미조사)	
합계		**544**			

출처: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근대유적 사적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66-67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위 연구에서는 544개소 가운데 멸실 12개소, 확인 불가 16개소, 문화유산 14개소, 1980년대 이후 건립 건물 103개소를 제외한 400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400개소 건물 중 의료용 건물이 139개소, 주거용 건물이 138개소, 업무용 건물이 47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 이밖에 종교, 창고, 근린생활, 교육, 문화복지, 기타 용도의 건축물이 분포

21)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p.207, 396.

3)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의 특성

□ 문화유산 지정 · 등록 현황

- 2003년부터 문화유산을 지정 · 등록하여, 현재 소록도 내 시 · 도지정문화유산(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1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6건 소재
  - 문화유산 총 17건 중 14건이 부동산으로, 1950-1960년대에 건립된 '고흥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및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을 제외한 12건은 일제강점기(소록도갱생원 시기)에 건립
  -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12건은, '고흥 소록도자혜의원 본관'을 제외하면 1932년 이후 대규모 시설 확장공사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를 제외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및 국립소록도병원으로 지정

[표 2-6] 소록도 내 문화유산 지정 · 등록 현황

유형	문화유산명	시대	분류	소유자	관리자	지정·등록연도
전남 문화유산자료	고흥 소록도자혜의원 본관	1917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3
국가등록 문화유산	고흥구 소록도갱생원 검사실	1934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	1935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사무본관과 강당	1935 1937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1937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1940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1935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구 소록도갱생원 등대	1937	부동산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04
	고흥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	1935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1957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원장 관사	1934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04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1935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10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1961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16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1938	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16
	고흥소록도 한센인 생활유품	1930-60s	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16

유형	문화유산명	시대	분류	소유자	관리자	지정·등록연도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1950s	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21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1950-60s	동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2021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p.12-1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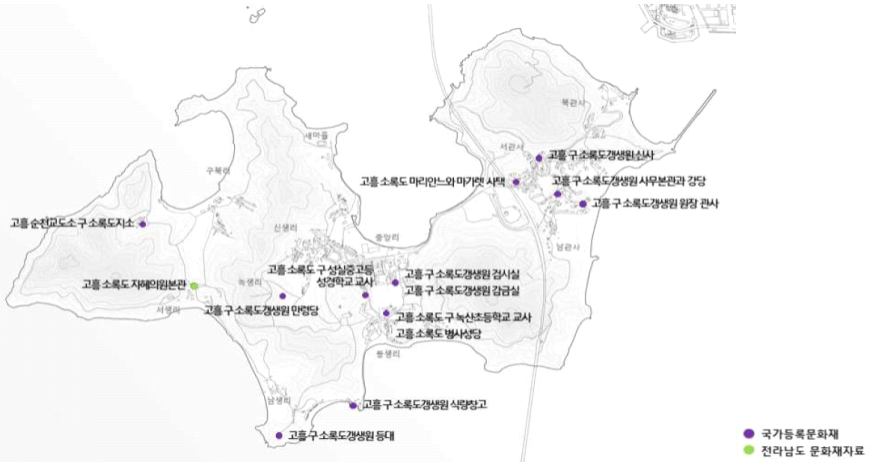

[그림 2-3] 소록도 내 문화유산 배치도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소록도 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389의 [도면 Ⅲ-34]를 재인용

□ 문화유산 관리체계

- 소록도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함. 따라서 국립소록도병원이 소록도 내 문화유산의 관리를 맡고 있음
- 국립소록도병원 관리조직은 '병원장'을 중심으로 '의료부'와 '기획운영과'로 구분[22]
  - 기획운영과는 '운영지원팀', '시설팀', '복지팀', '소통지원팀'으로 구성[23]
  - 운영지원팀은 기획, 서무, 인사 등, 시설팀은 시설·환경 관리, 복지팀은 환자 관리, 소통지원팀은 박물관 운영, 자원봉사 업무 등을 담당

22)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조직도, https://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menu_cd=06_04_00_01&depth=hi(검색일: 2024.04.30.)

23) 기획운영과의 팀(계) 구성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됨(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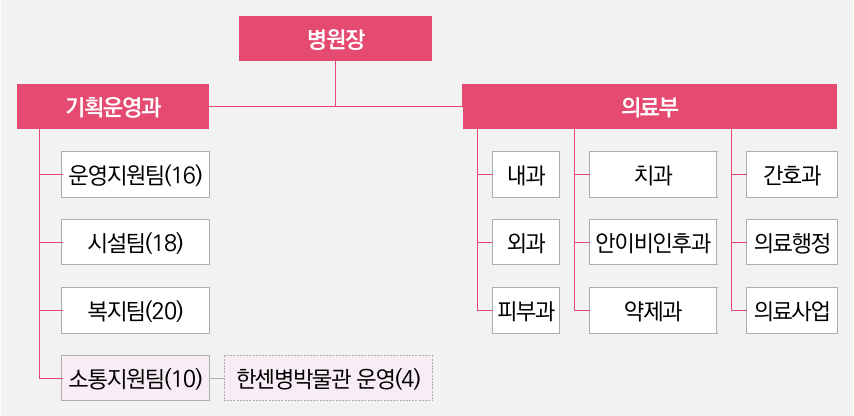

[그림 2-4] 국립소록도병원 조직도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조직도. https://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menu_cd=06_04_00_01&depth=hi(검색일: 2024.04.30.)의 조직도를 연구진 편집

- 소록도 내 건축물의 관리는 시설팀에서 담당하나, 문화유산의 관리는 소통지원팀에서 담당
  - 소통지원팀에는 학예연구사(연구직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24] 해당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총 4인이 문화유산의 관리를 수행
  - 2016년 개관한 한센병박물관은 국립소록도병원의 부설기관으로서 병원장이 박물관장에 해당하며, 국립소록도병원 내에 박물관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과가 구성되어있지 않음

※ 문화유산 외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시설팀이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건축심의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위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24)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유일한 학예연구사로서 한센병박물관 개관에 따라 고용된 인원임(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3.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2024.03.26. 일부개정))

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국립소록도병원예규 제317호, 2018.08.07. 일부개정)

- 문화유산 보수공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한센병박물관 개관 이후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분기별로 문화유산 모니터링 수행 시작.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수 필요사항 확인[25]
  - 고흥군청이 학예연구사와 협의하여 매년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 신청하여, 매년 3-4건 정도 보수공사 진행해옴[26]
  - 즉,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로 확보되며, 소록도 내 문화유산의 소유자 · 관리자가 아닌 지자체 및 국가유산청이 보수공사 추진[27]

  ※ 병원 예산 중 문화유산 보수 관련 비용은 책정되어있지 않으며, 생활병동 수리 후 잔여예산으로 긴급 부분보수를 진행하기도 함[28]

  - 학예연구사가 보수공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공사에서 문제 발생 시 고흥군청과 협의하여 해결[29]

[표 2-7] 소록도 내 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시행내역

신청지자체	국가유산청 접수부서	교부 년도	사업내용	예산(천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
전라남도 고흥군	근대문화재과	2022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보수정비	5	2	3
			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보수정비	10	4	6
		2020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	72.5	72.5	-
		2018	녹산초등학교 교수 보수 및 주변정비	7.75	7.75	-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태풍피해 복구	4	-	17
	수리기술과	2018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보수	7.5	7.5	-
		2017	병사성당 보수정비	7.6	7.6	-

출처: 국가유산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mnctrdlist01.jsp&mn=NS_03_05_01(검색일: 2024.02.19.)에서 소록도 문화유산 검색내용을 연구진 정리

25)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2.)

26)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면담(면담일: 2024.04.02., 2024.04.03.)

27) 국가유산청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수공사를 지원함.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유산의 관할 지자체가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사업예산(국비, 지방비)을 교부받은 기초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주체가 됨

28)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2.)

29)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면담(면담일: 2024.04.03.)

□ 방문객 관리

- 환자 보호를 위해 기획운영과의 운영지원팀이 외부 방문객을 관리하며, 방문객 진입 허용구역은 한센병박물관과 중앙공원 영역으로 한정됨[30]
  - 1차(운영지원팀, 안내소), 2차(원생자치회 선도반, 한센병박물관 앞)에 걸쳐 방문객 진입을 통제
  - 안내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 후 공개구역까지 도보 이동하며, 문화유산(부동산) 14건 중 2건('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만 일반인이 방문 가능
  - 주차장 인근에 고흥군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신청을 받아 박물관까지 안내 실시[31]
- 한센병박물관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32]
  - 2019년에 2차례 시범운영 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되었다가 2024년 재개
  - 통제구역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일반인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음
  - 탐방은 신청자 25명 미만 인원으로 2시간 동안 도보로 진행되며, 박물관 – 만령당 – 순천교도소 – 자혜의원 – 식량창고 – 병사성당 – 성실중고등학교를 방문

[그림 2-5] 소록도 방문객 통제 현황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440의 [도면 Ⅲ-38]을 재인용

30)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440.

31)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1.)

32)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면담(면담일: 2024.04.02.); 최관식. (2024). 국립소록도병원,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병원신문. 4월 25일 기사.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83(검색일: 2024.04.26.)

□ 소록도 사적 지정 추진 과정

-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추진(2016-2018)
  - (2016.05.) 전라남도지사,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필요성 제기
  - (2017.10). 국가유산청, 개별 건축물 중심의 보존 · 관리의 한계 지적하며 면단위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제안
  - (2018.05-07)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협의체'(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 구성 및 2차 회의 개최
- 고흥군,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20)
  - 고흥군이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연구 수행
  - 소록도의 자연 · 인문 · 역사적 현황 및 가치 분석 등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전반적 조사 수행. 소록도의 학술성, 상징성, 역사성에 대해 기술.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제안

※ 소록도 사적 지정 검토까지의 추진 과정

- (보존대책의 필요) 소록대교, 거금대교 개통에 따른 향후 소록도 환경 변화 및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자연유산 지정 검토) 국가유산청 주도로 '섬'으로서의 유산적 특성 파악을 위해 자연유산 조사 실시한 결과, 천연기념물, 명승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지정 검토 추진
-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검토) 기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검토 및 섬 전체 유구의 현황조사 실시
- (사적 지정 검토) 등록문화유산 수준의 보존조치로는 섬 전체의 경관과 자연환경 보존에 어려움 예상되어, 보다 엄격한 보존수준을 요구하는 지정문화유산(사적)의 섬 전체 지정 검토

출처: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서면자문(자문일자: 2024.06.05.)

- 고흥군, 사적 지정 신청 연구용역 수행(2021) 및 지정 신청서 제출(2022)
  - 고흥군이 2021년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지역유산연구원 수행
  - 2021년의 사적 지정 신청 연구용역에서는 소록도의 특성과 한센 역사를 바탕으로 사적 지정 기준 및 가치, 문화유산 지정 구역과 보존 · 활용 방안 제시
  - 연구용역 수행 기간 중 사적 지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고흥 소록도 국가사

적 지정 추진 학술대회〉 개최(2021.09.07.) 및 온라인 생중계

- 국가유산청, 소유자(보건복지부) 동의 요청 및 보건복지부 '조건부 동의' 의견 회신(2022)
  - 전라남도(고흥군)에서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수, 전라남도지사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만 수록. 현재 소록도 소유자인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이 누락되었음을 확인
  - 국가유산청이 소록도 소유자인 보건복지부에 지정 동의 요청
  - 보건복지부는 소록도의 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적 지정 연구용역이 고흥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사적 지정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의 필요하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 회신

※ 보건복지부의 의견 회신 문건 내 주요 검토 필요사항

- (지정범위) 소록도 섬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 시, 「문화유산법」에 따른 규제로 병원 운영 및 거주하는 한센인 생활에 제한 발생
  - 병원기능 유지 및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적 지정 규모를 소록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 필요
  * 예) 병원 건물과 주거시설 등 현재 활용 중인 건축물 제외, 기존 문화유산 중심으로 지정
- (관리주체) 문화유산 지정 시 관리·보호*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관리주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법인신설 등)
  *「문화유산법」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관리 원칙, 필요시 관리단체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음
  ** 문화유산 관리 시 필요 경비는 관리단체 부담이나, 국가나 지자체 지원가능
- (명칭)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의견 수렴 후 사적 명칭* 결정 필요
  *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 고려 시 '한센인' 명칭 포함 여부 등 의견수렴 선행되어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2). 소록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복지부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5.

□ 세계유산 등재와 사적 지정의 연관성

- 국가유산청(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소록도(소록도갱생원) 선정[33]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주기적으로 국내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 수행. 최근 2021년에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연구 수행
  - 위 연구에서 소록도는 근대 의료유산이자 인류 보편의 과오를 성찰하게 하는

3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pp.42-48.

네거티브 유산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격리, 강제불임, 노역, 폭력 등 착취와 억압을 받은 식민유산으로서의 성격. 주민들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며 자연경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보호 및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
  - 세계유산 등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의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 부합성, 완전성 및 진정성, 보호 및 관리의 3가지 요건 충족 필요
  - 보호 및 관리는 보호체계(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한 법적 보호조치), 관리체계(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예산, 인력, 관리프로그램 등) 필요
  - 국내에서는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에 대해 사적 또는 국가 및 시 · 도지정 문화유산을 지정함으로써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소록도의 사적 지정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영향을 미침

[표 2-8] 소록도(소록도갱생원)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판단

등재요건	내용	
등재기준	Ⅳ)인류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 기술의 총체, 경관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 20세기 초중반 한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수용 · 관리했던 공중보건의 흔적. 독특한 건조물 유형은 인류역사의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사례. 잘못된 의료지식과 정보로 인한 공공 의료체제의 실상을 전달
		– 해방 이후 유산 포함 여부 검토 필요
	Ⅵ)사건, 실존하는 전통, 사상,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 비 물적 보전자산으로 설명 가능
	Ⅱ)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 조경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유산	–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초국경유산
완전성	– 섬이라는 입지적 조건, 한센병 치료기능 유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토지 소유 및 유지 · 관리로 인해 도시화, 산업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 전체적인 특징 유지(온전성),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음(무손상성), 외적 위협요소 없음(무위협성) 모두 충족	
	– 일부 건물만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완전한 보전 어려우며, 한센병 환자 소멸 이후 기능 전환의 기본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진정성	– 한센병 치유를 위한 격리 · 수용공간에서 요양 · 복지공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 한센병 치유라는 맥락 속에서 소록도의 전반적 구조, 구성이 변화하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	
	– 진정성 조건(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 기법 ·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환경, 언어 ·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필수 고려 필요	

출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pp.45-47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2. 소록도 관련 여건 변화

□ 현재 소록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병원 발전방안, 환경부-자연환경 보전 · 활용, UNESCO 한국위원회 · 국가유산청-초국경 유산의 관점에서 각각 연구 추진 중

1)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기능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배경)** 소록도 내 환자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 대두[34]
  - **(제한된 역할 수행)** 국내 유일 한센병 관련 국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한센 관리 수행체계에서 벗어나 병원 운영이라는 제한된 업무만 수행
  - **(의료서비스 질 관리)** 일반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험 청구 전무, 외부기관 평가 제외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관리 곤란
  - **(의료인력 부족)** 환자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와 요양 · 복지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있으나 관련 전문인력, 필요시설 부족

  ※ 2002년 장기 발전계획 연구, 2011년 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등 추진
- **(목적)** 한센병 전문 치료 · 요양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전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 한센병 관리체계 내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국립소록도병원 평가 및 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35]
  - **(기간)** 2024.04.18. - 2024.12.13.
  - **(책임연구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방법)** 국내외 한센병 관리체계 비교분석 및 평가, 한센병 환자(가족) · 서비스 제공 실무자 · 실무기관 담당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등
- **(문화유산 지정과의 연관성)**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범위, 관리주체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확장 또는 종료 및 새로운 기능으로의 전환 계획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4월 현재 연구 착수단계로 연구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

---

3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p.3.

35) 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 pp.5-12.(2024.04.29.)

- **(입원환자 수 변화 예측)**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평균연령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 수 변화를 추산해본 결과, 소록도 입원환자는 2033-2034년에 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단, 매년 소록도에 유입되는 소수의 환자 수에 대한 계산은 누락되어있음[36]

2) (환경부) 자연공존지역(OECM), 생태관광지역 지정[37]

- **(자연환경 조사)**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소록도 자연환경의 특성 파악
  - **(기간)** 2024.04.17.
  - **(결과)** 오랜 기간 고립되어 대체로 양호한 자연환경 유지하고 있으며, 동쪽 모래해안의 지형적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편. 다수의 조류 확인됨. 국립공원(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자연 ·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 지질공원(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요건에는 미충족
- **(보전 · 활용방안)** 자연공존지역(OECM), 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
  - **(자연공존지역)** 규제지역은 아니며 장기간 현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관리하는 지역(자연 보호 및 기존 일상 기능 유지)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국토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 관리 필요. 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보호지역 개념을 확장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일상기능은 유지하는 완충구역으로서의 자연공존지역 개념 도입

  ※ 현재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공존지역 정의, 지정기준, 절차, 관리계획 수립, 지원사항 등 근거 마련 예정. 국내 지정 사례 없음
  - **(생태관광지역)**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 교육할 수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제주시 저지곶자왈과 오름, 순천시 순천만, 서천군 금강하구와 유부도 등 현재 전국 35개소 지정

  ※ 환경부가 생태관광지역 관할 지자체에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36) 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 p.35.(2024.04.29.)

37)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2024). 소록도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방안. 환경부 내부자료, pp.1-9.(2024.04.24.); 한국환경연구원 전문가 자문(자문일: 2024.05.02.)

-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주체는 조합, 추진단, 주민협의체 등 다양하며, 운영방식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름. 주요 기반시설은 탐방시설(탐방로), 안내 · 해설판, 관찰 · 연구시설, 체험시설로 구성되며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추진 현황)** 소록도 마스터플랜(역사 · 문화 · 자연환경의 종합적 보존 ·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소록도 자연환경 정밀조사 추진

※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소록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 · 발전방안 마련 위해 협의체(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대표, 관련 전문가) 구성. 1차 회의 개최(2024.05.21.) 및 격월 개최 예정

3) (UNESCO 한국위원회 · 국가유산청) 초국경 유산 국제공동연구[38)]

- **(과업명)** Unveiling Shared Pasts, Shaping Common Future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Grants on Transnational Heritage
  - 공유되는 과거를 밝혀 공통의 미래를 형성: 초국경 유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 **(개요)**
  - **(기간)** 1단계(2024.04.-2024.11.) 4개 팀의 파일럿 연구 진행
    2단계(2025-2027년) 3개팀 선발하여 연구 지원
  - **(목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유산을 탐구 · 보존하여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정체성, 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대화, 협력 및 상호 이해 촉진

- **(파일럿 연구)** 한센병의 역사와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의 한센병 요양기관의 유산화
  - **(책임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문화교양학과)
  - **(공동연구기관)** 6개국 연구자로 구성(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 Sains Malaysia(말레이시아), Senshu Univ.(일본), 연세대학교(한국), Chinese Culture Univ.(대만), Vietnam National Univ. Hanoi(베트남), Universitas Gadjah Mada/Monash Univ.(인도네시아))
  - **(연구 배경)**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의 한센병과 관련된 편견, 차별, 공중 보건

38) 파일럿 연구의 제안서(연구책임자 제공)를 바탕으로 작성

시스템, 치료 및 기관은 아시아 문맥에서 공유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반성, 요양기관의 철거, 개발 및 유산화와 관련된 문제는 유사하게 나타나나 각 국가별로 각각 논의됨

- **(연구 목적)**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공유되는 한센병 관련 역사와 가치를 연구하여 한센병 관련 유산의 보존을 꾀하고 초국경 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방법)** 6개국에 대한 문헌 고찰, 자료 수집, 현장 답사, 면담

- **(연구 내용)**

  i) **(의학)** 각 국가에서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치료, 병원 · 기관의 설정 및 발전 방법, 환자, 가족 및 사회의 경험, 의학적 지식과 치료, 아시아 각국 정치권력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ii) **(격리시설의 역사적 발전)**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격리시설의 독특한 유형 · 무형유산으로서의 흔적의 발견

  iii) **(인권침해)**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 분리 정책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강제 노동, 교육 부족, 불법 임상 실험, 강제 절제 · 낙태 등)의 이해

  iv) **(과도기적 정의)** 199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한센병 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 추진, 1996년 일본에서 강제 격리 정책 폐지 이후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하며 시작된 일본, 대만, 한국의 연대와 교류 강화, 각국의 인권법 제정 및 한센병 환자의 권리 보호 · 강화 체계 개발로 이어지는 역사적 고찰

  v) **(유산화)** 한센병 관련 요양기관은 지역사회에서 편견, 차별, 의학적 통제, 질병 자체에의 대응을 바탕으로 형성된 매우 독특한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환자 수 감소와 개발 압력 속에서 이러한 기관을 보호 · 보존 · 유산화하는 것은 이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 공유 역사로서 초국경 유산 지정 추진 방안 모색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 검토

1. 면단위 문화유산 관련 제도 현황
2.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3. 국내외 사례 검토
4.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종합

1. 면단위 문화유산 관련 제도 현황

1) 지정유형 관련 제도

□ 국가유산 체계에서 면단위 문화유산으로는 「문화유산법」에 근거한 '사적'(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법」에 근거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있음

[표 3-1] 국가유산 체계에서의 문화유산 분류

구분	기존		국가유산 체계		
근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분류	지정	등록	지정	등록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 시·도등록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 시·도지정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시·도등록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면단위 문화유산은 붉은 색으로 표기

출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31.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① 「문화유산법」에 의한 '사적'의 지정과 관리

□ 사적의 개념[39]

- 법적으로 사적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을 의미함 (법 제25조)
  -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킴 (법 제2조)
- 사적은 유형별로 선사시대, 정치 · 국방, 산업 · 교통 · 주거생활, 교육 · 의료 · 종교, 제사·장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등과 관련된 '유적'으로 분류됨 (시행령 [별표 1의2])
  - '유적(遺跡 · 遺蹟)'은 남아 있는 자취로서,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패총, 고분 따위를 이르는 용어로 정의됨[40]
- 따라서 사적은 대체로 현재는 그 기능이 종료되었으며 역사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장소로 이해됨[41]
-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해야함 (시행령 [별표 1의2])
  - **(역사적 가치)** 1)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 생활 등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2) 국가에 역사적 ·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 **(학술적 가치)** 1) 선사 · 역사시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 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선사 · 역사시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 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4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4.05.22.)

41)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6.10.)

- 2024년 6월 현재까지 총 562개소의 사적이 지정되었으며,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중 조선시대 사이에 조성된 사적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3-2] 사적 지정 현황

조성시대	석기	청동	선사	철기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지정건수	7	12	8	3	1	41	2	32	18
조성시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	기타	미상	미기입
지정건수	70	44	41	171	16	16	1	4	75

※ 국가유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의 내용(시대명)을 그대로 따름

출처: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 종목별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gbn=2&pageNo=1_1_2_0&culPageNo=1&ccbaCndt=&searchCondition=&region=1&s_kdcdArr=13&s_ctcdArr=00&ccbaPcd1Arr=99&stCcbaAsdt=&endCcbaAsdt=&ccbaGcodeArr=00&sortType=&sortOrd=(검색일: 2024.06.14.)에서 '사적'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연구진 정리

□ 근대사적의 개념

- 사적 중에는 국가유산청 내부적으로 '근대사적'으로 분류되는 종류가 있음
  - 근대사적의 개념은 별도로 법제화되어있지 않으며, 근대사적은 사적에 포함됨
- 근대사적은 개항기 전후부터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사적 총 562개소 중 41개소가 근대사적으로 분류됨
  - 사적은 대개 면단위로 지정되나, 근대사적은 개별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문화유산에 비해 보존가치가 높은 우수한 건조물로 인식되어옴

[표 3-3] 근대사적 지정 현황

지정연대	지정건수	문화유산
1960년대	3	서울 독립문, 환구단,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1970년대	7	서울 우정총국, 서울 대한의원, 서울 약현성당,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 정동교회, 서울 명동성당
1980년대	19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구 서울역사, 인천 답동성당, 구 목포 일본영사관, 창원 진해우체국,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등
2000년대	6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안국동윤보선가,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서울 경교장, 서울 이화장
2010년대	5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구 군산세관 본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만해 한용운 심우장
2020년대	1	인천 팔미도 등대

출처: 국가유산청. (2021). 근대사적 총괄 현황표. 국가유산청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사적과 근대사적의 국가유산청 소관부서가 상이함. 사적은 역사유적과(구 보존정책과)에서 관리하되, 근대 건설된 '건조물'은 특별히 근대사적으로 분류하여 근현대유산과(구 근대문화재과)에서 관리함
  -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등 근대 조성되었으나 터로 남아있는 경우, 근대사적이 아닌 사적으로 분류하여 역사유적과에서 관리
  - 사적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터인 경우가 많으나, 근대사적은 개별 건조물로서 현재에도 사용 및 박물관 · 전시관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
- 소록도는 현재에도 병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조성된 건조물이 위치하므로 사적 지정 시 근대사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42)]

근대 조성된 '사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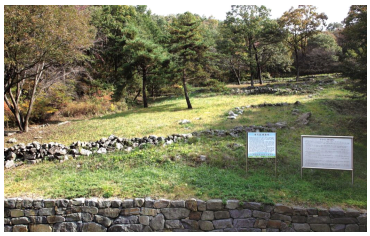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근대사적' 예시

구 서울역사

서울 대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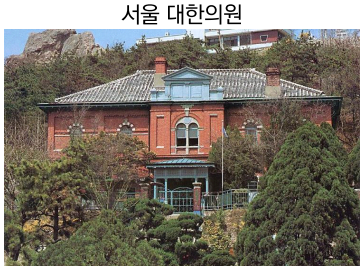

구 목포 일본영사관

[그림 3-1] 근대 조성된 사적 및 근대사적의 예시

출처: 국가유산포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서울 효창공원', '구 서울역사', '서울 대한의원', '구 목포 일본영사관' 검색 화면,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398582448(검색일: 2024.05.11.)의 그림 재인용

42)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3.21.)

□ 지정 및 관리[43)]

- **(지정)** 시 · 도지사는 지정해야할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 이후 관계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해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 해제의 필요가 있을 때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법 제31조)
- **(관리의 원칙)**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 있음.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법 제3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자 ·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나 법인 ·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거나 직접 보호할 수 있음
- **(공개)**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되어야 하나,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 시 국가유산청장이 소유자(관리단체)의 의견을 듣고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제한 가능 (법 제48조)
- **(구역 설정)** 문화유산 지정 범위 이외에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함
  - **(보호구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결정함 (법 제27조, 시행령 제11조)
  - 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사적의 유형별로 다르며, 기본적으로는 사적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구역을 설정하도록 함 (시행령 [별표2])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06.14.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표 3-4] 사적 보호구역 지정 기준

유형	지정기준
선사시대	•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않은 유물이 흩어진 지역 •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정치 · 국방	•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경관보호 등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 • 봉수대, 관아, 병영: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산업 · 교통 · 주거생활	•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경관보호 등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교량, 제방, 정원, 연못, 우물, 수중유적: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교육 · 의료 · 종교	• 현재 여건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제사 · 장례	• 현재 여건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인물 · 사건	• 현재 여건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기타	• 그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출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가리킴 (법 제2조)

-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함 (법 제13조)

[표 3-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역별 특징

구분		특징
1구역	개별검토 구역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 · 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구역
2구역	고도제한 구역	국가유산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
3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
4구역	타 국가유산 허용기준 적용 구역	다른 국가유산(시도지정유산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

구분	특징
	으나 중복된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

출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2024.05.17. 타법개정) [별표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후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허용기준)을 고시해야 함([표 3-7] 참조) (법 제13조)

- 건설공사의 인 · 허가 담당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야 함.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검토는 생략함 (법 제13조)

[표 3-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허용기준) 마련 및 건축 허가 여부 결정 절차

구분	절차				
허용기준 마련	1.현황자료 조사	2.기준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3.국가유산청 제출	4.문화유산위원회 심의	5.기준 고시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허가 여부 결정	1.건축행위 허가 신청	2.허용기준 적용 검토		3.허용기준 범위 내: 건축법 등 자체 처리	
	(민원인)	(지자체 문화유산 부서)		(지자체 문화유산 부서)	
				3.허용기준 범위 외: 허가 처리절차 이행	
				(국가유산청)	

출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2024.05.17. 타법개정) 제5조(허용기준 마련); 문화재청. (2023). 2023 문화재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문화재청, p.22의 그림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허가) 사적,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현상변경 행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표 3-8] 참조) (법 제35조, 시행령 제21조)

  -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 (법 제35조)

  -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음 (법 제35조)

  - 단, 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 예외 적용대상으로 사적 지정범위 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 인 · 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며,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수리법」에 따라 수리 진행

- 허가를 받지 않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법 제42조)

[표 3-7]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예시

예시 대상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요지 1-2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 24-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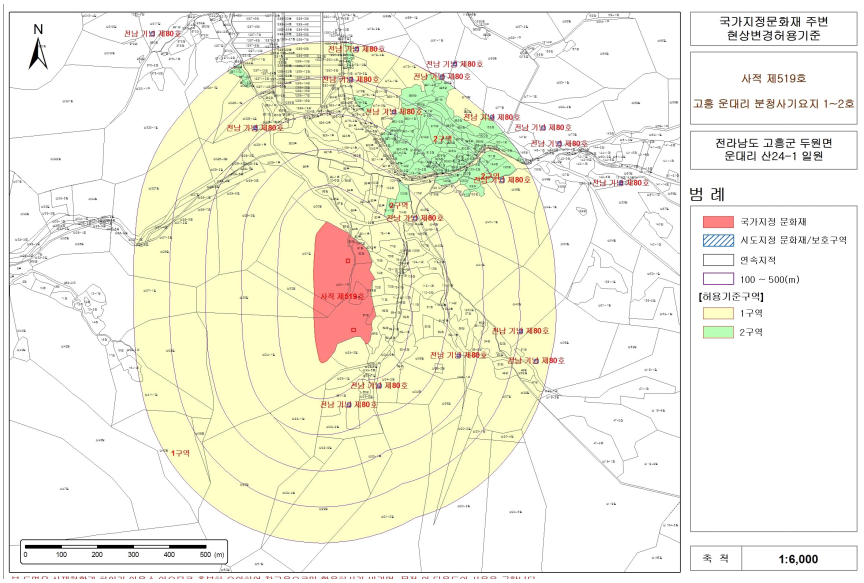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 유적 정비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newMap.do?gid=1677&layerNm=CHL_SPCN_AS&pmpg=Y(검색일: 2024.05.10.)의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검색 결과 고시도면 및 고시문(문화재청 고시 제2020-136호)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3-8] 국가유산청장 및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

구분	국가유산청장 허가 필요		지자체장 허가 필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경미한 행위
내용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 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 - 건축물,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용도변경 - 수목을 심거나 제거 - 지형, 지질의 변경 - 수로, 수질, 수량의 변경 -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등을 방출 -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 - 동물을 사육, 번식 - 토석, 골재, 광물 등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음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다음 행위 - 문화유산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 증설 - 문화유산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 -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등을 방출 -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 땅파기 -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 2) 문화유산 소재지역의 수로의 수질,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3)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 4) 그밖에 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행위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 보수 시 면적·규모가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고 조사를 위해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 4) 국가유산관리단체 등의 행사를 위해 존치기간 100일 범위 내 가설시설물 설치

※ 경미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공통사항만 기재

출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2024.05.17. 타법개정)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지원) 국가는 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명한 조치(수리, 필요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긴급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 활용 · 기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법 제42조, 제51조)
  -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 관리 ·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법 제52조)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수리, 토지 · 건물 매입, 발굴조사, 보호시설 및 조치, 기록화 및 연구, 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 부대시설, 문화유산 가치 증진, 경관 정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함[44]

- 2024.11.01.에 시행되는 「문화유산법」에서는 시 · 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을 수립 ·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함 (법 제13조의2)

②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45]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개념

-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보존 ·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을 의미함(제6조)

  - 근현대문화유산은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분류되며, 근현대부동산유산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 · 경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제2조)

※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의 주요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 예술적 ·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 · 건축물, 무덤 · 터 · 유적지, 가로 · 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 · 조각 · 공예품, 문서 · 서적, 의복 · 기념품 · 생활용품, 기계 · 기구 · 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 · 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이하 생략)

출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44)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 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1] 총액사업 지원대상

4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기준으로 작성. 6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음

□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기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개별 건축물 · 시설물을 대상으로 등록해왔으나, 이러한 개별적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2018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면단위로 등록 · 관리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하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함[46]
  - **(목표)**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50년 이상 경과된 근현대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선 · 면단위 공간의 보존 ·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의됨
  - **(법적 근거)**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의 개념 정리 및 규정 마련 없이,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를 따랐음
  - **(절차)** 지자체 사업 공모 신청 · 접수 → 사업 심사(서면평가, 현장조사, 종합평가)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심사(등록 신청, 등록 조사, 등록 · 고시) → 사업 최종 선정 → 시행계획 통보 · 이행계획 보완 → 예산 반영 → 보조사업 확정 통보 → 종합정비계획 수립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옴
  - **(등록)**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개소(목포, 군산 내항, 영주, 영덕 영해장터거리, 익산 솜리, 통영, 서천 판교, 진해)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24년 4월에 1개소(여수 거문도)가 등록 예고됨 ([표 3-9] 참조)
  - **(지원)** 현재까지 시행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 방식으로, 5년간 매년 20-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도록 계획됨
  - **(종합정비계획)** 지자체장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2021)의 주요 목차

Ⅰ. 서언
Ⅱ.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기초조사 및 분석
Ⅲ.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조사 및 분석
1.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사
2. 단위건물유산 조사
3. 가로 경관 조사
Ⅳ. 종합정비계획 수립
1. 기본구상 및 종합정비방안
2. 기반조성 계획
3. 보존정비 계획
4. 관광자원화 계획
5.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
6. 보존정비·활용 사례 조사
Ⅴ. 사업추진 계획
1.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2. 재정 투자계획
3.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미래상

출처: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정 파트너스 아키텍츠,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2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목포시청, 목차.

46) 임유경, 심경미, 권영란, 방보람. (2020).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pp.29-32.

[표 3-9]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현황 및 소록도와의 비교

등록연도	명칭	면적(㎡)	관리자	개별 국가등록 문화유산 개소
	소록도	3,782,099	국립소록도병원	13
201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14,038	목포시	18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152,476	군산시	5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7,714	영주시	6
2019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1,176	익산시	11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17,933	영덕군	11
2020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14,444	통영시	9
2021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22,965	서OOO	7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71,690	창OOO	11
2024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예고)	26,6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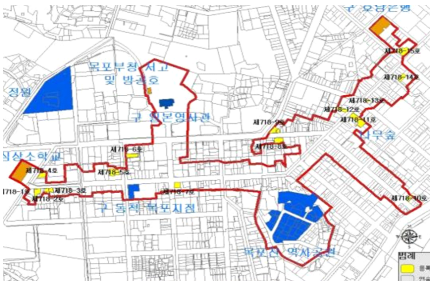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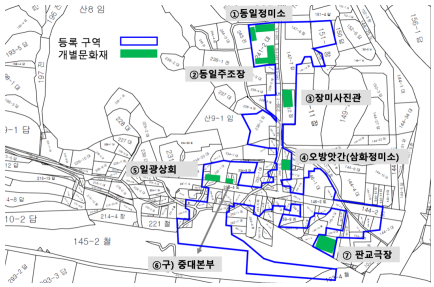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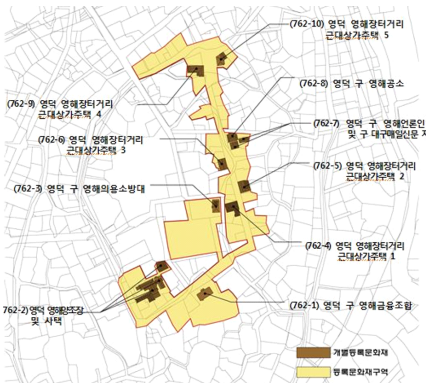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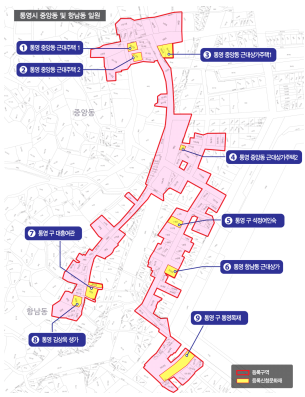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MHq12cTNR0v63f3wnsly1CS7qgfua6SaaJB1aXoRQETZWfLN7nO09OcHLo6zfJNp.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3522&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_01;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4711&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ea%b7%bc%eb%8c%80%ec%97%ad%ec%82%ac%eb%ac%b8%ed%99%94%ea%b3%b5%ea%b0%84&sdate=&edate=&category=&mn=NS_01_02(검색일: 2024.04.15.); 국가유산포털, 각 근대역사문화공간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검색일: 2024.04.15.)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국비를 투입하여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고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의해 등록된 것이 전부이나, 사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면단위로 등록 ·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47]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련 사항을 따름

- **(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정되지 않음 (제6조)

  -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기준으로 함. 1)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할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관리의 원칙)** 가치를 유지 · 계승하고, 국민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하며, 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하게 보존 ·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3조)

  - 소유자가 관리자인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소유자는 필요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자 ·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나 법인 ·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거나 직접 보호할 수 있음(제12조, 제13조)

- **(공개)** 공개 원칙이 없으며, 훼손과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개 제한 가능함(제29조)

  - 대체로 지자체가 매입한 문화유산은 공개하며, 사유재산은 비공개하는 사례가 있음

- **(필수보존요소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를 지정 · 고시할 수 있음(제8조)

  -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새로 도입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필수보존요소의

47)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6.10.)

구체적인 지정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음

- **(관계법령의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표 3-10]의 특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완화 적용 가능(제31조, 제32조)
  -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례 적용 요청 사유 및 예상효과 등을 포함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함
- **(허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건폐율 ·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이전 · 철거, 수리 · 보존처리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7조, 제18조)
  -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이전으로,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건축물 외관 면적의 1/4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함
  - 등록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수선 이상,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지자체 허가권자의 건축 인 · 허가도 필요

[표 3-10]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근거법	완화 조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정의-대수선)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3조(지하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8조제2항(구조내력 등-대수선)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64조(승강기)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84조(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녹색건축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5조제1항(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민법」	제242조제1항(경계선부근의 건축)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출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관리[48)]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개념

-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새롭게 도입됨
  -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정 지역을 관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선 · 면단위로 확장하여 등록 · 관리하는 것과는 구분됨[49)]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제2조, 제33조)

□ 지정 및 관리

-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함(제33조)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음 (제36조)
- (변경 · 해제)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변경 및 지정 해제할 수 있음 (제34조)
- (활용계획 수립)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함 (제35조)
  - 활용계획에는 위치 · 범위 · 면적 등에 관한 사항, 지정 목적 · 기본방향 · 필요성,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기초조사 계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지원사업, 영업 · 시설의 설치 금지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관계법령의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4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기준으로 작성. 6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음

49)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6.10.)

따라 관계법령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표 3-11] 참조) (제37조)

-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정비, 주차장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개선,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38조)
  -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3-11]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근거법	완화 조항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출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 일부개정); 「건축법」(법률 제20194호, 2024.02.06. 타법개정); 「주차장법」(법률 제19686호, 2023.08.16. 일부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관리주체 관련 제도

① 국유지 관리주체 관련 조항

□ 「국유재산법」의 행정재산 관리·처분 관련 조항[50]

- 소록도 전체 면적의 약 97%는 보건복지부 소유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됨[51]

50) 「국유재산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51)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국유부동산정보. https://www.k-pis.go.kr/selectBasSerList.

- 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있음
- 건물 1개소(남성교회)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됨

-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교환 또는 공공용도로 지자체 양여만 가능함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는 해당 국유지를 소유한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나, 시행령으로 정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제28조)
  -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제29조)
- 사용허가의 경우,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 및 보존용 재산은 각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가능함 (제30조, 제35조)

[표 3-12]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내용
국유재산	행정재산	공공	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구거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

출처: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국유재산 현황. https://www.k-pis.go.kr/addNpSituView.do(검색일: 2024.02.22.)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문화유산법」의 국유문화유산 특례 관련 조항[52]

- 국가유산청 외 중앙관서 소관 국유문화유산은 별도의 관리청을 둘 수 있음
  - 국유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관리 · 총괄해야 하나, 국가유산청 외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 관리청을 정할 수 있음 (제62조)
  - 국유문화유산 관리를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 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국가

do#none(검색일: 2024.02.22.)에서 소록도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확인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인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됨 (제62조)

- 국유문화유산의 관리청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신고 사항 이행, 행정명령 이행, 보존현황 조사 이행,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의 이행 주체가 됨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9조)

- 국가유산청이 국유문화유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간 무상관리전환 가능 (제63조)

② 문화유산의 지속적 관리 관련 조항

□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예산) 지원[53]

- 국가유산의 보수정비는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 관리 규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여 지원 (제6조)
  - 국가지정유산(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은 국비:지방비 7:3
  - 국가등록문화유산(근대역사문화공간 포함)의 경우 국비:지방비 5:5

- 문화유산의 수리를 비롯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 발굴조사, 보호시설 및 조치, 문화유산 기록화 및 연구, 문화유산 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 부대시설 설치 및 정비, 가치 증진사업, 경관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 예산 지원

[표 3-13]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① 복원·수리	전체 복원, 부분 복원, 목조·석조국가유산의 부분수리, 목조·석조 외 문화유산의 전체·부분 수리, 방충·방염 등 보존처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자연유산 보존 및 환경정비, 오염물질제거, 모니터링, 기타 국가유산 보수 등
	② 토지·지장물 매입	토지 매입 및 정비, 지장물(인위적인 시설물) 매입 및 철거·정비 (*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내)
	③ 발굴조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시굴지·발굴지 정비 (*지원 범위: 정비사업 시행 전 유구 확인 및 매장유산 조사,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④ 국가유산 보호시설 및 조치	국가유산 보호시설 및 수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보수/제작(*지원 범위: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한함), 내진 등 국가유산 재해 방지 등의 조치
	⑤ 국가유산 기록화 및 연구	정밀실측(3D스캔 포함), 단청·벽화 기록화,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및 보존상태 진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연구

53)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 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이규철, 손은신, 박일향, 김수빈.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pp.42-44 참고

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⑥ 국가유산 가치 증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가치 증진 등을 위한 건조물 건립(*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단, 국보·보물인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포함), 전시관·역사관 보수·정비, 국가유산 관련 가치(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 등) 발굴 및 자료 제작
	⑦ 국가유산 유지관리	관리소·경비소·안내소 신축·설치 및 정비 (*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
	⑧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정비	화장실·휴게시설 신축·증축·개축·재축·보수·설치·정비, 주차장 설치·정비,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장비(휴대용 해설기기, 키오스크 등) 구축 (*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
	⑨ 국가유산 부대시설 정비	석축·담장·옹벽 설치·정비, 지반 개량, 배수체계 개선(배수로 정비 등), 보호책·울타리 설치·정비, 기 조성되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지, 호소, 하천 정비 (*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 단, 연지, 호소, 하천의 경우 점(點)단위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점에서 조망이 가능한 범위 내 지원 가능)
	⑩ 국가유산 경관정비	수목 정비 및 예초, 노후화된 기존 현대식 시설물 철거(*지원 범위: 국가유산구역, 보호구역 및 국가유산을 둘러싼 권역 내), 경관조명 설치,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 내 국가유산과 관련성 및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의 내·외부 수리(*지원 범위: 국보, 보물), 민속마을 저잣거리 조성·정비(*지원 범위: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

출처: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1]총액사업 지원대상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총액사업을 신청하여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국가유산청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후 국비가 교부되며, 일부 국유지 및 소유자 미신청 문화유산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현재 국가유산청 외 타부처 소유의 국유문화유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관련 세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유부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지자체 지원 및 지방비 매칭이 필요함
  - 토지매입경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매입 후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관리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하며, 매입한 토지나 건물 대여 시 국가유산청 주관부서의 승인 필요, 대여 수입 발생 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되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함[54]

54)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 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 제14조(토지 등 매입사업의 집행)

□ 정기조사를 통한 문화유산 모니터링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란 「문화유산법」 제4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전상황 등에 관한 정기적 조사를 말함[55]
  -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소유자 ·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56]
  - 정기조사는 국가유산별 각 주관부서에서 수행함
- 정기조사 결과는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 및 예산 계획 수립 등에 반영
  -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A(양호), B(경미보수), C(주의관찰), D(정밀진단), E(수리), F(즉시조치) 등 6개 등급으로 분류[57]
  - 후속조치로 보수 ·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정밀진단 · 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수행,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종합정비계획 수립, 현황조사 또는 지표 · 발굴조사 등 필요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가능[58]

□ 국가유산 수리 절차 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내 관련 조항
  - 지정문화유산(사적 포함)의 세부 수리 절차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다루고 있으며, 기획-실측설계-시공 순서로 진행
  - 단, 근대사적의 경우 목조트러스, 철재, 벽돌, 콘크리트 등 현대식 재료가 많이 사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건축 중심으로 작성된 지정문화유산 수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2010년 작성된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를 함께 적용[59]

---

5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02.27. 타법개정) 제44조(정기조사)

5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06.14. 일부개정)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57)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문화재청훈령 제752호, 2024.05.14. 일부개정)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58)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문화재청훈령 제752호, 2024.05.14. 일부개정) 제10조(후속조치)

59) 박일향, 이규철, 방보람. (202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p.29.

3) 명칭 관련 제도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60]

-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예규 제정 (제1조)
  - 역사적 문헌, 고증,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 부여 (제2조)
  - 연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이 쉽게 인식되어야함 (제2조)

※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 구분 필요 시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리) +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시 · 도 + (시 · 군 · 구) + 사적명칭'도 가능 (제3조)

※ 주변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일원(지구)'를 붙일 수 있음 (제3조)

※ 지역명이 사적 명칭에 포함된 경우, 2개 이상 지역이 연관된 경우, 국가를 상징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음 (제4조)

[표 3-14] 사적 명칭 부여 기준

유형	명칭 기준
선사시대	•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 '패총', '유적' • 구석기, 신석기, 선사유적: '유적'
정치·국방	• 궁(터), 전(터)에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병영, 전적지의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 • 기타: '유적'
산업·교통·주거생활	•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요지 등: '요지' • 수중유적: '매장 해역' • 기타: '유적'
교육·의료·종교	•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기타 교육·의료·종교 관련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제사·장례	• 제사 관련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옛무덤(군): '고분(군)' • 왕릉, 원, 묘의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기타 제사·장례 관련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인물·사건	• 인물유적: '지역명+이름+유적' • 사건유적: '지역명+사건명+유적'

60)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예규 제330호, 2024.03.19.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유형	명칭 기준
	• 인물의 제단, 사당 등 제사 관련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 관련 고유명칭 있을 경우: 고유명칭 사용

출처: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예규 제330호, 2024.03.19. 일부개정)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61]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예규 제정 (제1조)
  - 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함 (제3조)
  -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음 (제3조)
  -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는 고유명칭 앞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구체적 대상 앞에 사용함 (제3조)
  -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3조)
-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의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4조)
  - '소재지 + 고유명칭'으로 함

  ※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명칭'으로 하되, 고유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거나 마을을 표기해야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고유명칭'으로 함

  ※ 지역명이 고유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개 이상 지역이 연관된 경우, 국가를 상징하는 경우, 지역명 생략 가능
  - 고유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문화유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징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 부여
  -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고려 필요 (제5조)

6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예규 제272호, 2024.01.08.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2.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1)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62]

① 연구 개요

- (과업명)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하 보존·관리 종합계획)
- (배경) 소록도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으로 훌륭한 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구상 및 분야별 보존·관리·활용방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 역사문화환경,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수행
  - (역사문화환경)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책임, 건축), 전남대학교(건축)
  - (자연지리환경) 전남대학교(해양), 순천대학교(식물), 전남대학교(포유동물), 한남대학교(곤충)
  - (인문사회환경) 남도학연구소
- (내용) 고흥군 일반현황, 소록도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계획·법규 검토 및 사례조사 연구, 종합분석, 종합계획, 사업추진계획으로 구성
  - 자연환경(해양환경, 동·식물) 조사, 주민 인터뷰를 포함한 인문환경 조사, 근현대 건축물 400건 및 구조물·기념물에 대한 조사 실시
  -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 등급이 높은 214건에 대한 조사표 및 도면·사진 작성 등 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수행. 이를 토대로 소록도의 사적 지정 방안 및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등 사적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표 3-15]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의 주요 내용

목차	세부 내용
Ⅰ.연구개요	
Ⅱ.고흥군 일반현황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62)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p.43-644.

목차	세부 내용
Ⅲ.소록도 현황 조사 및 분석	
1) 기초자료조사	–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기반 소록도 역사 개관 – 건축물 보수정비 추진현황 조사
2) 자연지리환경	– 해양환경(해양수질, 저서동물, 해안선 변화) – 식물(식물상, 법적보호종, 식생, 정원 등) – 동물(포유류, 법적보호종, 육상곤충 등)
3) 인문사회환경 (주민인터뷰 포함)	– 일반현황(인구,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층수별 시설 현황) – 노역(군수물자 생산, 벽돌, 연료용 숯, 제탄 제조, 확장·간척공사) – 생산활동(자급자족을 위한 농사, 축산활동, '독살' 어로 제작 등) – 생활사(일상과 풍속, 주거공간, 결혼생활 등) – 종교사(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 교육(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4) 역사문화환경	**– 공간구조 변천사 및 문화재 등록·지정 현황** **– 근현대 건축물, 구조물, 기념조형물 등 조사 및 등급화** (건립시기, 관리·보존상태, 변형·손상상태 등 요소별 상세조사) (구조물 및 기념조형물, 길, 건축물터 등 종합 조사)
5) 관리·운영	– 국립소록도병원 조직 및 관리·운영 현황 조사
Ⅳ.관련 계획·법규 검토 및 사례조사연구	
1) 관련 계획 및 법규 조사	– 문화재보호법(문화재 종별 유형 및 소록도 내 문화재구역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2) 사례조사연구	– 근대사적(구 군산세관 본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인천 팔미도 등대) – 면단위 등록문화재(근대역사문화공간)(목포, 군산 내항, 영주) – 세계유산 등재 사례(남아공 로벤섬, 폴란드 아우슈비츠, 노르웨이 베르겐 나병 기록물, 일본 나가시마 애생원(추진중)
Ⅴ.종합분석	
1) 소록도의 가치	**"소록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한센인의 생활공간 및 차별, 문화, 그리고 역사와 건조물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보존해야 할 유산"**
2) 종합분석	–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종합 분석
Ⅵ.종합계획	
1) 기본구상	**– 소록도의 한센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통합 정비계획 수립 필요**
2) 학술조사계획	– 생활사 및 유·무형 문화유산 조사, 문학·예술활동 조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기록화, 국내·외 유사시설 연대방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 등 제안 –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 실시 방안 – 근대문화유산 중 등록문화재 추가 신청 대상 선정(36개소)
3) 자연지리환경 보존계획	– 해양환경, 식물, 동물, 곤충 관리·보존방안
4) 인문사회환경 보존계획	– 소록도 인물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생산·노역, 일상·풍속, 교육기관, 치료법, 수술, 의료, 봉사활동 등 무형문화유산 조사, 한센인 문학·예술활동 조사 – 소록도 단체 및 조직 심층조사

목차	세부 내용
5)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	– **근현대 건축물 가치 등급화(A~E등급) 및 상위등급 가치 심화분석** – 손상·변형된 건축물의 원형보존 및 수리 기법, 옛길 복원 제시
6)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정비계획	– 자연, 인문, 역사 분야별 보존 가치 분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학술성, 상징성, 역사성 기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제시**
7) 관리·운영계획	– **통합관리를 위한 (재)소록도세계유산센터 제안**(문화재청, 보건복지부, 고흥군청 공동출자 독립법인, 주민협의회 참여)
Ⅷ.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 기본원칙(유적의 복원과 활용,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지속적인 조사연구)
2) 사업투자계획	– 단기 및 중·장기 총 사업 예산 220억 원 내외 산출 –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의·지원 및 민간자본 유치 확충 제시
부록1	– 회의내용, 참고문헌 – **자연지리환경(식생 16종 상세조사표)** – **인문사회환경(거주자 250명(환자, 직원 등) 인물조사표, 주민170명 설문조사 결과서)**
부록2	– **역사문화환경(근현대 건축물 214건 상세조사보고서, 사진 및 도면)**

※ 보고서의 용어를 그대로 따름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② 문화유산 지정범위, 관리주체 설정

□ 지정범위

-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조사 및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대상을 선별
  - (**자연지리환경**) 우수한 식생 및 역사성, 상징성을 지닌 식생으로서 식물보호구역(해안림, 상수리나무군락, 중앙공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구역(삵·수달 서식지역)을 제안
  - (**인문사회환경**) 관련 기록물과 구술을 바탕으로 노역과 생산, 일상과 풍속, 종교와 신앙,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문학과 문예지, 예술과 체육, 의료기관과 협회, 치료법과 수술, 제도와 정책, 의료 및 봉사활동, 한센인자치회, 소록도를 방문한 유명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주요공간을 추출
  - (**역사문화환경**) 5가지 가치평가요소 및 기준을 작성하고 건축물 및 비건축물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하여, 문화유산 지정(등록)가치가 높은 대상 선별

[표 3-16] 가치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른 조사 결과

평가요소	등급	가치평가기준	평가점수
역사성	1	소록도 변천과정 등을 반영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5
	2	소록도 변천과정 등을 반영하고 있거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3
	3	소록도 변천과정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1
학술성	1	건립당시의 구조, 설비, 시공기술이 잘 남아 있는 것	5
	2	건립당시의 구조, 설비, 시공기술을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된 경우	3
	3	건립당시의 구조, 설비, 시공기술을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경우	1
보존상태	1	외관 또는 구조체가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5
	2	일부 변형 또는 훼손되었으나 원형파악이 가능한 경우	3
	3	변형 또는 훼손이 심하여 원형파악이 어려운 경우	1
상징성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기념 및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소록도의 지역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5
	2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기념 및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소록도의 지역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3
	3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기념 및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소록도의 지역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1
활용성	1	근·현대 건축물로서 지역 및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한 경우	5
	2	근·현대 건축물로서 지역 및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이 높거나, 접근이 용이한 경우	3
	3	근·현대 건축물로서 지역 및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이 낮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

종합등급	내용	보존방안	개소	
			건축	비건축
A	평가점수가 90%(23점) 이상인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	8	3
B	평가점수가 80%(21점) 이상인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14	8
C	평가점수가 70%(19점) 이상인 경우	시·도등록문화유산 등록 권고	15	6
D	평가점수가 60%(17점)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서 보존방안 검토	38	-
E	평가점수가 60%(17점) 미만인 경우	목록화	325	-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524의 [표 Ⅵ-7] 및 pp.525, 587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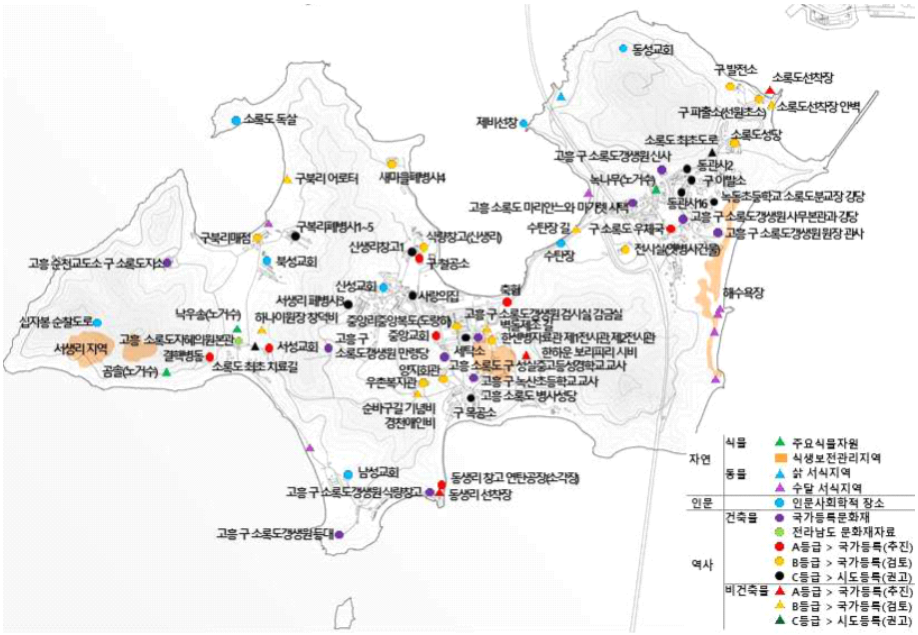

[그림 3-2]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주요 보존대상 위치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618의 [도면 Ⅵ-16] 재인용

- 조사 결과 소록도는 한센인 삶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자 자연과 인문이 결합한 정주환경으로서 아래와 같은 역사적, 학술적, 상징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이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사적 지정 필요성을 제안
  - (학술성)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특수하게 계획·건립한 병원으로서,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 받고 투쟁했던 공간이자 한센인의 애환이 담긴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큼
  - (상징성) 근현대사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는 네거티브유산이며, 한센병 치료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서 자연, 인문, 문화유산이 유지되어 섬 전체가 한센인의 고통, 희생, 인권회복 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가치가 있음
  - (역사성) 예술, 조직, 장례, 생활 등이 독자적으로 발달되었고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역사성을 보유한 근현대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사적(전체), 등록문화유산(전체), 사적+등록문화유산(일부공간+점), 등록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일부공간+점)의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하여 전체 사적 지정을 최종안으로 선정

- 보고서에는 최종안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록도의 자연·인문·역사를 종합하여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공간 또는 개별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도 고려한다면, 섬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으며,[63] 4가지 대안의 간단한 특징을 담은 [표 3-17]이 게재됨

※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이 섬 전체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그림 3-2] 참조) 일부구역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섬 전체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원형 보존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원형훼손 우려가 있는 등록문화유산(근대역사문화공간)보다는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표 3-17]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등록범위(안)

구분	1안: 전체	2안: 전체	3안: 일부공간+점	4안: 일부공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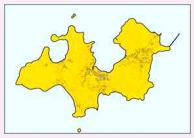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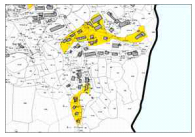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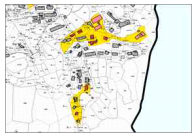
유형	사적	등록문화유산	사적+등록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
면적	3,782,099㎡ (2,000필지)	3,782,099㎡ (2,000필지)	2,008,817㎡ 등록문화유산3건 등록	2,008,817㎡ 등록문화유산12건 등록
장점	– 원형보존(절대보존) – 문화유산 일괄관리 – 문화유산 연계성 강화	– 등록문화유산 구조변형 제외하고, 내부 수리, 용도 변형 가능 – 관리, 보호, 수리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보조금 지원 – 문화유산 일괄관리 및 연계성 강화	– 사적 지정공간 원형보존(절대보존) – 등록문화유산 구조변형 제외하고, 내부 수리, 용도 변형 가능	– 등록문화유산 구조변형 제외하고, 외관정비 가능 – 관리, 보호, 수리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보조금 지원 – 문화유산 일괄관리 및 연계성 강화
단점	– 사적으로 지정 시 지정공간 내 기 등록문화유산 해제 – 시설물 정비 시 제약	– 문화유산 원형훼손 우려 – 활용중점	– 사적으로 지정 시 지정공간 내 기 등록문화유산 해제 – 시설물 정비 시 제약 – 문화유산 일괄관리 및 연계성 약화	– 문화유산 원형훼손 우려 – 활용중점

※ 3·4안의 면적 산정방법 및 신규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음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630의 [표 Ⅵ-32] 재인용

63) 최종안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선정함(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면담(면담일: 2024.04.03.))

□ 관리주체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단계 로드맵 제시
  - (1단계: 추진단 구성 및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 (2단계: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OUV 발굴과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 학술연구.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 (3단계: 유적 정비 및 홍보·행사 운영) 폐쇄구역에 대한 지표조사·발굴조사. 유적의 보수·정비. 기타 유사한 유적과 MOU 체결하여 홍보·행사 진행. 전문해설사 배치.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4단계: 세계유산 등재) 소록도 유산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진행. 지속적인 주민협의 통해 관리·홍보. 유적 아카이브 구축
-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관리조직 구축 제안
  -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 이코모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조직) 등재 추진을 위한 '소록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설치 및 등재 이후 '(재)소록도 세계유산센터'로 개편. 해당 통합관리조직은 유산 관리, 한센병박물관 운영, 유산 보전 업무 수행. 이밖에 주민협의회 참여 권고

  ※ 국가유산청, 보건복지부, 고흥군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독립법인 설치

2) 소록도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64]

① 연구 개요

- (과업명)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이하 사적 지정 신청 연구)
- (배경) 「문화유산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적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의 작성 필요[65]

64)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3-238.

6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06.14. 일부개정)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표 3-18] 소록도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의 주요 내용

목차	세부 내용
지정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섬 전체), 보호구역·보호물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안)(해당사항 없음),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 **고흥군수 및 전라남도지사, 관계 전문가 검토의견서** *소유자(보건복지부) 동의서 누락
Ⅰ.소록도의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 소록도의 입지, 역사문화환경, 고흥군의 근대화 현황
Ⅱ.소록도의 한센 역사	
1) 1916년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과 격리(1916-1932)	
2) 1933년 소록도 갱생원과 절대격리체제(1933-1945)	
3) 1945년 광복 후의 혼란과 요양소 체제의 불안정(1945-1960)	
4) 1960년 국립병원체제의 정비와 관리의 체계화(1960-1981)	
5) 1982년 국립소록도병원으로서 전환(1982-현재)	
Ⅲ.소록도 마을 특징과 시설	
1) 소록도 마을 변화와 특징	– 시기별 마을 구획 및 형성·변화 – 마을 특징 건물 현황과 보존 상태(종합계획(2020) 참고)
2) 병사(病舍) 지대 시설	– 현재 기준 병사 지대 시설 종합 현황 – 구북리, 서생리, 남생리, 중앙리, 동생리, 신생리, 녹생리, 새마을 등 8개 마을별 시설 현황 및 목록
3) 관사(官舍) 지대 시설	– 현재 기준 관사 지대 시설 종합 현황(동서남북 관사 시설 목록)
4) 소록도 형무소 시설	– 병사지대 내 위치한 소록도형무소 주요 역사 및 현황 사진
Ⅳ.소록도 한센인 생활사 특징	
1) 한센인이 일구어낸 생활문화	
2)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업활동(농사·축산활동, '독살' 어로 흔적과 맨손어업 등)	
3) 애환이 담긴 장례문화(화장 문화 및 만령당, 민속 문화와 외래종교 문화 결합 상장례문화)	
4) 공유와 연대의 공동체문화(공동취사, 음식나누기, DDS 가족, 한센인자치회)	
Ⅴ.소록도 학술적 의의	
1) 연구성과	– 기존 연구 성과 89건 등 현황 조사(의료 분야, 역사 분야 및 실태조사, 역사사회학 분야 등)
2) '한센인' 용어에 대한 고찰	– 현재 법적 용어인 '한센인' 명칭에 대하여 차별적 의미로 인식되는 등, 반발 의견이 많으므로 문화유산 명칭에서 제외
Ⅵ.사적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1) 한센병 의료장소의 대표성	
2) 최신의 의학지식과 기술이 구현된 근대의료 공간	
3) 한센인 격리 수용장소로의 상징성	
4) 한센인 마을공동체의 특수성	
5) 한센인 강제노역과 어려움을 극복한 생활사 현장	
6) 한센인 생존권 투쟁의 역사현장	
7) 국제적인 봉사 실천 장소로 평등·박애 상징	
8) 한센병과 한센인 관련 시설의 원형 보존	
9) 한센병과 한센인 유물 보유	

목차	세부 내용
10) 자립의지의 상징, 오마도 간척공사	
11) 세계유산으로서 소록도 가치 (등재기준 II, IV, VI 제시)	
Ⅶ.문화재 지정 구역	– **문화재 지정 구역 (시간적 범위 1916년 이후 현재까지, 공간적 범위 소록도 전체)** – **지정 구역도**, 위치도, 수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Ⅷ.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1) 문화재 보존방안	– 자연지리환경, 인문·역사문화환경 보존 방안 간략 제시(종합계획(2020) 참고)
2) 문화재 활용방안	– (방향)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시민교육의 장소로 활용** – (방안) 소록도 유적 보존회 결성, 직원지대 사무본관 활용 한센인 인권 기념관 구상,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한센인 인물의 재발견 및 재평가, 문화재청 활용사업 공모 신청, 『소록도의 이야기』 책 발간 등
부록	– 지도, 소록도병원 연표, 주요 건물 보수정비 내력, 학술대회 관련, 지번별 목록 등

※ 보고서의 용어를 그대로 따름

출처: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② 사적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 설정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의 주요 내용이 반영됨

□ 지정범위

- (시간적 범위) 소록도는 한센병 치료의 역사는 물론 해방 이후 한센인 생활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장소이므로, 소록도자혜의원이 설립된 1916년부터 현재까지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사적으로 지정해야할 가치가 있는 시간적 범위로 설정
- (공간적 범위) 위 시간적 범위를 반영하여 섬 전체를 사적 지정범위로 설정
  - 한센병 발병률 감소, 한센인 고령화에 따라 소록도에서 한센인 영역의 축소와 외부인 영향력 증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체와 기능의 전환에 따라 소록도에 대한 집단의 기억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따라서 관리주체, 기능이 변화하더라도 역사성·장소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서 섬 전체 사적 지정의 필요성 주장

□ 관리주체

- ‘국립소록도병원’을 사적 관리주체로 설정
  - 보고서에서 관리주체를 검토하는 부분은 부재함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에서 제시한 통합관리조직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조직되지 않은 임의의 센터를 관리단체로 명시할 수 없어 현재 관리주체인 ‘국립소록도병원’을 명시한 것[66]

[표 3-19]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및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에서 제시한 관리주체 비교

구분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
관리주체	소록도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 재단법인 소록도 세계유산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구성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고흥군청 공동출자·설립 독립법인		국립소록도병원 *현재 관리주체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 이코모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소록도 유적 보존회(한센인,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교도관, 성직자, 변호사) 결성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고흥군청
운영방식	유산관리	유적 종합 정비. 유적 시설물 관리. 방문자센터 운영 등	-
	한센병박물관	전시. 학술조사. 유적 모니터링. 해설사 교육·운영 등	
	유산보전	업무계획 수립·보고. 기록자료 보전. 관련기관 업무협의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633;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3, 235-236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명칭

- 소록도의 근대역사를 강조한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을 제시
  - ‘한센인’ 용어 사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 ‘한센’ 용어를 부각하면 소록도에 대한 국한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 ‘유적’ 용어를 사용하면 인문·자연환경을 배제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이유로 듦

66)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면담(면담일: 2024.04.03.)

3. 국내외 사례 검토

1) 일본의 애생원(愛生園) 사적 지정 추진 현황[67]

① 조사 개요

- (배경) 1996년 일본「나병예방법」폐지와 함께 한센인은 격리가 아닌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 2000년대 이후 한센병 인식 개선, 교육, 홍보를 위한 전시관, 역사관 등 시설 설립, 2010년대 이후 한센인 소멸 이후에도 한센병 역사, 한센인 삶, 요양소 치료시스템과 공간 특성 등 한센병 관련 모든 속성을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유산화 작업 본격화
  - 2023년 12월 기준, 일본에는 민간 1개소, 국립 13개소의 한센병 요양소가 운영되고 있음. 2023년 5월 기준, 국립 한센병 요양소에 거주하는 환자는 1,092명으로 확인
- 2019년 한센병 관련 시설 10개소를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했으며, 보다 보호·관리 수준이 엄격한 사적 지정 추진 중. 또한 기억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관리·계승하기 위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
  - 국립 한센병요양소 중 광명원(光明園, 1909년 설립), 청송원(青松園, 1909년 설립), 애생원(愛生園, 1930년 설립)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설정
- (대상) 현재 일본에서 사적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애생원의 사례 조사
  - (위치) 일본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 나가시마(2,470,000㎡, 광명원과 연접)
  - (소유) 후생노동성
  - (관리) 국립요양소 나가시마 애생원
  - (환자) 2020년 5월 기준, 환자 139명 거주(평균연령 85.5세)
  - (주요 현황) 산림을 제외한 섬 대부분이 치료·요양·생활 관련 시설로 구성
  - 국가등록문화유산 5개소 등록(2019년), 나가시마 애생원 역사관 개관(2003년)

67) 장성곤. (2023). 일본 한센병 관련 기억유산의 보호와 관리 –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역 중심으로-. 제3회 소록도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 pp.1-57.(2023.12.07.); 장성곤 자문회의(자문일: 2024.04.16.)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3-3] 일본 애생원의 구역도

출처: 장성곤. (2023). 일본 한센병 관련 기억유산의 보호와 관리-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역 중심으로-. 제3회 소록도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 p.28.(2023.12.07.)의 그림 재인용

② 사적 지정 추진 과정

□ 애생원 장래 구상 수립(2011년 수립, 2018년 일부개정)[68]

- 2010년 「한센병 요양소 장래 구상 추진 모임」 규약 제정
  - (구성) 시청, 시의회, 현청, 의료노동조합, 요양소 입소자 등(회장: 시장)
- 해당 모임을 중심으로 입소자에게는 충분한 요양,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설의 지역 개방, 입소자와 지역주민의 교류 방식 등을 검토하는 장래 구상 수립
  - (내용) 애생원 현황(토지이용, 시설, 입소자, 시설 주변), 관계자 요구사항(입소자, 지역주민, 시설직원), 애생원의 장래 구상, 나가시마의 미래 구상, 추진체계
  - 2011년 최초 수립 후, 고용 안정, 세계유산 등재, 인권 수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2018년 일부개정

68)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2018). 長島愛生園将来構想.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pp.1-3, 47-49, 66-67.

[표 3-20] 애생원 장래 구상

구분	내용	
이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우리는 의료, 간호, 개호(介護)를 통해 최선을 다한다.	
기본방침	1. 입소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킨다. 2. 안심하고 신뢰받는 팀 의료를 제공한다. 3. 개호예방활동에 의한 QOL(생활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4. 직원의 교육·연수에 힘쓴다. 5. 한센병의 계발활동을 실천한다.	
기본목표	입소자가 안심하고 풍요롭게 계속 살 수 있는 시설로서, 고용의 장을 확보하고 유지향상을 도모한다.	→ 건강·의료·복지의 충실
	애생원의 지역개방 추진과 교류 등에 의한 한센병 문제의 개발을 도모한다.	→ 한센병 문제의 계발
기본계획	건강·의료·복지의 충실	→ 종합 의료체제의 충실 복지의 전개 고용 안정의 확보
	한센병 문제의 계발	→ 학교·사회별 계발 체험학습의 추진 인권교육의 추진
	세계유산 등재에의 대응	→ NPO와의 협력 관계단체에의 요청
	인권을 지키는 체제 수립	→ 인권옹호위원회의 운영

출처: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2018). 長島愛生園将来構想.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pp.47-49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애생원 보전·활용 비전 수립(2021년 수립, 2022년 공개)

- 2018년 NPO 법인 「한센병 요양소 세계유산 등록추진협의회」 창립
  - 애생원 장래 구상 중 기본계획 '세계유산 등재에의 대응'의 구체화
  - 광명원 내 위치
  - 한센병 역사 계몽, 교육, 홍보 및 사적 지정, 세계유산 등재 등 한센병 관련 유산화 총괄 진행. 학술조사, 국내외 교류, 해외 비교연구 등 추진
  -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한 워킹그룹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로드맵위원회 운영
  - 세계유산 로드맵위원회(위원장: 애생원 역사관 학예사)는 건축·자료 조사, 건축물 보존·사적 등 조사, 세계의 기억 보전·액세스 관리조사 등 3개 그룹을 만들어 기초 학술연구 진행

- 민간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 기부금, 정부 보조금 외에도 굿즈 개발 및 판매,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이를 통해 자체 예산 확보하여 타 비영리 단체보다 속도감 있는 운영관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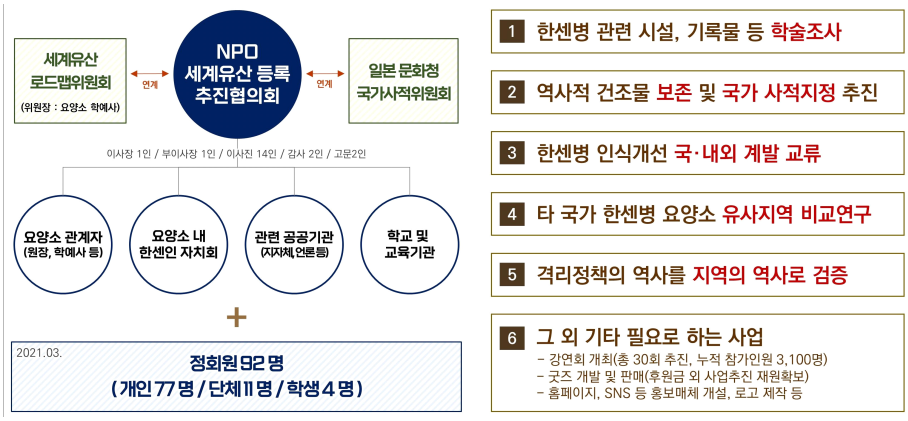

[그림 3-4] NPO 법인 한센병 요양소 세계유산 등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주요 활동
출처: 장성곤. (2023). 일본 한센병 관련 기억유산의 보호와 관리 -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역 중심으로-. 제3회 소록도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 p.5.(2023.12.07.)의 그림 재인용

- 2030년 애생원 개원 100주년에 맞춰 사적 지정을 완료하는 계획 수립[69]
  - 2019년 NPO가 로드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 수립.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필요한 국내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사적 지정 추진 결정
  - 2020년 로드맵위원회와 협동으로 애생원 역사적 건조물 보존 검토 워킹그룹(단장: 애생원 원장)이 설치되어, 입소자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2021년 「애생원 보존·활용 기본방침」 수립
  - 2021년 NPO가 위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2030년 애생원 개원 100주년을 목표로 「애생원 보전·활용 비전」 수립. 2021-2030년까지 비전 제정·개정, 인권학습의 장(에코뮤지엄) 운영, SDGs 달성, WMW(World Monuments Watch) 등록, 2개소 보존·활용 파일럿 사업 추진, 역사서 편찬·사적 지정, 로드맵위원회·워킹그룹 활동,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완충구역 보호,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계획 포함

69)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p.1-7, 114.

[그림 3-5] 애생원 보존·활용 기본방침

출처: 장성곤. (2023). 일본 한센병 관련 기억유산의 보호와 관리 -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역 중심으로-. 제3회 소록도 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 p.44.(2023.12.07.)의 그림 재인용

③ 사적 지정범위 설정

□ 지정범위(안)[70]

- 「애생원 보전·활용 비전」에서는 2027-2029년 사적 지정 신청, 2030년 사적 지정 완료(역사서 발간과 연계)라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지정범위(안)가 제시된 상황
- 역사적 장소의 구성요소를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와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이외 요소'로 구분하고, 사적의 본질적 가치를 포함하는 범위를 망라하여 지정범위 제안
  - 사적 지정 신청 시 애생원의 가치 서술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서 발간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협의 필요 명시
  - 요양소 기능이 없어진 후에는 관계자간(후생노동성-세토우치시) 협의 거쳐 토지소유, 관리단체 재설정 필요성 제기
  - (1안) 광명원 경계까지 애생원 전체 영역(최대 범위)
  - (2안) 애생원 서쪽 일부 제외한 영역
  - (3안) 애생원 서쪽 일부, 동쪽 산 일부 제외한 영역(최소 범위)

70)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p.116-123.

[표 3-21] 역사적 장소의 구성요소

구분		특징
사적 범위 내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요소	• 역사적 건축물, 유구, 지형, 매장유물 등이 분포하는 영역 ※ 부두, 치료·생활시설, 관리시설, 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된 지형, 입소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 위령시설, 종교시설, 인프라, 생산시설 등 → 확실한 보호 필요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이외 요소	• (본질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으로 부가된 요소 중 사적의 본질적 가치를 현재에 전달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 ※ 건설용 흙, 석재 조달 장소, 입소자 및 황실 관계자의 비석 등)
		• (기타 요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으로 부가된 요소 중 본질적 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소 ※ 가설 공작물, 최근 정비된 인프라(텔레비전탑, 댐, 배수시설 등) → 장래 제거·이전 필요
사적 주변	사적 가치와 관련된 요소	• 사적과 일체로 보존·활용 필요한 요소
	사적 주변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소	• 유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자연지형, 경관으로서 사적과 연속적으로 일체가 되는 지역환경

출처: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p.122-123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표 3-22] 지정범위에 따른 소유·관리(안)

구분	범위	소유·관리(안)
1안	광명원 경계까지 애생원 전체 영역	A) – 소유: 후생성 – 관리: 세토우치시 B) – 소유: 세토우치시(불하) – 관리: 세토우치시
2안	애생원 서쪽 일부 제외한 영역	A) – 소유(전체): 후생성 – 관리(지정범위만): 세토우치시, (지정범위 외): 후생성 B) – 소유(전체): 세토우치시(불하) – 관리(지정범위만): 세토우치시, (지정범위 외): 후생성 C) – 소유(지정범위만): 세토우치시(불하) – 관리(지정범위만): 세토우치시
3안	애생원 서쪽 일부, 동쪽 산 일부 제외한 영역	

출처: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116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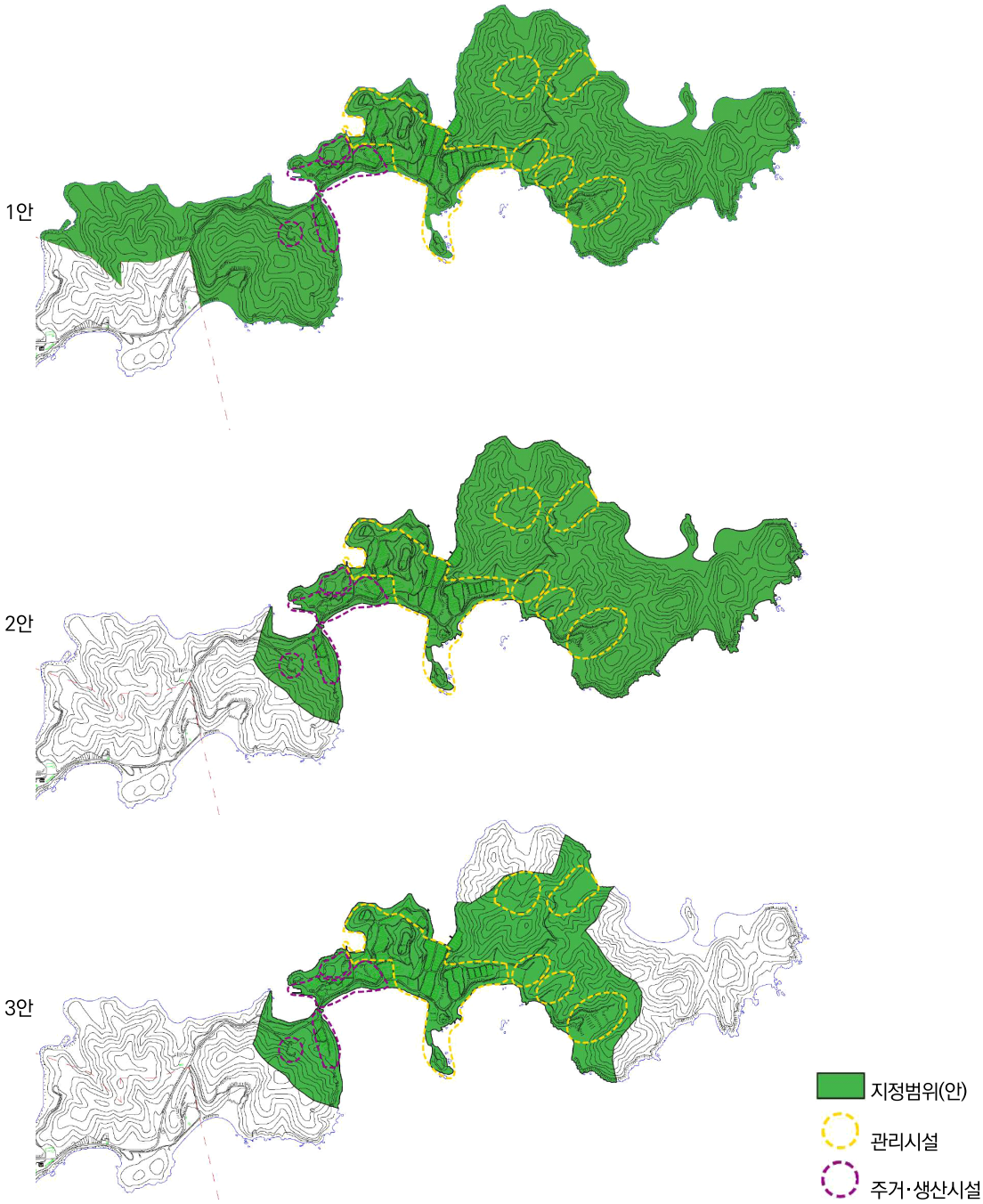

[그림 3-6] 애생원의 사적 지정범위(안)

출처: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p.119-121의 그림 재인용

□ 지정범위 3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22)[71]

- 사적 지정 신청 시 제출 필요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 정리를 목적으로, 1·2차에 걸쳐 전수조사 실시
  - 현지조사(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요소 대상), 문헌조사, 드론촬영 등 실시
  - 사적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요소,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이외 요소, 기타 요소, 요양소 운영에 필요한 요소 등으로 전체 시설물(210건) 분류
  - 전체 시설물 중 사적 지정 검토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시설물 54건 선별

※ 기등록 등록유형문화재, 개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것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선별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설물 별 상세조사 및 국가등록유형문화재 추가 신청, 긴급보존조치 등 진행 중[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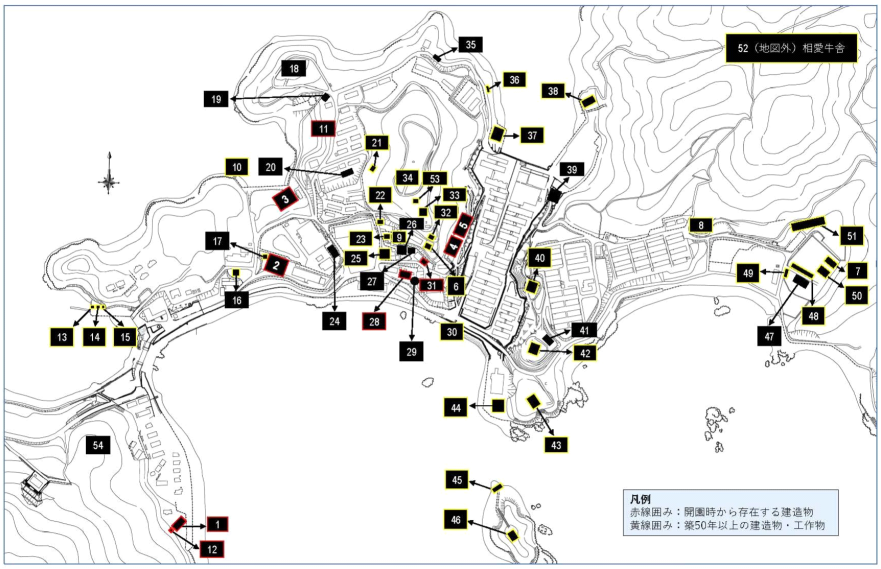

[그림 3-7] 지정범위 3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별한 중요 시설물 배치도

출처: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3). 2022(令和4)年度 年次報告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별지③(페이지 없음)의 그림 재인용

71)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3). 2022(令和4)年度 年次報告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pp.73-103.

72)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4). 会報誌. 第11号, pp.1, 6.

2) 국내 관련 사례

① 조사 개요

- (목적) 소록도는 보건복지부가 약 97% 소유한 국유지이자 문화유산 지정 추진 대상으로서,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관리주체 설정의 시사점 도출
  - 국가유산청 외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유문화유산, 여러 부처·기관·지자체 등이 소유한 문화유산 등의 관리주체 구성·운영 현황 조사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통합관리조직 사례 조사

  ※ 문화유산 지정 이후에도 한센인 치료·요양 전문병원으로서 기능 유지가 필요하여 문화유산 지정 후 즉각적 기능 전환이나 관리주체 전환 어려움. 이에 병원 기능을 유지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관리조직을 구축한 사례 조사

- (대상)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유산, 세계유산 각 1건의 관리 사례 조사
  - 현재 사적 중 국유지인 경우 소유자는 대체로 국가유산청·산림청이며, 산림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등에 포함된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산림청 이외 중앙부처에서 소유 및 활용(또는 계획 수립) 중인 문화유산으로서 '구 공업전습소 본관'(근대사적, 교육부 소유 및 방송통신대학교 관리), '군산 내항 철도'(국가등록문화유산, 경찰청·국토부·해수부·군산시 소유, 군산시 관리)의 관리주체 현황 조사
  - 또한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사적 사례로 여러 광역·기초지자체 및 국가유산청이 공동으로 MOU를 통한 통합관리단을 발족, 세계유산 등재 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의 현황 조사

② 국내 사례의 관리 현황

□ (국유문화유산 사례) 구 공업전습소 본관(근대사적)

- 교육부(소유자)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관리
- 건물은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으로 이용 중이며, 대학본부 시설과가 평시의 정비 및 일상적 관리 수행
  - 평시의 경미한 정비 및 관리는 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 시설과)에서 수행

-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보수·복원공사 진행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공사 용역 발주는 기초지자체(종로구)에서 수행하며, 지방비 예산은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에서 교부
  - 2023-2024년 현재까지 지붕보수 및 본관 원형복원 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총 16.3억, 2024년 12.8억 교부

※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및 업무 수행은 법적으로 지자체에 할당된 업무이며, 소유자에 관계없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비-지방비를 7:3 비율로 매칭하므로 국유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비 소요 관련 문제의식 일부 제기

[표 3-23]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관리 현황

명칭	구 공업전습소 본관	**문화유산 유형**	근대사적(국가지정문화유산)
위치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1번지	**규모**	535㎡
특징	1908년 대한제국기 건립된 건물로, 당시 목조건축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음		
소유자	교육부	**관리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용 현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2009.11-현재) - 2006년 개교 35주년 기념 및 공업전습소 100주년 기념 자료 전시 계획수립 (기획실) - 2006년 개교 35주년 사업 추진 일환으로 방송대 역사관 건립 추진 (중앙도서관)		
관리조직 및 인력	대학본부 시설과에서 학교 시설과 함께 평시 관리(과장급 1, 팀장급 2, 직원 13) ※단, 본 인력 규모는 방송통신대학교 전체 시설 관리 규모임		
유관기관 간 협의과정	해당 사항 없음 (1981년 사적 지정 당시 기 설립된 방송통신대학교 부지에 위치)		
업무 분담사항	**방송통신대**	• (역사기록관) 기록관 운영에 따른 전시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보존 업무 • (시설과) 운영 상 필요한 경미한 정비 및 시설관리	
	지자체	• (기초-종로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공사 발주(2023-2024년 현재 복원정비사업 진행 중) • (광역-서울시) 국고보조사업 예산 교부(2024년 총 12.8억 중 3.8억, 2023년 총 16.3억 중 4.8억 원 지방비 매칭)	
	국가유산청	• 정기조사(2021년 수행), 현상변경 심의(필요 시) • 국고보조사업 국비 교부(2023-2024, 사업비 중 70%)	
기타 관리현안	• 경미한 정비·관리 업무는 관리자 직접 수행,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등 업무는 지자체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소유주와 관계없이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나, 국유문화유산의 경우 지자체(광역 포함)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문제의식 일부 있음		

출처: 국가유산포털. '구 공업전습소 본관'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ou.ac.kr/knou/738/subview.do?epTicket=LO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홈페이지. https://archives.knou.ac.kr/about/ARhistory.html;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공개 홈페이지. '구 공업전습소 본관' 검색 결과. 2023-2024. https://openfinance.seoul.go.kr/jongno/budgetbybusiness?mngId=4&localGovCd=01(검색일: 2024.05.10.);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면담(면담일: 2024.04.2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중앙부처(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해당 기관	교육부(방송통신대)	국가유산청	(기초)종로구 (광역)서울특별시
역할	소유자(관리자)	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업무 총괄	문화유산 관련 지자체 업무 수행
관리 내용	- 역사기록관의 경미한 정비 및 관리(평시, 대학 시설과)	- 보수정비 국비 교부 - 현상변경 심의 - 정기조사, 지원사업 등	- (기초)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공사용역 발주 - (광역)지방비 예산 교부

[그림 3-8]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관련 기관별 업무 수행현황

출처: [표 3-23]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3-9] 구 공업전습소 본관의 전경

출처: 국가유산포털. '구 공업전습소 본관'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검색일: 2024.05.10.)의 그림 재인용

□ (국유문화유산 사례) 군산 내항 철도(국가등록문화유산)

- 소유자는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코레일), 군산시 등으로 다양하며, 관리자는 '군산시'로 지정
  - 군산 내항 철도는 2018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록에 따라, 훼손된 철도 복원을 위해 개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함께 등록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은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전체 사업과 연계하여 군산시가 관리 전반 담당
  - 2021년 군산 내항 철도를 포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2022년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73)]
  - 군산 내항 철도의 경우 현재 복원 승인은 되어있으나, 철도 복원·보수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미선정으로 현재 복원 사업 미추진

73) 문지연. (2022).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 올해부터 시동. 군산미래신문. 6월 9일 기사.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4&pid=69814&PHPSESSID=(검색일: 2024.05.10.)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레일 소유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군산시가 행정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후 박물관 및 관광시설 조성 계획 구상 중

[표 3-24] 군산 내항 철도의 관리 현황

명칭	군산 내항 철도	**문화유산 유형**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70	**규모**	910m
특징	1920-1930년대 부설되어 군산 내항의 공간 구조 형성의 기반이 됨.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군산의 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 시설		
소유자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군산시 등	**관리자**	군산시
사용 현황	미사용, 복원 사업 승인 완료,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이용		
관리조직 및 인력	• (군산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유산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용 사업을 포함한 문화유산 관련 사업 전반은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 추진 • (코레일) 철도시설은 코레일에서 관리하나, 철도 훼손으로 미사용(현재 복원 사업 계획)		
유관기관 간 협의과정	해당 사항 없음 (훼손 철도 복원 위해 2018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록 시 개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업무 분담사항	**군산시**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완료(2021), 훼손 철도 복원 승인 신청 및 완료 • 이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관련 문화유산 사업 전반 추진	
	국가유산청	• 정기조사(2023년 수행), 현상변경 심의(필요 시)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국비 지원(2018~)을 통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원	
	이외 기관	• (코레일) 박물관 및 관광시설 조성 계획 추진을 위해 소유지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 군산시에 행정재산 점용허가 예정	
기타 관리현안	• 군산 내항 철도는 훼손 철도 복원을 위해 2018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 당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나,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복원 승인 완료 이후 철도 복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미선정에 따라 복원 미추진 상태임 •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코레일) 등 다양한 부처가 소유한 국·공유지이나 국가유산청 외 부처에서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고 관련 인력이 없어, 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과 함께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		

출처: 국가유산포털. '군산 내항 철도'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검색일: 2024.05.10.);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면담(면담일: 2024.04.2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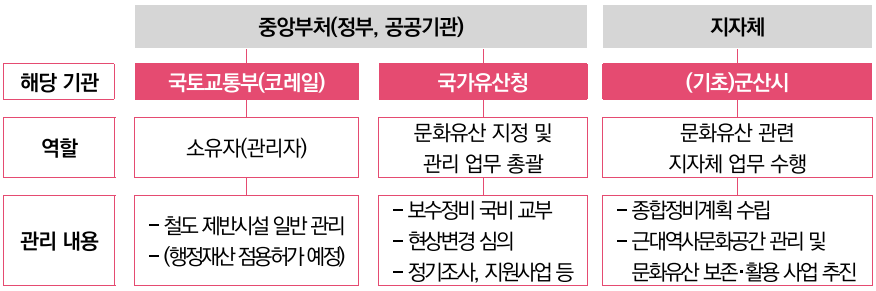

[그림 3-10] 군산 내항 철도의 관련 기관별 업무 수행현황

출처: [표 3-24]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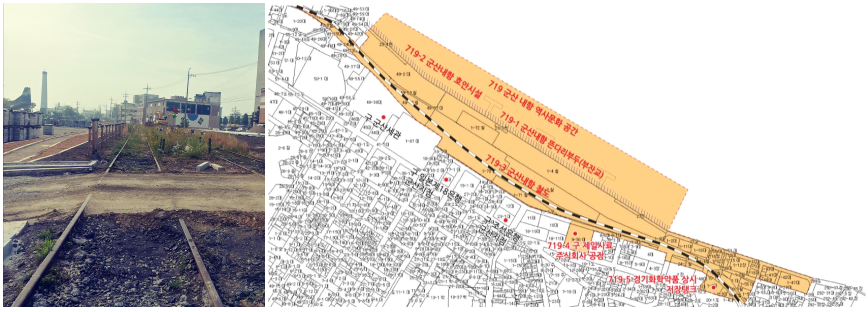

[그림 3-11] 군산 내항 철도의 전경 및 배치

출처: 국가유산포털. '군산 내항 철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검색일: 2024.05.10.)의 그림 재인용

□ (통합관리조직 사례)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2019년 등재 이후 통합관리 중심 체계 개편에 따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개소 및 운영
  - 2012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유산청, 9개 서원 소재 14개 광역·기초지자체가 MOU를 체결, 등재추진단 발족
  -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홍보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와 함께, 14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분산된 9개 서원의 연속유산으로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단'에서 '통합관리센터'로 개편, 통합관리조직 운영
  - 통합관리센터는 재단 이사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 등 25명 내외, 사무국은 센터장 등 9명, 분과위원회는 각 지자체별 행정담당자 및 전문가, 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세계유산보존협의회, 통합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로 구성
  - 통합관리센터 예산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에 근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일부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활용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통합관리센터가 서원별 기초 DB 제공,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재해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법정계획 수립 지원 등 업무 수행
  - 지자체의 서원관리 업무 수행 및 세계유산 정기보고 등을 위한 기초 DB(연간 방문자 수, 서원별 OUV 속성 및 특성, 관리 필요 기초자료 등) 제공
  -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해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 부서 외 건축, 도시 등 타 유

관부서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작성, 정기적인 지자체 공무원 교육 수행

- 재해예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9개 서원 CCTV 구축 및 모니터링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각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주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9개 서원별 운영위원회, 14개 지자체 통합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재단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절차 마련 및 운영
-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세계유산 시행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지원

[표 3-25] 한국의 서원의 관리 현황

명칭	한국의 서원 9개소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문화유산 유형**	사적 세계유산(연속유산)
위치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44-12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규모**	(세계유산구역)1,024,900㎡ (완충구역)7,967,400㎡ (사적별) 소수서원 89,975㎡, 남계서원 41,218㎡, 옥산서원 95,681㎡, 도산서원 506,355㎡, 필암서원 52,666.8㎡, 병산서원 27,251㎡, 무성서원 8,015㎡, 64,699㎡
소유자	(소수서원) 소수서원 등 (남계서원) 남계서원 등 (옥산서원) 옥산서원 등 (도산서원) 도산서원 등 (필암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등 (병산서원) 병산서원 등 (무성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돈암서원	**관리자**	(소수서원) 영주시 (남계서원) 함양군 (옥산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안동시 (필암서원) 장성군 (도동서원) 달성군 (병산서원) 안동시 (무성서원) 정읍시 (돈암서원) 돈암서원
사용 현황	성리학과 관련된 서원의 전통적 기능(제향, 강학, 교류)의 지속적 보존 유적		
관리조직 및 인력	• (개별 지자체) 영주시, 함양군, 안동시, 장성군, 달성군, 안동시, 정읍시 등 7개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부서가 서원 관리자로서 업무 수행 • (개별 서원) 옥산서원, 돈암서원 2개소는 서원에서 직접 관리 •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연속유산으로서 9개 서원 통합관리 – 구성: 재단 이사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 인력: (이사회) 이사장 1명, 이사 22명(15~25명 내외, 광역·기초지자체별 당연직이사 1명씩 총 14명 포함), 감사 1명 : (사무국) 센터장 1명, 본부장·실장급 2명, 교육홍보팀·유산관리팀 각 3명		

		※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총 4개 위원회로 구성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전문위원 10명 : (통합 행정위원회) 서원 소재 14개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사무국 센터장 : (전문위원회)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자문위원) 9명 : (9개 서원 운영위원회) 각 서원별 전문가, 공무원, 주민, 관계자 등 10명
유관기관 간 협의과정		– 2012년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유산청, 9개 서원 소재 광역·기초지자체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 해당 MOU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등재추진을 위한 추진단 및 통합관리단의 발족 및 업무 할당,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한 재단 운영 예산 확보 등이 순차적으로 병행 – 2015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으로 개편 – 2019년 한국의 서원 9개소 세계유산 등재 이후 기구 개편 – 2023년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개소
업무 분담사항	**통합관리 센터**	• 연속유산 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홍보방안 마련(유네스코 권고사항) • 정기보고를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 9개 서원 통합관리 모니터링(서원별 CCTV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환경 구축) • 이외 각 분과위원회 운영, 세계유산 기초관리,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홍보,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문화유산 관련 사업 수립 절차 사업구상: 통합관리센터 (사무국 등) ▶ 의견수렴: 9개 서원별 운영위원회 ▶ 검토조정: 통합 행정위원회 ▶ 의결: 재단 이사회
	국가유산청	• 정기조사, 현상변경 심의(필요 시),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등 문화유산 관리 전반 지원 •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자체 및 통합관리센터와 MOU 체결
	지자체	• (기초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업무(문화유산 부서), 정기보고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이외 부서 협력), 서원별 지역 주민 돌봄사업 지원 등 *기초지자체 업무 수행 관련 데이터 백업,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제공, 담당자 교육 등은 통합관리센터에서 수행 • (광역지자체)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지원 등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은 법정 5개년 계획으로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며, 2023년 6개 광역지자체 및 통합관리센터에서 수립
기타 관리현안		• 14개 광역·기초지자체에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통합관리체계 및 통합홍보방안 등 마련 필요에 따라(세계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 권고사항), 등재 완료 이후에도 통합관리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됨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초 관리업무와 문화유산 관련 행정업무를 지자체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DB, 체크리스트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관리 • 9개 서원에 CCTV를 설치하여 서원 내·외부 변화에 대하여 사무국이 모니터링 수행

출처: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k-seowon.or.kr/?act=main;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정관. https://k-seowon.or.kr/data/file/regulation/01.pdf; 국가유산포털.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검색 결과.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검색일: 2024.05.10.); 박진재.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가치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 현황과 과제. 2023년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학술포럼 발표자료.(2023.11.10.);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면담(면담일: 2024.04.19.)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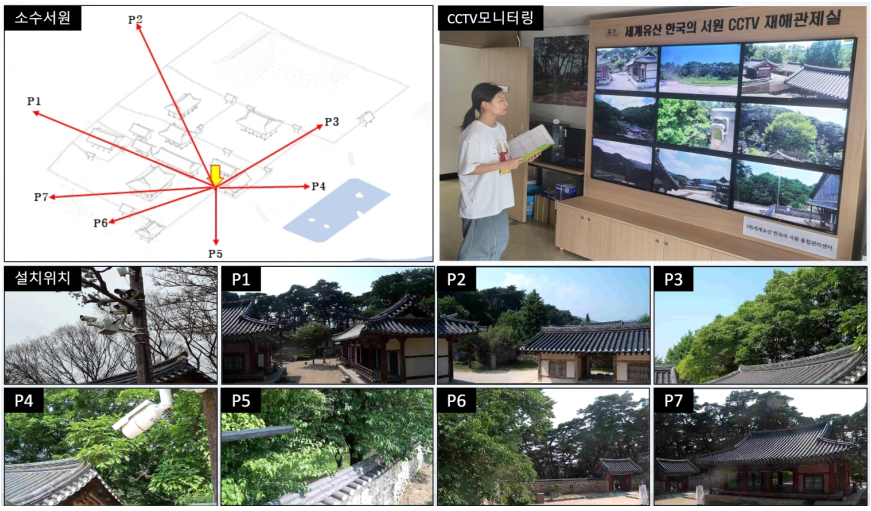

[그림 3-12] 9개 서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출처: 박진재.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가치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 현황과 과제. 2023년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학술포럼 발표자료. p.36.(2023.11.10.)의 그림 재인용

4.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종합

□ 지정범위 관련

- **(문화유산 유형: 사적)**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정을 위한 선행연구는 사적 지정을 제안했으며, 국외 유사사례인 일본 애생원도 사적 지정 추진 중
  - **(지정 가치)** 선행연구는 소록도가 사적으로서 지정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
  -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및 일본 애생원은 특히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적 지정 제안
- **(지정범위: 전체)** 선행연구는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의 사적 지정 제안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사적 및 등록문화유산을 전체 또는 부분 지정(등록)하는 4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며, 소록도의 자연·인문·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섬 전체의 사적 지정 제안
  -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 병원 기능 및 관리주체가 변화하더라도 소록도의 역사성·장소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섬 전체의 사적 지정 제안
- **(지정범위: 조사·검토)** 일본 애생원은 사적 지정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체

계적인 조사(전수조사, 상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애생원 장래 구상, 애생원 보전·활용 비전 등 장기계획 하에 사적 지정 추진. 소록도의 경우 현재까지 국립소록도병원 발전방안 연구는 병원 기능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의 보전·활용에 대한 장기계획은 미비

- 애생원의 사적 지정범위가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지정범위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

• 소록도의 경우에는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을 통해 섬 전반에 대한 1차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짐. 건축물 400개소, 구조물, 기념조형물, 기타(길, 터)에 대한 일반 현황조사 및 그 중 건축물 214개소에 대한 기초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이후 소록도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심화조사 추진 미흡

- 건축물 400개소 등에 대한 건립시기, 관리상태(양호, 손상(단순손상, 복합손상)), 보존상태(양호, 불량)에 따른 통계. 가치평가(역사성, 학술성, 보존상태, 상징성, 활용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1-5점 부여)를 통한 등급(A-E) 구분

- 건축물 214개소에 대한 건축물별 명칭, 용도, 소재지, 건립연도, 면적, 구조, 지붕재료, 보존·관리상태, 주요 특징, 조사자 의견 등을 1 페이지 분량으로 기록. 주요 사진 및 약실측 평면도 수록

-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에는 소록도 관련 사료 및 2020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별로 연혁과 건축물 분포 현황을 간략히 설명

[표 3-26] 지정범위 관련 제안의 정리

구분		선행연구		사례
		보존·관리 종합계획	사적 지정 신청 연구	일본 애생원
대안	유형	사적, 등록문화유산	-	사적
	지정범위	4가지 대안 제시	-	3가지 대안 제시
제안	유형	사적	사적	사적
	지정범위	섬 전체	섬 전체	※전수조사를 통한 범위 검토
	필요성	• 지정 가치 충족 • 세계유산 등재 • 종합적인 보존·관리	• 지정 가치 충족 • 역사성·장소성 보호	• 세계유산 등재

출처: 연구진 작성

□ 관리주체 관련

• (통합관리조직의 운영) 세계유산과 연계된 경우, 통합관리조직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됨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관련 기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치 및 주민협의회 참여 제안
- (일본 애생원) 한센병 관련 유산화를 총괄 진행하는 NPO법인을 조직하여, 국가·지자체·전문가들의 소통창구 및 계획 수립과 추진 주체로서 역할
- (한국의 서원) 9개소 연속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조직. 주요 사안은 통합관리센터가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결정

• (소유자의 관리 및 지자체의 지원)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 구 공업전습소 본관(근대사적)은 소유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해당 문화유산을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임
- 하지만 보수·복원공사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진행
- 군산 내항 철도(국가등록문화유산)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직접 관리

[표 3-27] 관리주체 관련 제안 및 사례의 정리

구분	제안		사례			
	보존·관리 종합계획	사적 지정 신청 연구	일본 애생원	구 공업전습소 본관	군산 내항 철도	한국의 서원
유형	사적	사적	사적	사적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유산	사적 세계유산
관리주체	재단법인	병원(복지부)	NPO법인	학교(교육부)	지자체	재단법인
특징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 관리주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상 관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연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속유산 통합관리

출처: 연구진 작성

□ 명칭 관련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은 문화유산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으며,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에서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을 제시
- '한센'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려하고 소록도의 근대역사 강조하기 위한 것

• 관련 사례로 일본 애생원은 기존 시설 명칭인 '애생원'을 사적 명칭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74]

74) 장성곤 자문회의(자문일: 2024.04.16.)

제4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제안

1.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2. 지정범위의 대안 검토
3. 관리주체의 대안 검토
4. 명칭의 대안 검토
5.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로드맵 제안

1.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1) 관계자 면담을 통한 쟁점 도출

① 관계자 면담 개요[75]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쟁점 도출을 위해 관계자 면담 실시

- (대상) 소유자이자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리자인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병원장,[76] 기획운영과, 원생자치회), 소록도 내 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유산 지정·등록·관리·지원 주체인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75) 4.1의 관계자 면담은 [표 4-1]에 기입된 일자의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별도의 출처 표기를 대신하고자 함. 또한 '박물관'으로 표기한 주체는 기획운영과 소통지원팀 내에서 한센병박물관 운영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및 주무관을 가리킴

76) 병원장은 2024년 5월 임기 종료이며, 신임 병원장 취임 시기는 미정임

[표 4-1] 관계자 면담 일정

구분	대상		일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03.14. 2024.04.25.	2024.05.29.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		2024.03.27.	2024.04.01.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	2024.04.01.	
		시설팀	2024.04.02.	
		소통지원팀(박물관 담당)	2024.03.14. 2024.03.27.	2024.04.02. 2024.05.17.
	원생자치회(회장)		2024.04.02.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2024.03.21. 2024.04.25.	2024.06.10.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2024.04.03.	

출처: 연구진 작성

② 문화유산 지정 관련 기본입장

□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치료·보호이며 병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필요

- (국립소록도병원) 소록도는 기본적으로 병원이며, 소록도에 거주하는 환자의 치료·보호가 가장 우선임을 공통적으로 강조
  - (운영지원팀) 기본적으로 1명의 환자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병원 기능 유지 필요
  - (보건복지부) 소록도 관리에 있어 국립소록도병원의 의견 존중 입장

※ (국가유산청, 고흥군) 소유자·관리자의 의견 존중 입장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관광지로서의 활용 반대, 소록도 가치 보존을 위한 사적 지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

- (국립소록도병원)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문화유산 활용 = 국비·지방비 투입 = 고흥군 개입 = 관광지 개발 = 일반인 개방 = 소록도의 특수성 및 환자 거주권 침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1990년대 고흥군이 병원측 의견을 배제하고 소록도 관광지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77] 국립소록도병원은 고흥군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음

77) 1996년 고흥군은 소록도, 나로도, 거금도 등을 연계한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소록도 관리권을 요구한 바 있음. 연륙교 건설을 앞두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는 소록도를 전시장,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갖춘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임(최권일. (2002). 소록도, 개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남도일보. 11월 4일 기사. https://

- 국립소록도병원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록도를 관광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소록도 내 문화유산을 활용(개방)하고자 한다고 파악

※ 국가등록문화유산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에 대해 고흥군이 국립소록도병원과 협의 없이 매입을 시도하고 보수공사(국고보조사업)를 추진한 것도, 고흥군에 대한 병원의 반감을 유발

※ **(국가유산청, 고흥군)** 소록도는 현재 병원이며 환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광지 혹은 활용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며, 사적 지정에 기본적으로 찬성
- **(보건복지부, 박물관)** 소록도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외부의 압박을 봉쇄하는 수단으로서 사적 지정 고려
  - 소록도 내 문화유산이 현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황 우려.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가 잘 보존되기를 바람
  - 나아가 문화유산의 개별적 관리보다는 면단위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하여 남기는 것이 우선이며, 사적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는 그 과정의 산물로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님을 강조
  - 따라서 '활용'을 전제로 한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

※ **(국가유산청)** 소록도를 문화유산으로서 보호·관리하는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다만 사적은 현재 그 기능이 종료되었으며 역사적 해석이 이루어진 터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소록도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사적 지정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가장 바람직함. 한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 관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소록도의 실정과는 맞지 않으며, 현재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전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정리되지 못함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의지'임. 따라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적이더라도 음성화될 수 있으며, 등록문화유산이어도 원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

---

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70(검색일: 2024.04.26.))

□ (국립소록도병원) 하지만 사적 지정에 따른 병원 영향 우려

-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개보수 필요)**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있어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하나, 사적 지정 후 원형유지 원칙에 따라 현상변경에 어려움 발생 우려
- **(일반인 공개에 따른 환자의 보호 문제)** 사적으로 지정되면 사적 지정범위에 대한 일반인 공개 요구가 뒤따라올 것이라 예상. 특히 환자 측에서 일반인 공개에 대한 반대 큼
- **(사정 지정 이후 관광지화 우려)** 소록도는 병원이자 환자의 삶의 터전으로서, 사적 지정이 외부에서 소록도를 관광지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 우려

  ※ (고흥군) 사적 지정은 개발 저지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관광지화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

- **(문화유산 관리 문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보건·의료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립소록도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 사적 지정 신청 과정에서 병원 내·외 의사결정권자간 의사소통, 협의체계 미흡

-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이 국립소록도병원 및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적 지정 추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병원장)**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소록도가 관리대상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며, 고흥군도 소록도가 보건복지부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적 지정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 의견 회신보다는, 고흥군의 사적 지정 신청을 아예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소록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도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가짐
  - **(운영지원팀)** 고흥군의 사적 지정 신청 연구용역의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으며, 병원 입장이 연구용역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원생자치회)** 소록도에 대한 결정이 소록도 내부가 아닌 외부(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적 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주민 의사가 배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병원과 주민간의 의사소통도 미진하다고 인식

- (고흥군) 고흥군은 사적 지정 신청 과정에서 국립소록도병원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
  -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는 국립소록도병원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입장(세미나, 주민설명회 등)
  - 사적 지정 신청 시 고흥군은 박물관과 협의했으나, 박물관 – 국립소록도병원 – 보건복지부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박물관) 고흥군이 사적 지정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고흥군에게 전달

□ 향후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의 소록도

- 앞으로 소록도는 관광지가 아닌,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입장
  - (박물관) 소록도는 인간 존엄성, 성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미래에 전달할지를 모색하는 장소로서 의미 가짐
  - (병원장) 현재까지는 일제강점기 역사만 부각되었으나, 현대를 포함한 소록도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곳으로 유지·관리·전달되어야함

※ (고흥군) 소록도는 관광지가 아니라 교육의 장소라 판단

③ 지정범위

□ 병원 건축물 현상변경 관련

- (국립소록도병원) 건물 노후화에 따라 많은 보수공사 필요하나, 사적 지정 후 현상변경 심의에 너무 많은 협의 발생 우려
  - (운영지원팀) 현상변경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절차가 생기게 되므로, 병원 자체적으로 건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될 것 우려
  -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과,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의 사적화는 다르므로, 주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사적 지정 시의 장단점 검토 필요 의견 제시
  - (시설팀) 건물이 상당히 낙후되어 기존 구조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데 어려움 있으며, 거주 가능하도록 보수하기 위해 구조·설비 등을 전부 교체해야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할 것 우려
  - (병원장, 시설팀) 소록도 내 모든 건물의 원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 (고흥군) 병원은 현상변경 심의 우려하나, 오히려 사적 지정 후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원시설 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 제시

- (보건복지부) 향후 병원 운영계획은 현재 논의단계이며, 현재로서는 신축 계획은 없음
  - (보건복지부) 올해 병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 추진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기능 전환에 따른 건물 신축 계획은 없을 것.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정도의 건축행위 예상
  - (병원장) 와상환자는 치료병동(병원본관)에 입원하게 되는데, 환자 고령화됨에 따라 치료병동의 병상 수요가 증가하면 증축이 필요해질 가능성 있음

□ 일반인 공개범위 관련: 병사구역·관사구역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직원 거주하는 병사구역·관사구역에 대한 일반인 공개범위 제한 필요
- (병사구역) 환자와 외부인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범위 제한 필요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출입 통제, 공개 제한 필요
  - (원생자치회) 주민과 외부인이 접촉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사적 지정과 별개로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 다만 현재 주민 거주구역이 방대하여 이를 모두 제외하면 일반인 관람 가능구역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라 예상
- (관사구역) 직원이 거주하는 관사구역도 공개범위 제한 필요
  - (병원장, 운영지원팀) 연륙교 개통 이후 육지화되었으나 직원 대부분이 관사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공개제한 필요

※ (국가유산청) 지정문화유산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거주자의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공개 사유를 적은 고시를 통해 제한 가능

□ 일반인 공개범위 관련: 현재 공개구역

- (국립소록도병원) 현재 공개구역(중앙공원, 박물관)에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움

- 관람객들이 소록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병원장, 박물관)** 관람객은 버스를 대절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안내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 후 공개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해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도 함. 공개구역 내에서도 충분한 관람보다는 화장실 이용, 휴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음. 출입 통제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역으로 들어가는 관람객도 존재. 소록도의 역사적 내용이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

- 현재 공개구역이 병원본관과 중앙리 생활병동 인근에 있어 환자 동선과 겹치나, 오랜 기간 일반인 공개구역으로 자리 잡아 계속 유지 가능

  - **(원생자치회)** 중앙공원, 박물관이 환자의 병원 이동동선과 겹쳐 불편함이 있으나, 현재 주민에게도 적응된 상태임

  - **(병원장)** 현재 공개구역을 유지하되, 제비선창(병사구역과 관사구역 사이에 위치. 길 복원 필요)을 포함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현재 공개구역에 포함되는 문화유산(부동산)은 2건이며, 이외 문화유산으로까지 공개구역이 확장된다면 병사구역을 통과해야하는 문제 발생하므로 관람동선 통제 필요

  - **(운영지원팀)** 현재는 원생자치회 선도반이 한센병박물관 앞에서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개구역 확장 시 관람동선 설정, 안내 필요

  - **(시설팀)** 투어프로그램 운영 시 도보이동에는 어려움 예상되어, 병사구역은 버스로 통과하는 등 한정된 장소만 갈 수 있도록 제한 및 주민 이해를 구할 필요

  - **(박물관)** 올해부터 신청인에 한해 도보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병원시설의 이전 방안, 생활병동의 중앙집중화 방안 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실성 부족

  - **(병원장)** 환자와 외부인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중앙리 병원시설을 소록도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환자수에서 병원시설 신축예산 투입 어려움 예상. 또한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병동(마을)을 중앙집중화하는 방안(중앙리, 녹생리)이 있으나 환자들이 거주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한 큰 반감 가지고 있어 현실성 부족

  - **(운영지원팀, 박물관)**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생활병동의 중앙집중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환자들이 본인 생활공간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 이주

는 불가능. 향후 환자수가 감소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와의 협의·조율 과정 필요

- **(원생자치회)** 관리 편의를 위한 생활병동 중앙집중화 방안은 행정중심적 사고라는 입장

□ 지정범위 관련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보호 및 병원 운영을 위해 사적 지정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
  - 현시점에서 섬 전체 사적지정은 어려움
  - **(병원장)** 단순히 섬 전체지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병원 기능 유지의 문제, 사적 지정에 따른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범위를 설정할 필요
  - **(박물관)** 섬 전체가 환자들의 생활공간이자 불우한 신체로 삶을 영위한 공간으로서 모든 인프라와 시설물을 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관리해온 장소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십자봉 소풍길 등). 원칙적으로 사적 전체지정이 바람직하며 부분지정 시 역사 왜곡 우려. 다만 병원 내부적으로 전체지정에 대한 부담 존재
  - **(시설팀)** 향후 병원 기능 종료 후 섬 전체가 역사적 장소가 되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섬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음. 생활병동 및 관사 모두 현재의 편리한 생활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지정 시 시설 관리에 어려움 예상

  ※ **(고흥군)** 사적 지정 신청 과정에서 지정범위의 3가지 안(①국가등록문화유산 중심의 부분지정, ②주요 길 중심의 부분지정, ③전체 지정)을 제시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①, ②안에 대해 반발하여 ③안으로 신청한 것

- 병원 기능 유지되어야할 핵심영역, 현재 사용영역 등 제외하고 부분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 **(보건복지부)** 병원 측에서 전체지정에 대한 부담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지정범위 설정 바람직
  - **(병원장)** 중앙리(병원본관 인접. 중앙리 생활병동 위치), 녹생리(신환자 거주. 중앙리 인근)는 향후에도 병원으로서 유지되어야할 핵심영역임
  - **(박물관)** 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적 지정하며 단계

적으로 범위 확대할 필요. 서생리(폐쇄), 구북리, 남생리(각각 10여 명 거주) 등 고려

- (시설팀)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서 과거 모습이 남아있는 부분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서생리, 구북리, 남생리 등 고려

※ (국가유산청(2024.04.25.)) 문화유산위원회가 해당 지정범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사적 지정 심의. 지정범위 넓고 건물 많고 가치판단 요구하기 때문에 심의에 긴 시간 소요 예상. 심의에서 건축연도를 유의미하게 검토하는데, 건설된 지 50년 경과하지 않은 건물은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되면 제외될 수 있음.[78] 부분지정 후 향후 건축연대가 올라가면 나머지 영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 (국가유산청(2024.06.10.)) 소록도 섬 전체는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므로, 역사적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축물·시설물 중심의 영역을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자연환경은 환경부의 기타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 고려.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추후 근대사적으로 승격 지정하는 방안

④ 관리주체

□ 문화유산 관리 현황 관련

- 학예연구사 1명을 중심으로 소록도 내 문화유산(동산, 부동산) 관리하는 실정으로 문화유산 관리 인력 부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문화유산 관련 전문성 부족함
  - (병원장)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학예직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학예연구사 1명뿐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역사·문화유산 관련 인력 추가 채용 어려움 예상
  - (시설팀) 시설팀은 문화유산 현황 파악하지 않으며, 문화유산 전문인력 부재하여 보수 등 관리에 대한 의견 개진 어려움. 또한 시설팀은 현재 사용하는 병사·관사구역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실정
  - (박물관) 한정된 인원으로 정기적인 문화유산 현황 및 보수공사 모니터링 실시. 향후 병원인력 충원되어도 박물관이 아닌 의료인력이 충원될 가능성 높음. 또

78) 단,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예비문화유산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해야함(「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한 소록도 역사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연구 필요. 역사, 건축, 의학, 사회학, 인류학 등 학제간 연구 필요

□ 문화유산 관련 예산 부재

-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 (병원장, 운영지원팀) 전체적으로 건물 노후도 심각하나 시설장비유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 도배, 장판, 지붕 보수 정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은 불가능. 직원이 자비로 관사를 리모델링하기도 함
- 문화유산 관리 예산 책정되어있지 않으며,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 통해 보수
  - (보건복지부) 문화유산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있음
  - (병원장) 협회 등 민간소유의 경우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 소유로 인해 후원 불가능
  - (시설팀) 병원 예산 중 문화유산 보수 관련 비용이 책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생활병동 수리 후 잔여예산으로 긴급 보수공사 실시하거나 국고보조사업 실시
  - (박물관, 고흥군) 박물관의 문화유산 현황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고흥군청 협의하여 매년 3-4건 정도 국고보조사업 실시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인 보건복지부가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

□ 관리주체 대안 관련

-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 예산 확충 필요
  - (원생자치회) 소록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 (시설팀)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며, 별도의 예산, 조직, 인력 확충 필요. 특히 박물관 인력 필요
  - (박물관) 사적 지정 이후 문화유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센병박물관을 병원시설로 인지
  - (보건복지부) 학예연구사 등 필요 인력 채용하여 문화유산 관리팀 조직 방안 등 마

련 필요. 행안부와 협의하여 조직 개편, 인력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 필요

- (지자체)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상황
  -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은 병원과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해옴
  - (병원장) 지자체장은 임기 내 업적을 남기려는 경향 있어, 지자체가 관리주체 되면 소록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 높음
  - (원생자치회) 고흥군은 소록도를 개발하려는 입장이기에 고흥군의 개입을 막을 필요. 소록도 개발은 주민들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와 같음

  ※ (고흥군) 소록도는 현재 병원이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흥군, 전라남도에서 소록도에 대한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음. 고흥군수가 소록도 관리의 지자체 이관, 개방 추진을 올해 초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녹동상인회를 의식한 것으로, 녹동상인회는 소록도 개발이 아닌 소록도 배후지역으로서 녹동항의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관람객 흡수 기대

- (TF, 재단 설치, 국가유산청 관리 등) 보건복지부 TF 운영, 재단 위탁관리, 국가유산청 직접 관리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병원장) 병원 사용부지를 제외한 문화유산 지정부지를 국가유산청의 국유지로 전환하여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거나, 재단 설립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 고려
  - (시설팀) 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보수 예산 집행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박물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유산 관리인력, 예산 마련에 긴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 측면에서 국가유산청 직접 관리가 바람직

  ※ (국가유산청) 소록도는 소유자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

⑤ 명칭

- 대체로 사적 지정 신청 당시 명칭(안)이었던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에 합의
  - (보건복지부)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 명칭에 기본적으로 합의함. 소록도는 소록도 자체로 의미 있으며 고흥군과 연계하여 가치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명칭에 지자체명이 들어가는 것에 반감이 있어왔으나, 명칭 부여 지침에 의한 것임을 수용하는 입장
  - (병원장) 소록도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한센'이 들어가

는 게 바람직하나, 주민 및 고흥군에서 해당 용어에 반감 표현하는 실정

- (박물관)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선별 보고서에서 선정한 명칭인 '소록도 갱생원'은 일제강점기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전체 역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명칭이라는 의견 제시

※ (고흥군) 사적 지정 추진 당시 '고흥 소록도 한센 관련 시설'로 명칭 신청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해당 용어를 극히 싫어함에 따라 의견 수렴하여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으로 결정한 것

2)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출한 쟁점을 바탕으로,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2024.04.23.)
  - (대상)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6인

① 지정유형

□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기존 사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새로운 개념 제안 필요

- 소록도가 근대사적으로서 지정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 분분
  - (의견1) 근대사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지정해왔으며 건축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 소록도의 개별 건축물의 우수성이 높지 않으므로 근대사적 대상에 부적합. 소록도가 가지는 근대사적으로서의 지정 가치 정립 필요
  - (의견2) 소록도가 기존 근대사적 범주에 들어오지는 않으나, 역사적 장소로서 가치를 가지기에 면단위 사적으로서 지정 가치 충분함. 또한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한다면 원형 보존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사적 수준의 보존 필요
-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기존 제도와는 다른 시각 필요
  - (사적) 사적은 현재 기능 종료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나, 소록도는 계속 사용하는 공간임
  - (근대사적) 근대사적은 법적으로 사적에 포함되나 사적과 달리 우수한 개별 건축물 위주로 지정되어 왔으며, 소록도는 개별 건축물 우수성 떨어지며 면적이

광범위하여 유사한 기존 사례가 없음

- (**근대역사문화공간·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및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우려하는 개발사업 추진 우려

- 등록문화유산 제도 초기에는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과정적 단계로 보고, 등록문화유산이 향후 근대사적,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으나, 실제로 승격된 사례는 없음

• 보존과 사용이 공존할 수 있는 수단 필요

- 현 단계에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

- 현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사적 지정, 또는 활용이 아닌 '사용'하는 공간이자 보존이 중심이 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 필요

- 병원 기능 유지 및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점단위 및 면단위 보존, 사적 지정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이의 유불리, 필요성 판단 필요

[표 4-2] 기존 문화유산 제도의 특징과 쟁점

구분	대상	기능 유지 여부	목표	쟁점	방향
사적	유적(터)	기능 종료	보존	→ 병원 기능 유지 필요	→ 새로운 사적 개념 필요
근대사적	우수한 개별 건축물	기능 유지 (활용)	보존	→ 개별 건축물 우수성↓ → 면적 광범위	
근대 역사문화공간	근현대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기능 유지 (활용)	보존·활용	→ 활용이 아닌 보존 필요	→새로운 근대 역사문화공간·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 필요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집합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기능 유지 (활용)	보존·활용	→ 활용이 아닌 보존 필요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바탕색 표기

출처: 연구진 작성

□ 시간에 따른 세분화된 시나리오 제안 필요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치료·보호이며 병원으로서의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소록도는 원래 병원이었으나 현재는 병원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문화유산으로

서의 역할이 추가되는 시점임. 병원(사용)과 문화유산(보존)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활용'은 병원 기능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의 논의할 필요

- 기능 변화의 관점에서 현재 병원에서 향후 병원 기능 종료 후 문화유산·관광지 등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시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병원+점단위 문화유산 → 병원+면단위 문화유산 부분 지정 → 사적 전체 지정 →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지정의 시나리오 설정 필요

② 지정범위

□ 시간에 따른 지정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해갈 필요
  - 현재는 환자 중심으로 지정범위를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정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고려
  - 소록도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
  - 현 시점에서는 초기 형성된 마을로서의 역사성을 가지며 주민수가 적은 서생리(폐쇄), 구북리, 남생리의 사적 지정이 적절할 것
- 기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조치 고려 필요
  - 소록도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면단위 사적 지정 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고려 필요
  - 기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중심으로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범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 일반인 공개범위는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 가능

- 지정유형과 별개로 일반인 공개범위는 얼마든지 제한 가능
  -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등 주민과 일반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개동선을 설정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으며, 소록도 방문 사전에 이를 홍보·안내할 필요
  - 역사적 길, 공간 등을 중심으로 공개범위 설정 필요

③ 관리주체

□ 대안1: 국립소록도병원(박물관)

- 소록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문화유산 관리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협조 필요
- 향후 병원 기능이 축소된다면 병원에 소속된 한센병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박물관의 역할을 점차 강화하는 방안 고려
  - 병원에서 치료의 기능은 축소, 문화유산 관리의 기능을 강화해가는 방안
  - 보건복지부에서 박물관에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보건복지부가 박물관 직접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정 등)
  -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박물관, 국토교통부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박물관 사업 참고할 것

□ 대안2: 재단 등 별도조직 마련

- 재단을 설립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
  - 보건복지부의 성격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는 다르므로 박물관 직접 운영 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에 어려움 예상
  - 따라서 외부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면, 보건복지부가 일종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외부에서 후원을 받기에도 유리할 것. 환자들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
- 협의체 운영 필요
  - 현재 소록도 관계자간의 견해차가 있으므로 이를 중재할 협의체 필요
- 국가유산청의 관리 참여
  - 근대역사문화공간·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도 국가유산청 및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가 공간 조성사업에 관여할 수 있다면, 보존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

④ **명칭**

- 주민에게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적절하며, 추후 필요 시 개정 추진
  - 대체로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에 동의
  - '한센인' 용어는 오래 사용되어왔으나 주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

3)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기본방향 설정

- 소록도가 병원으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환자의 치료·보호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설정 필요
  - 소록도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선행연구(2건)에서는 병원으로서의 기능 유지에 대한 고려 부족
- 소록도에 적합한 문화유산 유형에 대한 고려 필요
  - 선행연구(2건)는 모두 사적 지정을 제안했으나,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에서 사적 및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근대역사문화공간)·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에 대한 유불리 판단 필요성 제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제안 필요
  - 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환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용영역을 제외한 부분지정,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주요영역의 부분지정, 부분지정 후 점진적 확대 등 지정범위 관련 여러 의견 제시
  - 문화유산 지정범위와 일반인 공개범위는 별개로 설정 가능
- 병원과 문화유산의 관리를 이분화하고, 관계부처 등 협업 필요
  - 현재 소록도 관리자는 병원으로서, 문화유산 관리능력이 부족한 실정
  - 국립소록도병원의 향후 기능 전환이 예측되는 가운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록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명확화 필요
  -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보수·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소관 지자체(전라남도, 고흥군) 및 소록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 등과 협업 및 관계 설정 필요

- 소록도의 가치를 포괄하고 갈등요소가 없는 명칭을 부여할 필요
  - 현재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에 있어 명칭은 주요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관계자들이 합의하는 명칭으로 부여하고 추후 필요시 개정 추진

[표 4-3] 문화유산 유형 및 지정범위 관련 의견 종합

구분	기본입장	문화유산 유형		지정범위		공개범위
		사적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부분	부분
보건복지부·병원	• 치료·보호 최우선 • 역사적 가치 보존 필요 • 관광지화 우려	● ※활용 반대		△ ※역사적 가치 보호 필요	●(단계별 확장) ※병원 기능 유지 위한 시설 관리 필요	●(현재 범위) ※일반인 공개에 따른 환자 보호, 치안 문제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에 포함 필요	△ ※사적 지정 요건 부적합	● ※제도에 부합		●(건축물 위주) ※역사적 사건 발생 영역으로 한정	● ※비공개 가능
고흥군청(문화체육과)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 ※의견수렴		
전문가	•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 마련 필요	● ※소록도에 적합한 개념 필요 ※유불리 판단 필요	●		● ※점진적 확대	● ※다양한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4] 문화유산 관리주체 및 명칭 관련 의견 종합

구분	기본입장	관리주체		명칭		
		국립소록도병원	지자체	별도 조직	국가유산청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
보건복지부·병원	• 치료·보호 최우선 • 역사적 가치 보존 필요 • 관광지화 우려	△ ※예산·조직·인력 확충 필요		● ※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	● ※대체로 합의 ※환자들의 '한센' 거부감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에 포함 필요	● ※소유자 관리				
고흥군청(문화체육과)	• 의견수렴 결과	● ※현재 관리주체				● ※의견수렴
전문가	•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 마련 필요	● ※박물관 역할 강화		● ※재단 위탁 관리, 협의체	△ ※관리 참여	● ※환자에게 부정적 정서 야기 부적절

출처: 연구진 작성

2. 지정범위의 대안 검토

1) 문화유산 유형별 특징

□ 문화유산 유형을 점단위, 면단위로 구분하여 특징 비교

- '병원 기능 유지' 및 '문화유산 보존'으로 구분하여 제도 비교([표 4-5] 참조)
  - (**병원 기능 유지**) 건축물의 개보수, 문화유산의 주변환경 개선, 일반인 공개와 관련된 사항
  - (**문화유산 보존**) 지정(등록) 조건,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범위·대상·수리 지원·계획,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

□ 점단위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근대사적

- 국가등록문화유산
  - (**병원 기능 유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근대사적에 비해 건축행위 제약이 적음. 외관 및 필수보존요소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개보수 수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지 않아 주변 행위제한 없음

  ※ 단, 「건축법」 적용에 따라 대수선 이상,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지자체 허가권자의 건축 인허가 필요.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건축성능 개선을 위한 설비, 소방, 내진구조 등 관련 현행법 적용(「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라 일부 완화)

  - (**문화유산 보존**) 보존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행위 제약이 적고 「건축법」 적용됨에 따라, 원형 훼손의 가능성이 근대사적에 비해 높음
- 근대사적
  - (**병원 기능 유지**) 당해 문화유산의 수리, 정비, 복구 등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필요. 또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의 검토 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필요.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건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행정절차 소요로 인해 공사 지연의 우려 있으나, 장기적으로 문화유산 주변 경관의 유지 가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시행 가능
  - (**문화유산 보존**) 원형유지의 원칙에 따라, 원형 훼손의 가능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비해 낮음

※ 단, 근대사적은 우수한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옴에 따라, 소록도 내 건축물의 근대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가치 정립 필요[79]

□ 면단위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근대사적

- 국가등록문화유산
  - (병원 기능 유지)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음. 현재까지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통해 등록되어왔으며, 지자체장이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여 보존·활용 도모해옴. 기존 종합정비계획에는 관광자원화 계획, 건축물 활용계획(소매점, 디자인샵, 카페,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 등), 지자체 매입·활용계획 등이 주요하게 포함됨. 소록도는 병원이자 국유지로서 기존 활용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그림 4-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마스터플랜(일부)

출처: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정 파트너스 아키텍츠,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2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목포시청, pp.510-511의 그림 재인용

  - (문화유산 보존)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음. 따라서 보존 및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원형 훼손의 가능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높으나, 종합정비계획이 경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는

79) 근대건축 전문가 자문회의(자문일: 2024.04.23.)

점에서는 긍정적

※ 원형 훼손 방지를 위해,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새로 도입된 필수보존요소를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80] 단, 필수보존요소의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현재 제시되지 않음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병원 기능 유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해당 지구 내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함. 지자체장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소록도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 수립 필요

  ※ 활용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자체로서, 국립소록도병원-지자체간 갈등이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유산 보존)** 보존 및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원형 훼손의 가능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높음

  ※ 단, 현재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 전으로 활용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음

- 근대사적
  - **(병원 기능 유지)** 점단위 근대사적과 동일. 지정범위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의 검토·허가 절차 소요

  - **(문화유산 보존)** 지정문화유산의 원형유지 원칙을 면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유산 보존이 가능함.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원형보존 여부에도 가장 부합하는 관리방식임

  ※ 단, 근현대 조성된 공간이 면단위 근대사적으로 지정된 사례 없으며, 소록도는 현재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기존 사적과는 구분됨

  ※ 또한 소록도 면적이 상당히 대규모이며 건축물 수가 많기 때문에,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시 적정면적 고려 필요

80)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6.10.)

[표 4-5] 문화유산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점단위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근대사적(사적)	국가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근대사적(사적)
병원 기능 유지	건축행위 제약	현상변경	• 국가유산청 허가	• 국가유산청 허가	• 국가유산청 허가	• 국가유산청 허가	• 국가유산청 허가
		경미한 행위	*규정 없음*	• 지자체장 허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지자체장 허가
		수리근거	• 건축법	• 국가유산수리법	• 건축법	• 건축법	• 국가유산수리법
		완화	• 건폐율 · 용적률 • 관계법령	*규정 없음*	• 건폐율 · 용적률 • 관계법령	• (등록문화유산)건폐율 · 용적률, 관계법령 • (건축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	*규정 없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미지정*	• (조례)500m • 구역별 허용기준	*미지정*	*미지정*	• (조례)500m • 구역별 허용기준
	주변환경 개선		*미지정*	• (지자체)생활환경 개선 지원	*미지정*	*미지정*	• (지자체)생활환경 개선 지원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국가유산청 · 지자체 지원	*규정 없음*
	공개범위		• 공개 원칙 없음 (공개제한 가능)	• 공개 원칙 (공개제한 가능)	• 공개 원칙 없음 (공개제한 가능)	*규정 없음*	• 공개 원칙 (공개제한 가능)
문화유산 보존	지정(등록)조건		• 건설 50년 이상 • 보존 · 활용 필요	• 기념물 • 역사적 · 학술적 가치 (※ 우수한 건축물로 한정되어옴)	• 건설 50년 이상 • 보존·활용 필요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으로 선정해옴)	• 등록문화유산의 개별·집합적 분포	• 기념물 • 역사적·학술적 가치 (※ 면단위 지정사례 없음)
	보존	원칙	• 가치 유지 · 계승 · 향유 •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	• 원형유지	• 가치 유지 · 계승· 향유 •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	• 가치 유지 · 계승 · 향유 •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	• 원형유지
		범위	• 개별 건축물	• 개별 건축물	•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구역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서의 범위)	• 등록문화유산 분포하는 일정 구역	• 일정 구역
		보존대상	• 외관, 필수보존요소	• 원형	• 외관, 필수보존요소	• (등록문화유산)외관, 필수보존요소	• 원형
		수리 지원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보존 · 활용 계획	•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 종합정비계획 수립 가능	• (관리단체)종합정비계획 수립 가능	•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 종합정비계획 수립 가능	•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 (지자체) 활용계획 수립	• (관리단체)종합정비계획 수립 가능
	세계유산 등재		*사례 없음*	*사례 없음*	*사례 없음*	*사례 없음 (현재 미시행)*	• 지정문화유산 및 사적 지정

출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건축물 분포 현황

① 건축물 분포 데이터 구축

□ 소록도의 문화유산 지정범위 대안 검토를 위한 데이터 구축

- **(건축물)** QGIS를 이용하여 건축연대, 현재 사용여부, 주요 시설(문화유산, 병원 본관, 박물관 등) 정보를 점으로 표기
  - **(기본자료)** 「건물 사용 현황(2024.03.기준)」(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시설팀 제공 excel파일: 건축물 383건의 소재지(지번), 취득일자, 사용여부)

  ※ GeocodingTool64를 이용하여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후 점으로 표기. 같은 지번에 여러 건축물이 위치하여 여러 점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지도를 확인하여 점의 위치 이동

  - **(문화유산)**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의 해당 문화유산 위치정보 사용

  ※ 하나의 문화유산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점으로 표기
- **(지형)** 국토정보플랫폼(https://www.ngii.go.kr)의 수치지형도를 기본자료로 사용
  - **(마을 경계)** 시설팀 면담에 따르면 병원에서 정확한 마을 경계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길을 마을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음. 선행연구의 마을 경계 표기,[81] 시설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계를 추정하여 표기

  ※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 마을별로 폐쇄구역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마을 형성 초기의 최대 면적으로 경계 표기
- **(기타)** 관계자 면담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일반인 공개구역, 중앙공원, 제비선창, 십자봉 소풍길 등 위치 표기

  ※ **(십자봉 소풍길)** 제4대 원장 시절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시하기 위해 환자들을 동원하여 조성한 길
- 이 데이터는 병원 제공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소록도 내 전체 건축물·시설물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며, 점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함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물 분포의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

81) 선행연구의 마을 경계 표기 역시 병원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임 (장성곤,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4), p.115; 장성곤 자문회의(자문일: 2024.0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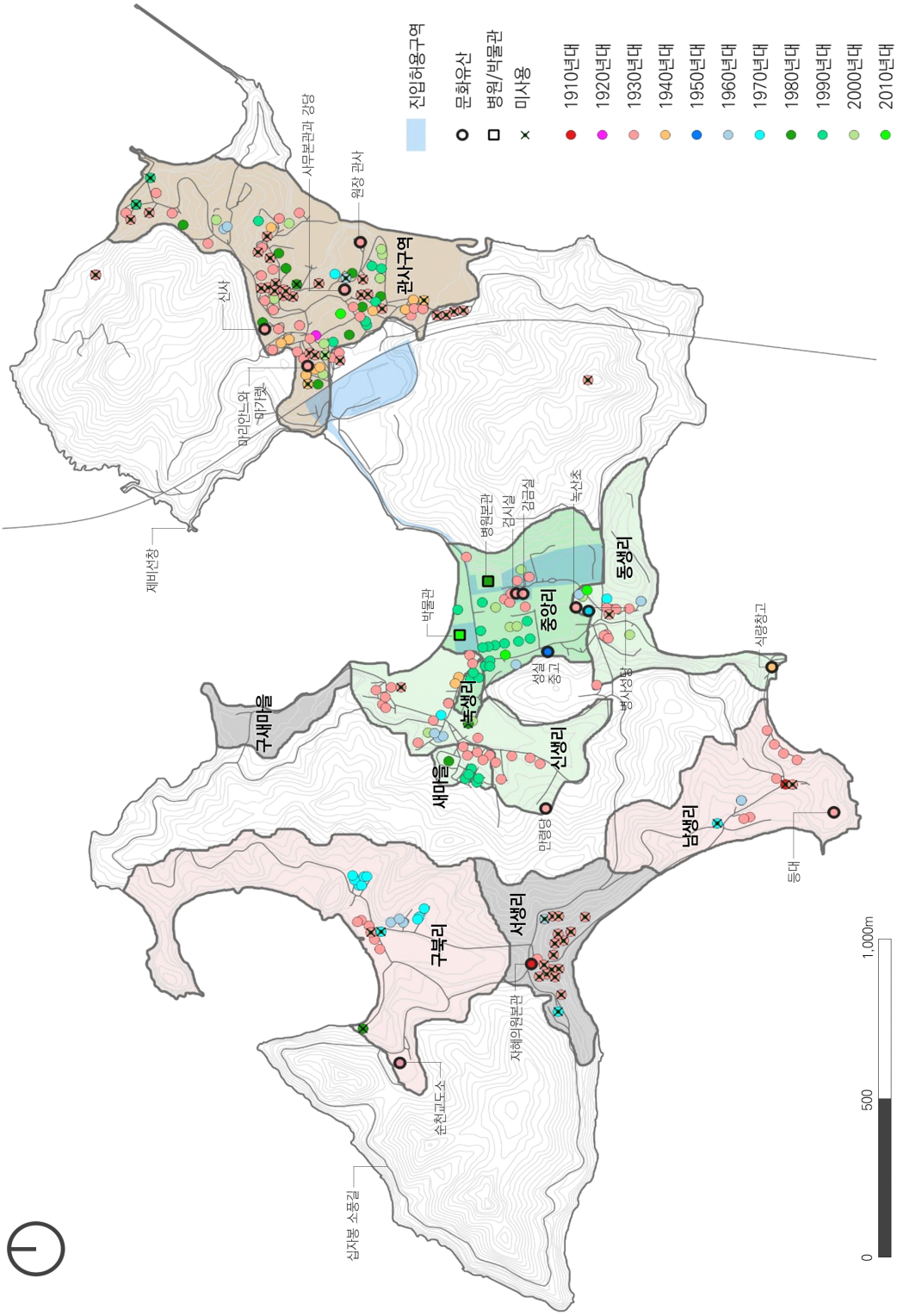

[그림 4-2] 소록도 건축물 분포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② 건축물 분포 현황 파악

□ 소록도는 크게 병사구역과 관사구역으로 구성되며, 환자들이 병사구역 내 마을 단위로 생활하는 특징을 가짐. 이러한 소록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요 마을 단위의 특징 파악

- 병사구역(초기 마을, 중심부, 중심 주변부), 관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서술

□ 병사구역: 초기 마을

- 서생리

[표 4-6] 서생리의 주요 현황

특징	•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시기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최초의 관사구역 • 현재의 병원본관에 해당하는 소록도자혜의원 위치
연혁	• 제1차 확장공사(1933-1935년)로 병원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병사구역으로 전환 • 1990년대 초까지 환자 거주했으며 이후 터로 남음
사용여부	• 폐쇄
건축물	• 대부분 1930년대 건설 • 1960-1970년대 건설된 교회, 병사, 결핵병동 위치 • 향후 사용 가능성 없어 개보수 대상 아님
문화유산 분포	• 시·도지정문화유산(1건): 고흥 소록도자혜의원 본관(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 2007년 해체보수 실시했으나 원형 훼손 초래
관리	• 소록도 서생리 마을 옛터 보존사업(2017년): 서생리 서쪽의 실측조사, 최소한의 보존조치 실시. 관련 내용은 뉴스 및 「건축의 소멸」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

서생리 마을 옛터 보존사업 대상지 전경

고흥 소록도자혜의원 본관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3.);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85-92, 259; 김경인. (2017). '100년의 역사' 소록도 첫 마을, 옛 모습 되찾았다. 연합뉴스. 9월 1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170901004300038(검색일: 2024.05.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 구북리

[표 4-7] 구북리의 주요 현황

특징	•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시기부터 조성된 최초의 병사구역
연혁	• 1917년부터 현재까지 환자 거주 • 1926년 이후 남생리가 조성되기 전까지 유일한 병사구역
사용여부	• 사용(환자 10여 명 거주하여 폐쇄 가능성 높음)
건축물	• 1930, 1960-1980년대 건설된 건축물 혼재 • 일반적으로 마을을 구성하는 병사, 사무실, 치료실, 교회 외에, 소록도 원주민 건물터, 소록도 최초의 기독교 세례장소(구북리 서해안 백사장), 화장장(1980년대 재건축. 현재 폐쇄) 등 위치 •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그림 4-2] 참조)
문화유산 분포	•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 2005년 교도소 폐지 후 법무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유 이전 ※ 고흥군이 국립소록도병원과 협의 없이 매입 시도한 바 있음
관리	•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공사(국고보조사업 진행 중): 18개동 지붕 마감재·부식재 교체, 외벽 세척·강화 처리, 내부 개보수 등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공사

화장장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3.);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78-8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 남생리

[표 4-8] 남생리의 주요 현황

특징	• 1926년 이후 토지 추가 매수하여 조성된 초기 병사구역
연혁	• 1926, 1933년 토지 매수를 통해 조성(당시 구북리를 '북병사', 남생리를 '남병사'로 지칭) • 현재까지 환자 거주
사용여부	• 사용(환자 10여 명 거주하여 폐쇄 가능성 높음)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소록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구 사무소, 1917년) 위치 • 대부분 1930년대 건설 •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그림 4-2] 참조)
문화유산 분포	•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 ※ 해양수산부 소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리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

구 사무소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2.);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93-9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97의 [그림 84] 재인용

□ 병사구역: 중심부

- 중앙리

[표 4-9] 중앙리의 주요 현황

특징	• 소록도 중앙에 위치하는 병사구역으로, 병원구역(병원본관, 중앙공원)과 인접 • 병원 기능이 유지되어야할 핵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센병박물관 위치
연혁	• 제1차 확장공사(1933-1935년)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까지 환자 거주
사용여부	• 사용(가장 많은 환자 거주) ※ 각 마을에서 자가생활하는 경증환자들이 향후 중앙리로 이전할 것으로 예측됨
건축물	• 1930년대 건설된 생활병동(병사)을 1990년대 리모델링 ※ 가장 많은 환자 거주하여 병사 규모가 큼. 8개 병사를 복도로 연결하여 사용 • 2016년 한센병박물관 건설

	• 1930년대 건설된 건축물 일부 남아 있음 • 모든 건축물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그림 4-2] 참조) • 지속적인 건축물 개보수, 필요에 따른 증축, 신축 등 발생 가능성 있음
문화유산 분포	• 국가등록문화유산(3건):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 고흥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 한센병박물관이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소장
관리	• 방문객 진입 허용구역 포함(한센병박물관,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

병원구역(병원본관)

병원구역(중앙공원)

중앙리 생활병동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

한센병박물관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2.);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99-11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2024.05.17.)

- 녹생리

[표 4-10] 녹생리의 주요 현황

특징	• 중앙리와 인접한 병사구역으로, 생활병동 3개동으로 구성 • 중앙리와 함께, 병원 기능이 유지되어야할 핵심영역으로 꼽힘
연혁	• 신환자가 거주하여 '신병동'이라 불렸음
사용여부	• 사용
건축물	• 1980년대 건설 ※ 안전진단 C·D등급, 1개동 리모델링 진행
문화유산 분포	• 없음

녹생리 생활병동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4.01.-02.);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12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5.17.)

□ 병사구역: 중심 주변부

-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

[표 4-11]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의 주요 현황

특징	• 중앙리와 인접한 병사구역	
연혁	• 1930년대 확장공사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까지 환자 거주	
사용여부	• 사용 ※ 구새마을, 동생리1구 폐쇄	
건축물	• 1930년대 건설된 건축물 다수 남아 있음 •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그림 4-2] 참조) • 일반적으로 마을을 구성하는 병사, 사무실, 치료실, 교회 외에, 목공소, 연탄공장, 돈사, 어장, 선창 등 흔적 남아 있음	
문화유산 분포	**동생리**	• 국가등록문화유산(3건):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고흥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신생리	•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 화장장에서 화장된 유해를 모신 납골당으로, 만령당에서 매년 10월 15일 합동위

	령제를 지낸 후 10년이 경과한 유해를 모아 만령당 뒤쪽의 봉분에 합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소록도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꼽힘
새마을	• 없음
동생리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연탄창고
	돈사(동생리1구)
신생리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2., 2024.05.17.);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110-12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2024.05.17.)

□ 관사구역

[표 4-12] 관사구역의 주요 현황

특징	• 193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관사구역 • 넓은 구역에 걸쳐 관사, 업무·교육·종교시설, 선착장, 해수욕장 등 위치
연혁	• 제1차 확장공사(1933-1935년)에 의해 관사구역 이전·조성되어 현재까지 직원 거주
사용여부	• 사용 ※ 입주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관사 거주에 대한 수요 많음 ※ 향후 병원 기능 전환 여부에 따라, 관사구역 사용범위의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축물	• 1930년대 건설된 건축물 다수 남아 있음 • 여러 시대 건축물 혼재 • 미사용 건축물이 많으며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예상됨([그림 4-2] 참조)
문화유산 분포	• 국가등록문화유산(4건):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사무본관과 강당,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원장 관사,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전경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출처: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3.27., 2024.04.01.-02.);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p.126-14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03.27.)

3) 지정범위의 대안

①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 설정

□ 보존이 필요한 구역의 파악

-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구역
  - (서생리) 소록도 최초의 관사구역으로서의 역사성. 1930년대 병사구역 전환 이후의 생활사·건축사적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정보 제공
  - (구북리) 소록도 최초의 병사구역으로서의 역사성. 중요한 역사적 장소의 분포.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시기부터의 생활사·건축사적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정보 제공
  - (남생리) 소록도 초기 병사구역으로서의 역사성. 1920년대부터의 생활사·건축사적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정보 제공

※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 1930년대 건축물이 다수 차지하며 환자들의 생산시설 흔적이 남아 있어 환자 거주방식을 이해하는 데 정보 제공. 구체적 현황 파악 및 역사성 판단 필요

※ (관사구역)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온 병사구역으로서 역사성 있으나, 50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이 혼재하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개보수 진행 중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판단 필요

※ (중앙리, 녹생리) 50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차지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 필요

- 폐쇄되어 훼손의 우려가 큰 구역
  - (서생리) 1990년대부터 폐쇄. 2017년 보존사업에 의해 최소한의 보존조치 이루어졌으나, 대상지는 서생리 진입도로를 경계로 서쪽에 한정
  - (구새마을, 동생리1구) 폐쇄되어 터로 남음([표 4-11]의 그림 '돈사' 참조)

[그림 4-3] 동생리의 사용구역과 폐쇄구역(동생리1구)
출처: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검색일: 2024.06.11.)를 활용하여 연구진 편집

- 미사용 건축물 다수 분포하여 훼손의 우려가 큰 구역
  - (관사구역) 넓은 구역에 걸쳐 건축물 분포하며, 1930년대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해 미사용하는 건축물 다수 포함

□ 병원 기능 유지가 필요한 구역의 파악

- 병원본관과 인접한 구역
  - (중앙리, 녹생리) 병원으로서 유지되어야할 핵심영역으로 간주됨
- 지속적인 건축행위 발생 가능한 구역
  - (중앙리, 녹생리) 지속적인 개보수 및 향후 병원 기능 전환에 따라 증축, 신축 등 건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관사구역) 병원으로서 유지되는 동안 직원 거주공간으로 사용 예정으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예상됨

※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 폐쇄구역을 제외하고 현재 건축물 대부분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며,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보수공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북리, 남생리) 각 마을에 환자 10여 명 거주하고 있어 가장 빨리 폐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부분적인 보수공사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역별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 방안

-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사를 가지는 일단의 영역이지만 구역별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및 병원 기능 유지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기에 따라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등록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제안

[표 4-13] 구역별 특성에 따른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 방안

구분			특징		지정 방안
병사구역	초기마을	서생리	문화유산	•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폐쇄되어 훼손의 우려가 커 원형유지 조치 필요	• 근대사적 지정
			병원기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되어도 중심부와 떨어져있어, 중심부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미비	
		구북리 남생리	문화유산	•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현재 사용 중이나 가장 빨리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 원형유지 조치 필요	
			병원기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되어도 중심부와 떨어져있어, 중심부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미비	
	중심부	중앙리 녹생리	문화유산	• 50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혼재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판단 필요	• 심화조사·연구 필요 • 병원 발전 방안과 연계하여 면단위 지정
			병원기능	• 병원 핵심영역으로 지속적인 건축행위 예상	
	중심 주변부	동생리 신생리 새마을	문화유산	• 구체적 현황 파악 및 역사성 판단 필요	
			병원기능	• 지속적인 건축행위 예상 • 중심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	
		동생리1구	문화유산	• 폐쇄되어 훼손의 우려가 커 보존 조치 필요 • 구체적 현황 파악 및 역사성 판단 필요	
			병원기능	• 중심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	
		구새마을	문화유산	• 폐쇄되어 훼손의 우려가 커 보존 조치 필요 • 구체적 현황 파악 및 역사성 판단 필요	
			병원기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되어도 중심부와 떨어져있어, 중심부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미비	

구분	특징		지정 방안
관사구역	문화유산	•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판단 필요	
	병원기능	• 지속적인 건축행위 예상	

출처: 연구진 작성

- (시기 구분)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운영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 구분 제안
  - (단기) 현재의 마을 사용방식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설정
  - (중기) 마을 사용방식에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설정. ①현재는 사용 중이나 가장 빨리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구북리, 남생리가 폐쇄되는 시점, ②이후 환자 고령화에 따라 모든 환자가 중앙리 생활병동으로 이전하는 시점으로 구분
  - (장기) 병원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설정. ①국립소록도병원의 환자가 0명이 되는 시점,[82] ②병원 기능이 종료·전환되는 시점으로 구분[83]
- (단기) 폐쇄된 마을인 서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및 이외 구역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 (서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2017년에 시행된 서생리 서쪽에 대한 실측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범위를 확장하여, 근대사적 지정을 위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필요

    ※ 본 연구의 방법에는 소록도의 구체적인 현황 조사·연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근대사적 지정 추진 시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범위를 확정하기 보다는 실제 현장상황을 심층조사하여 지정범위를 결정해야함. 서생리와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중심의 거주공간 외에도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생산공간, 녹지공간 및 시설물(도로, 옹벽, 공동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치판단 필요
  - (이외 구역의 조사·연구)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를 통해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적인 수량, 규모, 조성연대 등이 1차로 정리되었으나, 소록도의 역사·인문·사회·자연환경과 연계하여 구역별 구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실정으로 구역별 심화 조사·연구 필요. 특히 현

82) 소록도에 유입되는 소수의 환자를 제외하고 현재 입원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2033-2034년에 환자 수가 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 p35.(2024.04.29.))

83) 1명의 환자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현재의 병원 기능을 유지한다고 가정

재 폐쇄된 구새마을, 동생리1구의 조사·연구를 우선순위로 고려 필요

- (중기) 폐쇄된 마을인 구북리, 남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추진. 병원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이외 구역에 대한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등록 추진. 점단위 문화유산의 추가 등록 및 승격 지정 추진

  - **(구북리, 남생리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단기에 추진한 심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사적 지정 추진. 십자봉 소풍길 등 소록도 서부를 포괄하는 범위까지 연계하여, 소록도 초기마을의 근대사적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함

  - **(이외 구역의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등록)** 심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방안 및 환자들의 중앙리 생활병동으로의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근대사적 등 면단위 문화유산 등록·지정 추진

  ※ 올해 병원 발전방안 연구 추진 중이나 발전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발전방안 수립 완료 후에는 소록도 구역별로 상세 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함. 소록도 중심부, 중심 주변부, 관사구역은 향후에도 병원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면단위 문화유산 등록·지정될 필요

  ※ 또한 마을 이외 구역에 대해서는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등록범위에 포함 또는 완충구역으로서 관리방안 모색 필요

  ※ 소록도의 제요소가 향후 문화유산으로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심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 및 보존·활용원칙이 수립될 필요

  - **(점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추가 등록)** 심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건축물·시설물을 추가 발굴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

  - **(기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점단위 근대사적 승격 지정)** 현재까지 소록도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점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왔기 때문에, 소록도 초기마을의 면단위 근대사적 지정 시 기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도 이와 연계하여 승격 지정 고려

  ※ 중심 주변부에 위치하는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신생리. 소록도의 역사를 상징),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동생리. 건축기술의 우수성) 등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점단위 근대사적 승격 지정 우선 고려

  ※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은 방문객 진입허용구역에 포함되어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으로 점단위 근대

사적 승격 지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소록도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병원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추진 필요

- (장기) 소록도 섬 전체에 대한 면단위 근대사적 (승격)지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관리체계 구축
- (공개범위) 환자 보호를 위해 소록도 내 한센병 환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공개범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공개범위를 확장할 필요
  - 환자와 외부인의 접촉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어, 소록도 내 환자 거주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공개범위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실정
  - 박물관이 추진 중인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과 같이,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을 단기 – 중기에 걸쳐 시범운영하여 공개범위의 확장 가능성 검토 병행

[표 4-14] 구역별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 방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병원	병원 기능		마을 사용 유지	구북리·남생리 폐쇄	모든 환자 중앙리 이전	입원환자 0명	병원 기능 전환
	발전방안		병원 발전방안 수립		구역별 이용계획 수립		
문화유산	면	서생리	조사	근대사적			
		구북리 남생리	조사	근대사적			
		이외	조사		면단위 문화유산 (국가등록, 근대사적)		근대사적 (승격)
					완충구역으로서 관리방안 모색		
	점	신규		국가등록문화유산 추가 발굴·등록			
		기등록		만령당·식량 창고 등 근대사적 승격	검시실·감금실 등 근대사적 승격		
	공개범위		현재 공개범위 유지			단계별 공개범위 확장	
			프로그램 시범운영 통해 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검토				

출처: 연구진 작성

② 현행 문화유산 제도 특성을 반영한 대안 설정

□ 문화유산 제도의 특성

- (사적 제도) 사적은 남아 있는 자취인 유적을 보존하는 제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개 현재는 그 기능이 종료되었으며 일단의 영역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규명이 이루어진 장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어옴
  - 반면에 소록도는 병원으로서의 사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소록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문화유산의 완전성) 지정범위에는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84)]
  - 일부 구역만 부분지정 시, 해당 지정범위는 소록도 섬 전체에 걸쳐 축적된 역사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함
  - 일단의 영역을 부분적으로만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향후 지정범위를 넓혀가는 사례는 없음. 추가적인 발굴로 유적이 발견되어 지정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와는 구분됨

□ 섬 전체의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

- 소록도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구역이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원형유지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적용하여, 섬 전체를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 제안
  - 단기적으로 섬 전체를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후, 장기적으로 면단위 근대사적으로 승격 지정하는 방안
  - 현재까지 등록된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거리, 마을 등 건축물이 밀집한 영역을 대상으로 등록되어옴. 소록도는 전체 면적이 3,782,099㎡으로, 8개 근대역사문화공간 평균면적 55,305㎡에 비해 상당히 대규모임. 따라서 역사적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역을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이외의 녹지 등은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84)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업무협의(협의일: 2024.06.10.)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관리, 종합정비계획의 경관 보존 가이드라인 등 원형훼손 방지 조치 필요

- 현재까지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통해 등록되었으며, 지자체장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옴. 소록도는 병원으로서 기존 활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관광지로서의 활용이 아닌 교육, 견학 등의 계획을 강화할 필요

[표 4-15]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단기</th><th>중기</th><th></th><th>장기</th><th></th></tr>
<tr><td rowspan="2">병원</td><td>병원 기능</td><td>마을 사용 유지</td><td>구북리·남생리 폐쇄</td><td>모든 환자 중앙리 이전</td><td>입원환자 0명</td><td>병원 기능 전환</td></tr>
<tr><td>발전방안</td><td colspan="2">병원 발전방안 수립</td><td>구역별 이용계획 수립</td><td></td><td></td></tr>
<tr><td rowspan="4">문화유산</td><td>면</td><td>조사</td><td>국가등록문화유산</td><td></td><td></td><td>근대사적(승격)</td></tr>
<tr><td>점</td><td colspan="2"></td><td>국가등록문화유산 추가 발굴·등록</td><td></td><td></td></tr>
<tr><td rowspan="2">공개범위</td><td colspan="3">현재 공개범위 유지</td><td rowspan="2">단계별 공개범위 확장</td><td></td></tr>
<tr><td colspan="3">프로그램 시범운영 통해 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검토</td><td></td></tr>
</table>

출처: 연구진 작성

③ 대안의 평가

□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 지정범위의 대안에 대한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9인의 의견 수렴(2024.05-06)

  - **(지정유형)** 소록도가 사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면단위 근대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2인),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지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5인), 문화유산 제도 특성을 반영하여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2인)이 제기됨

  - **(지정범위)** 이처럼 지정유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지정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섬 전체가 면단위 근대사적으로 지정되어야함에 동의함

  - **(문화유산 관리방안)** 단, 지정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하는 경우,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잠정적인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현상변경 허용기준, 전체 경관 유지방안, 종합정비계획 등)

- (자연유산 관리방안) 또한 문화유산 외에도 소록도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자연환경을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조사·기록·연구 추진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록도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지정범위의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지정유형		지정범위		비고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지정	단계별 확장	
①	● ※사적 요건 충분히 갖춤		● ※ 20세기 유산도 역사적 유적지로 다뤄져야함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필요	자연유산 관리 필요
②			● ※전체 지정이 최선	○ ※ 폐쇄된 마을 우선 지정 ※ 현장 심층조사 바탕으로 지정범위 결정 필요	자연유산, 무형유산 관리 필요
③	● ※구역별 특성 반영	● ※구역별 특성 반영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필요	
④				● ※ 현장 심층조사 바탕으로 지정범위 결정 필요	
⑤				● ※ 단기-중기-장기의 시간적 범위 구체화 필요	
⑥				● ※ 변화하는 문화유산 개념 적용하여 사격 승격 필요 ※ 전체 경관 유지방안 필요	자연유산 관리 필요
⑦				● ※ 잠정적 문화유산의 관리방안 필요	
⑧		● ※ 사적 지정 시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 ※ 국가유산청이 기존과 다른 사적 지정에 부담		● ※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⑨				● ※ 기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묶어서 면단위 우선 등록. 향후 지정범위 확장	

출처: 전문가 서면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록도에 보다 적합한 문화유산 지정 방안으로 구역별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방안을 제안함
  - 하지만 문화유산 지정(등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의지로서, 각 대안의 특징과 이에 수반하는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 4-17] 지정범위의 대안 비교표

구분		①구역별 부분지정 및 단계별 확장	②섬 전체의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문화유산 보존	장점	• 구역별 특성에 맞게 보존의 수준 조절 • 면·점단위 근대사적 지정범위를 확장해감으로써, 문화유산 원형 보존에 기여 • 근대사적 지정범위를 확장해감으로써, 관리주체가 면단위 문화유산 관리경험을 쌓아갈 수 있음	• 소록도 섬 전체가 지정범위에 포함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완전성 갖춤
	단점	• 소록도 일부구역만 지정범위에 포함되는 시기 발생하여, 지정범위가 소록도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할 우려 • 지정범위 외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원형훼손 우려 있어 관리방안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 섬 전체가 등록됨에 따라, 관리주체에 관리 부담 초래
병원 기능 유지	장점	• 구역별 특성에 맞게 보존의 수준 조절 • 병원 운영에 맞춰 지정시기 설정하여, 병원 운영 및 환자생활에 큰 변화 초래하지 않음	• 원형유지 원칙을 고수하지 않아, 건축행위 제약이 적음
	단점	• 근대사적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되어 건축행위에 제약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활용계획과는 다른, 소록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3. 관리주체의 대안 검토

1)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의 특징

□ (문화유산) 지정·등록 시 문화유산으로서 일상적 관리, 종합정비계획 수립, 복원·보수공사 시 현상변경 심의 등 문화유산으로서 관리 수행

- **(일상적 관리)** 문화유산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문화유산이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일상적 보호·관리를 수행하여야 함[85]
  - 문화유산 훼손 시 복원·보수 필요
  - 현재 국가유산의 경우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보조금 지급[86]
- **(종합정비계획)**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87]
  - 종합정비계획에는 문화유산 개요 및 정비계획의 목적·범위,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사항,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 확보 관련 사항 등이 포함(「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유산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립하며,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소재지 관할 광역·기초지자체장이 대신 수립할 수 있음[88]
- **(현상변경 허가)** 문화유산 현상(현재의 상태 또는 원형) 변경 시 현상변경 허가 필요
  - 국가유산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유산 구역의 경우,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허가 필요

8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86)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

8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88)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예규 제341호, 2024.05.13. 일부개정)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참고하여 작성. 현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위임 행정규칙은 사적과 명승에 한하여 마련되어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 경우, 행위제한 기준에 따라 허용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 (병원) 국내 유일 국립 한센병 전문 치료·요양기관으로서 관련 기능 수행[89]

- (치료) 환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진료기능 유지
  - 현재 소록도 환자 대부분은 65세 이상(95.1%)이고 평균연령 78.4세로, 한센병력에 의한 장애·질병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대상 진료 및 치료 필요
  - 단,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계청 데이터 기반 장래 환자 추산 결과 2033~2034년 한센병 환자가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병원의 기능 전환 및 재정립 필요
- (복지·지원) 입소병동 특성에 따른 환자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 등 지원
  - 한센병력을 지닌 환자가 입소 생활하는 국립소록도병원의 특성상 입원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피복 외 개인의 여가생활(생일,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현물 및 현금 지원, 자치회 자활 지원, 주·부식 지원 등 복지·지원 업무 수행

□ (세계유산) 소록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문화유산 지정 고려

- (등재 준비) 세계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정립
  -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완전성과 진정성 정립을 위한 가치 발굴 및 조사 필요
- (문화유산 지정·등록) 등재 이전 국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 고려
  - 국내 문화유산 지정·등록이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문화유산의 경우 국내 세계문화유산 14개소는 등재 전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수반[90]

89) 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 pp.9, 33, 36, 40.(2024.04.29.)

90) 단, 현재까지 국내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례는 없으며, 자연유산의 경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한국의 갯벌) 또는 일부 구역만 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경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가 있음. 또한 최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1,200건에 육박하고 등재 취소 사례(3건)가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도입·수행을 포함하여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를 권고하고 있어, 등재 시 국내 제도를 통한 보호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손은신, 이상민, 방보람. (2024).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중간연구심의자료.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자료. pp.1-3, 10-12.(2024.06.11.))

2)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의 관리주체 대안 검토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소록도 관리주체 대안 검토

[표 4-18]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소록도 관리주체 대안 및 주요 내용

① 통합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관리			
선행연구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2020)	(재)소록도 세계유산센터	국가유산청 보건복지부 고흥군청 원생자치회 (협의 시 참여)	– 문화유산으로서 소록도의 독립적·통합적 관리 필요 – 국가유산청·보건복지부·고흥군청 공동출자 독립법인 구성, 소록도 거주 중인 주민협의회(원생자치회) 참여[91]
건축공간연구원 (2021)	*실무협의회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사무국) 주민자치회 고흥군	– 네거티브 헤리티지로서 소록도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갈등관리 관련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되, 문화유산 지정·관리는 실무협의회–보건복지부–국가유산청이 포함된 의사결정협의회에서 논의 – 사무국 역할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수행 – 이외 갈등관리 전문가, 문화유산 전문가, 인물사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및 문화유산 관련 의사결정 시 의견 제시
	의사결정협의회 (문화유산 관련)	*실무협의회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② 국립소록도병원(소유자) 직접 관리			
선행연구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군에서 발주한 해당 연구용역을 토대로 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포함)	–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및 훼손된 문화유산 보수 등을 위한 사적 지정이 가시화되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협의체 또는 통합관리센터를 문화유산 관리자로 명기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소유자인 국립소록도병원을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자로 제시 – 향후 통합관리센터 등이 마련될 경우, 관리자를 이관하는 방안 검토 가능[92]
사적 지정 신청서 (2022)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p.633; 권영란, 염철호, 손은신. (2022).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156;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p.3;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면담(면담일: 2024.04.0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91) 이러한 통합관리주체 구성(안)은 2018년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 구성되었던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협의체'(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소록도병원), 문화재청, 전라남도, 고흥군)의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

- 관련 사례의 관리주체 현황 검토

[표 4-19] 관련 사례의 관리주체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① 소유자(중앙정부) 직접 관리			
사례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구 공업전습소 본관(근대사적)	교육부 산하 방송통신대학교	(소유)교육부 (관리)방송통신대학교	– 소유자(관리자)인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역사기록관으로 사용 중, 경미한 일상적 관리는 직접 수행 – 단,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공사 발주(종로구), 지방비 교부(서울시),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국가유산청) 등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
② 지자체 관리			
사례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군산 내항 철도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시	(소유)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군산시 (관리) 군산시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위치하는 등록문화유산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연계, 군산시가 관리 업무 수행
③ 비영리조직 통합관리센터 구성			
사례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유산청 9개 서원 소재 광역·기초지자체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통합관리 중심 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센터' 개소 및 운영
	▼		
	통합관리센터	이사회	– 이사장 및 광역·기초지자체별 당연직 이사 14명을 포함한 23명 구성
		사무국	– 센터장 및 교육홍보팀·유산관리팀 구성
		분과위원회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전문위원 10명 – (통합 행정위원회) 14개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사무국 센터장 – (전문위원회)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자문위원 9명 – (9개서원별 운영위원회) 각 서원별 전문가, 공무원, 주민, 관계자 등 10명 내외
일본 애생원	세계유산 등록 추진협의회 (비영리법인)	요양소 관계자 한센인 자치회 관련 공공기관	–2018년 요양소 관계자, 한센인 자치회, 관련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NPO)'세계유산 등록 추

92) 해당 내용은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관계자 면담 결과 참고(면담일: 2024.04.03.)

		(지자체,언론 등) 학교·교육기관 (유관기관) 일본 문화청, 세계유산 로드맵위원회	진협의회' 결성,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일본 내 문화청, 국가사적위원회, 세계유산 로드맵위원회와 연계 운영 -2030년 애생원 개원 100주년에 맞춰 사적 지정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완료 계획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 수행 중

출처: 3장의 관련 사례 내용(pp.67-68, 73-80)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국내 소록도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주체 대안 검토

[표 4-20] 소록도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주체 대안 검토

① (단기) 국립소록도병원 → (중장기) 협의체 및 통합관리조직 구성 (국가유산청, 소록도병원)		
해당기관	**관리주체**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세계유산과)	(단기)국립소록도병원 (중장기)협의체·통합관리조직 구성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기능 강화 방안 적정 -통합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은 추후 관계자 협의를 통해 검토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의견 반영		-단기적으로 문화유산 관리인력 및 예산확보, 박물관 확대 및 기능 강화 고려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은 병원 운영 종료 후로 시기 협의 필요

② 지자체 관리 (고흥군)			
해당기관	**관리주체**	**구성기관**	**주요 내용**
고흥군청	(단기)국립소록도병원(병원기능) (중장기)고흥군청		-2026년까지 현행과 같이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주체 역할을 수행하되, 2027년 이후 주민 치료·요양 외 문화유산 관련 업무는 고흥군 주도 추진 적절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관리주체로 설정하고, 관리주체 중심으로 관련 정부조직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출처: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고흥군, 건축공간연구원 등)의 기관별 입장자료(보건복지부. (2024). 연구결과에 대한 기관별 입장. 보건복지부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관리주체의 대안

① (기본 방향) 단기적으로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및 통합관리조직 구성 방안 검토 필요

- 통합관리조직 마련은 이상적이나, 현재 문화유산 지정 추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조직 및 구성 절차에 시간 소요
  - 2018년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협의회'(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 제1차,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해당 소록도 문화유산 관련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 통합관리조직 구성은 이상적이나, 문화유산 지정·관리 관련 의견 차이에 따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규칙 및 조례 제정, 조직 정관 마련 및 인력 채용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구성 절차에 다소 긴 시간 소요 필요
-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센병 합병증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될 필요
  - 소록도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활 공간이자 생활 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 문화유산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국립소록도병원 내 학예인력 증원 및 한센병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기능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
  - 이에 학예 인력 증원(안)을 마련하고, 한센병박물관의 조직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관리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93]

  ※ 국가유산청 외 타 부처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례로 해양수산부의 '국립등대박물관'을 참고할 수 있음. 국립등대박물관은 부처 내 자체 훈령(「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37호, 2021.12.24. 일부개정)을 마련하여 예산 및 인력 확보의 근거, 유물 수집 근거,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조직은 관장과 기획운영팀 10명, 학예연구팀 8명으로 구성됨
- 이에 현재 문화유산 지정 추진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국

93)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병박물관 담당 학예직은 보건복지부 전체 직원 중 1명뿐이며, 한센병박물관은 현재 커뮤니티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한센병박물관의 운영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담당자 면담(면담일: 2024.03.14.);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면담(면담일: 2024.04.01.-02.))

립소록도병원에서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통합관리조직 마련 필요

- **(단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문화유산 지정범위를 관리하되, 보건복지부 내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 인력 및 학예 인력 증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한센병박물관 지침) 등 마련될 필요. 환경부 협의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 **(중·장기)** 통합관리조직(재단 등)을 조직하고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지자체 조례, 보건복지부 내 지침 등)를 순차적으로 마련, 통합관리조직의 운영과 구성은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름

- 시기 구분의 경우 [표 4-14]를 참고하여, 단기의 경우 현재의 마을 사용이 유지되는 시기까지, 중기의 경우 환자 수 감소로 일부 마을이 폐쇄되고 환자 이전 및 병원 기능 전환이 가시화되는 시점, 장기는 입원환자가 0명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표 4-21] 시기별 관리주체 설정 방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단기</th><th>중기</th><th>장기</th></tr>
<tr><td rowspan="2">병원</td><td>국립소록도병원</td><td colspan="2">한센병 환자 치료 기능 유지, 협의체 참여</td><td>(기능 종료 시 관리 이관 고려)</td></tr>
<tr><td>보건복지부</td><td colspan="2">국립소록도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협의체 참여
(학예인력 보강,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병행)</td><td>(병원 기능 전환 고려)</td></tr>
<tr><td rowspan="6">문화유산</td><td>한센병박물관</td><td colspan="2">학예직 및 학예연구 인력 강화</td><td>박물관 기능 유지 및 강화</td></tr>
<tr><td>주민협의회</td><td>의견 수렴</td><td>협의체 구성 지원 / 협의체 참여</td><td>통합관리조직 참여</td></tr>
<tr><td>협의체</td><td colspan="3">구성·운영(보건복지부, 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고흥군, 주민협의회 등)</td></tr>
<tr><td>통합관리기관</td><td colspan="2">구성 논의</td><td>※조직 구성 근거 마련
– 관계기관 MOU 비영리법인 조직[1]
– 기존 비영리법인(관리위탁)[2]
– 한센병박물관(국가 직영)[3]</td><td>구성·운영
세계유산 관리</td></tr>
<tr><td rowspan="2">지자체
(기초·광역)</td><td colspan="2">문화유산 관련 지자체 업무 수행, 협의체 참여</td><td>(병원 기능 종료 시 교육·활용)</td></tr>
<tr><td>세계유산 등재 준비</td><td>세계유산 관리(시행계획 수립 등)</td></tr>
<tr><td>국가유산청</td><td colspan="2">문화유산 지정·등록 추진, 협의체 참여</td><td></td></tr>
<tr><td></td><td>세계유산 등재 준비</td><td>세계유산 관리</td></tr>
</table>

※ 1: 협의체 내 유관기관 공동출자 또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운영 예산 지원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일본 나가시마 애생원 NPO 사례 참조)
2: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문화유산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 또는 한센인협의회 등 한센병 관련 단체 등에 관리위탁
3: 한센병박물관이통합관리기관으로서 수행 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운영 고려)
출처: 연구진 작성

② (통합관리조직 구성) 문화유산 지정·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고, 추후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통합관리조직 구성(안) 마련

□ (협의체 구성(안)) 문화유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마련 필요

- (구성(안)) 보건복지부(소유자), 국립소록도병원(관리자), 국가유산청(문화유산 관리청), 고흥군(지자체) 외
  - 주민협의회(원생자치회)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1안 또는, 협의체 내 분과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의 형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회(원생자치회)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2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역할(안)) 협의체 내 구성원별 역할을 문화유산 보존을 중심으로 재편
  - 보건복지부(소유자) : 국유지(행정재산) 이용, 검토 및 소유자 동의 등
  - 국립소록도병원(관리자) : 소록도 관리 전반 업무 수행, 한센병박물관 기능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관리 기능 강화 필요. 주민돌봄사업 및 이용계획 수립,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필요 시 지자체 이관)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관리·운영에 관련 사항(「문화유산법」 근거)
  - 고흥군(지자체)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교부 등 지자체 고유 업무 수행
  - 주민협의회: 분과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 구성 시 참여,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 전문가 자문단: 문화유산 관리, 수리, 복원 등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환경부: 자연환경 심층조사, 관리방안 마련

□ (통합관리조직 구성(안)) 비영리재단 등 통합관리조직 마련, 문화유산 위탁관리

- (구성(안)) 유관기관 간 공동출자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문화유산관리단체 위탁 방안 마련 가능
  - (1안: 공동출자 독립법인) 보건복지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출자 비영리법인 설립, 특정 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법인 운영
  - (2안: 문화유산 관리단체 위탁)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문화유산 관리 전문기관 또는 한센인협의회 등 기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고려

※ 단, 기존 단체에 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특정 부처 또는 지자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독립적 운영 근거 마련 필요

- **(역할 및 기능(안))** 협의체 구성 기관 간 의견 수렴, 단기 및 중장기 사업 기획 및 추진, 학술조사, 기초 DB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 **(의견수렴 및 중재)** 협의체 구성 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고흥군, (전라남도), (주민협의회) 간 의견 수렴 및 갈등 중재 역할
  - **(사업 기획 및 추진)** 문화유산 지정 범위 확대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 기획 및 운영
  - **(소록도 학술조사)** 문화유산으로서 소록도의 가치 규명 및 연구 조사 지원
  - **(기초 DB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 DB 구축 및 모니터링 기능, 협의체 담당자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방문자 교육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능 등

  ※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참고할 수 있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역할 및 기능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기초자료 마련 및 협조 사항
1. (9개 서원)통합관리계획 수립
2. (9개 서원)통합홍보방안 마련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및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근거한 통합관리기구의 역할 이행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2.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
3. 9개 서원의 통합관리(모니터링 등) 시행
4. 9개 서원의 통합홍보(교육, 홍보 등) 시행

③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위탁기관의 역할 이행에 관한 사항
1. 한국의 서원에 관한 기초조사
2.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분석 평가(1년 주기)

④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정관. https://k-seowon.or.kr/data/file/regulation/01.pdf(검색일: 2024.05.10.)

③ 대안의 평가

□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 관리주체 설정 대안에 대한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9인의 의견 수렴 (2024.05-06)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및 통합관리조직을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에 8인이 동의

- 단기의 관리주체 대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등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문화유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관리역량을 키워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표 4-22] 관리주체의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단기) 국립소록도병원	(중장기) 협의체 및 통합관리조직 구성	비고
①			활용 중인 지정문화유산은 용도에 맞게 개량·수리 · 변형 가능. 인식 제고 필요
②	● (소록도병원) ※ 문화유산 전담조직 마련 필요	● ※ 방향성·필요성 동의	치료병동–생활병동(마을) 연계 통합돌봄모델 체계 필요
	● (한센병박물관) ※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조직·기능 병원에서 분리, 인력 증원을 통한 지속 운영 고려		
③	●	● ※갈등 조정 기구로서 기능(역할) 필요	
④	● (보건복지부) ※ 문화유산 전담조직 마련 필요	● ※소유자와 구별되는 관리 조직 구성 필요	
⑤	● (소록도병원) ※ 현재 병원 기능 운영 유지 조건 추가 검토 필요	● ※ 협의체 구성 시 문화유산전문가 MP (Master Planner) 제도 도입 고려 필요	
⑥	● ※ 소록도의 특성을 고려한 예약제, 사전교육 등 고려	● ※ 이해당사자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향 설정	
⑦		○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조정 방안 필요	
⑧	●	●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관리 역량을 초기부터 갖출 필요가 있음
⑨	●	●	병원 발전방향이 구체화된 후 명확한 운영 방향을 고려할 필요

출처: 전문가 서면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4. 명칭의 대안 검토

1) 명칭 부여 제도에 따른 대안 검토

□ 사적 지정 신청 시 명칭(안):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

- (고흥) 사적 명칭에 지자체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의 반감 있음
- (한센) 소록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한센'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의견 있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큼
- (근대유산) 한센인보다는 근대역사를 강조할 필요 있으며, 인문·자연·건조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소록도의 역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포괄적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안)에 포함됨

□ 지자체명 관련

- 국가유산청의 명칭 부여 지침에서는 국민의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재지(시·도(시·군·구))+유형(고유명칭)을 조합하도록 함. 마을을 표기해야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리·동(마을)까지 표기 가능
  - 지역명이 고유명칭에 포함되거나, 2개 이상 지역이 연관되거나, 국가를 상징하는 경우 지역명 생략 가능
  - 지역명이 생략된 사적 명칭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구 공업전습소 본관'과 '안국동 윤보선가'를 제외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역명이 생략됨
- 소록도는 위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고흥' 표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3] 지역명이 생략된 사적 명칭 사례

유형		명칭
지역명이 고유명칭에 포함	사적	경주읍성, 강화산성, 고창읍성, 남원읍성, 나주읍성, 전주향교, 제주목 관아,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화 외성, 하동읍성, 거제현 관아, 영월부 관아
	근대사적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서울역사, 구 목포 일본영사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구 군산세관 본관
2개 이상 지역이 연관		남한산성, 북한산성, 관문성, 진주성, 금정산성, 아차산성,

유형		명칭
		아차산 일대 보루군, 임진왜란 웅치 전적
국가를 상징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사직단, 환구단, 경희궁지, 의정부지
예외	근대사적	구 공업전습소 본관, 안국동 윤보선가

출처: 연구진 작성

□ 고유명칭 관련

- 고유명칭은 건립된 시기의 시설명으로 대부분 부여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고유명칭이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은 현재 시설명 사용
  - 소록도의 병원시설은 소록도자혜의원, 소록도갱생원, 중앙나요양소, 국립나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시대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왔음. 특정 명칭 사용 시 해당 시대로 역사적 의미가 국한될 우려 있어, 이를 포괄하는 명칭 사용 필요

2) 명칭의 대안

-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9인의 서면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2024.05-06), 4인이 의견 없음, 5인이 현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
  - 현재 명칭에 동의하는 5인 중에서 '근대유산'이 소록도 문화유산의 성격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 우려를 표명하며, 소록도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흥 소록도 한센병 관련 근대유산',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시설군' 등의 명칭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제기

[표 4-24] '근대유산' 관련 용어의 특징

구분		특징	비고
시기	근대	• 시기 구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일제강점기로 한정하여 해석될 가능성 있음 •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강조하여 이해되어옴	• 기존 사적 명칭에 시기 포함된 사례 없음
	근현대	• 현재까지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 • 근대사적의 경우 '근현대' 용어 이질적	
대상	유적	• 남아 있는 자취를 의미하여, 현재 사용하는 장소에는 부적합	• 기존 사적 명칭에 '유적' 포함된 사례 다수

구분		특징	비고
	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과거 '문화재'와 동일한 의미의 법적 용어로 이해	
	유산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heritage) • '유산'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세계', '국가', '문화', '자연', '무형' 등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음	

출처: 연구진 작성

-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용어를 문화유산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계자간 1차적인 합의에 도달한 명칭인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 (단기-중기)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은 관계자간 합의를 얻었으며 환자들의 반감이 없으므로, 이를 문화유산 명칭으로 부여
  - (장기) '한센' 용어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국립소록도병원에 환자가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된 이후 한센병 관련 시설로서의 특징을 부각할 필요성이 요구되면 '한센병', '병원' 등 용어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 제안

[표 4-25] 문화유산 명칭 부여 방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병원	병원 기능	마을 사용 유지	구북리 · 남생리 폐쇄	모든 환자 중앙리 이전	입원환자 0명	병원 기능 전환
	발전방안	병원 발전방안 수립		구역별 이용계획 수립		
문화유산	명칭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 부여			한센 관련 용어 포함하여 개정 추진	

출처: 연구진 작성

5.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로드맵 제안

- 이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소록도 관련 주요 주체의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제안함[94]
  - (단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의 학예인력 강화하여 문화유산 관리 수행
  - (중기) 한센병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수행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조직 구성 근거 마련. 세계유산 등재 준비
  - (장기) 통합관리조직의 협의체 운영 및 문화유산, 세계유산 관리 수행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물관)	관계기관
단기	• 발전방안 수립 추진 • 법적 근거 마련 (학예인력, 예산)	• 학예인력 강화 • 문화유산 관리 • 조사·연구 추진 • 서생리 근대사적 추진 • 견학프로그램 시범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 통합관리조직 구성 논의
▼			
중기	• 발전방안 수립 • 구역별 이용계획 수립	• 학예인력 강화 • 문화유산 관리 • 종합정비계획 수립 • 조사·연구 추진 • 구북리·남생리 근대사적 추진 • 이외 점·면단위 문화유산 추진 • 견학프로그램 시범운영	• 협의체 운영 • 통합관리조직 구성 근거 마련 • 세계유산 등재 준비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물관)**	**통합관리조직**
장기	• 병원 기능 전환	• 박물관 기능 유지 및 강화	• 협의체 운영 •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문화유산·세계유산 관리 • 면단위 근대사적 (승격) • 단계별 공개범위 확장 • 문화유산 명칭 개정 추진

[그림 4-4]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주요 로드맵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94) 시기 구분은 보고서 p.115를 참조

제5장 결론

□ 연구 개요

- 근현대 조성된 건축물 등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 존재. 사적 지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소록도를 사례지로 선정하여, 면단위 문화유산 지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함
- 소록도는 병원, 거주공간, 문화유산으로서 다차원적 성격을 가지며, 장기간 사적 지정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의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록도 실정에 적합한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

- 소록도는 섬 전체 면적의 97%를 보건복지부가 소유하며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하는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임. 병원본관을 중심으로 병사구역과 관사구역으로 구분, 건축물 500여 개소가 분포하며 환자 370명 거주
- 2003년부터 소록도 내 문화유산을 지정·등록하여 현재 시·도지정문화유산 1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6건이 소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학예연구사 1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지원팀(박물관 운영)에서 담당. 문화유산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현재 소록도를 대상으로 여러 주체에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국립소록도병원 기능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위한 자연공존지역, 생태관광지역 지정, UNESCO 한국위원회는 6개국 한센병 요양기관의 초국경 유산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

- 소록도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해온 이유는, 문화유산 지정이 소록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수단이 되기 때문임
- 보건복지부는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에 따라 방치된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 가속화 및 향후 소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미래의 소록도가 한센병 역사와 인권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훼손과 외부로부터의 개발 압력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함
- 문화유산 지정·등록이라는 행위는 소유자에게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책임을 부여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관리대상에 소록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정기조사와 같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전문지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종합

-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보존·관리 종합계획(2020),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 일본 애생원 사례 모두 사적 지정을 제안 혹은 추진하고 있음. 특히 사적 지정은 공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됨
- 한편 위 선행연구는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의 사적 지정을 제안한 반면, 일본 애생원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지정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소록도의 경우 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심화조사 추진이 미흡함
-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세계유산과 연계된 경우, 통합관리조직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적 지정 신청 연구(2021)에서 '한센'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시

설 명칭을 그대로 사적 명칭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애생원 사례와 구분됨

□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 관계자(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청, 국가유산청) 면담 및 근대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쟁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 환자의 치료·보호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설정 필요
  - 소록도에 적합한 문화유산 유형 고려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제안 필요
  - 병원과 문화유산의 관리를 이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필요
  - 소록도의 가치를 포괄하고 갈등요소가 없는 명칭 부여 필요

□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제안

- **(지정범위)** 문화유산 유형별 특징 및 소록도 건축물 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①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 ②현행 문화유산 제도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함
  - 관계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운영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 구분
  - ①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사를 가지는 일단의 영역이지만 구역별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및 병원 기능 유지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나타나,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기에 따라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등록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 ②사적 제도의 취지와 문화유산의 완전성, 소록도의 병원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원형유지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적용하여 섬 전체를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
  -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소록도에 보다 적합한 문화유산 지정 방안으로 ①의 대안을 제안함. 각 대안의 특징과 이에 수반하는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소유자가 최종 결정할 필요
- **(관리주체)** 단기적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이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및 통합관리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통합관리조직 마련이 이상적이나 구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내 환자의 치료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될 필요

- 단기적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문화유산 지정범위를 관리하되, 보건복지부 내 소록도 문화유산 관리 인력 및 학예 인력 증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될 필요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와 통합관리조직을 단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필요

- 협의체는 문화유산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가유산청, 고흥군, 주민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등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 통합관리조직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유산청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출자 비영리법인의 설립,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위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명칭) 갈등을 유발하는 용어를 문화유산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계자간 1차적인 합의에 도달한 '고흥 소록도 근대유산'을 그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기적으로 환자가 국립소록도병원에 거주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하면 한센병 관련 시설로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방안

□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시사점

• 국유문화유산 관리의 특수성

- 현재까지 문화유산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록도 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공사 진행되어옴

- (예산 집행) 국고보조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여 해당 예산을 집행하게 됨. 해당 문화유산이 국립소록도병원 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병원은 직접 관여 어려움. 국가유산청(예산 교부), 보건복지부(소유), 국립소록도병원(관리), 용역사(공사)의 중심에 지자체(발주)가 위치하며, 소록도 내 문화유산 관리자인 국립소록도병원은 사업 추진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알게 되는 상황 발생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에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

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흥 순천 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사례와 같이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공사가 추진되는 상황도 발생

- 국유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이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안 고려 필요[95]

- **(예산 확보)**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유문화유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대해 부정적이며, 소유자 관리원칙에 입각하여 국유지의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유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유산청과 국가기관 간 입장 차이 발생이 예상됨

- 단, 국유문화유산을 현재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유산청 외 국유문화유산 관리청(소록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이 문화유산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96]

- 이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국가유산청 외 관리청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산)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운영 규정」 개정 등 고려 필요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재검토

- **(근현대문화유산 관리의 이분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제정됨. 그러나 '근대사적'은 해당 법에 포함되지 못하고 지정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법」에 의해 규정되나, 해당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 **(근대사적의 개념)** 현재까지 근대사적은 건축물로서의 우수성에 입각하여 개별 건축물로 한정하여 점단위로 지정되어왔으나, 소록도와 같이 역사적 장소

95) 「문화유산법」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6호, 2023.10. 31. 일부개정) 제51조(보조금))

96)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 타법개정)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명승 보수정비'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국가유산청은 이를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산)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742호, 2024.05.17. 일부개정)으로 관리,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89호, 2022.01.28. 일부개정)을 통해 관리함

로서 면단위 근대사적의 지정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대사적 지정조건의 재검토 필요

- **(문화유산 활용의 보완)** 현재까지 문화유산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험·관광 위주의 계획이 주를 이룸. 하지만 소록도와 같이 기존의 활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방식 모색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참고문헌

References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정 파트너스 아키텍츠,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2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목포시청.

국가유산청. (2021). 근대사적 총괄 현황표. 국가유산청 행정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24).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자료.(2024.04.29.)

권영란, 염철호, 손은신. (2022).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김경인. (2017). '100년의 역사' 소록도 첫 마을, 옛 모습 되찾았다. 연합뉴스. 9월 1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170901004300038(검색일: 2024.05.10.)

김재현. (2016).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1916-2016.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보건복지부. (2022). 소록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복지부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보건복지부. (2024). 연구결과에 대한 기관별 입장.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4). 소록도 및 소록도병원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고흥군청.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20).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Ⅱ. 고흥군청.

문지연. (2022).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 올해부터 시동. 군산미래신문. 6월 9일 기사.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4&pid=69814&PHPSESSID=(검색일: 2024.05.10.)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3). 2023 문화재현상변경 등 업무편람. 문화재청.

박일향, 이규철, 방보람. (202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박진재.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가치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 현황과 과제. 2023년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학술포럼 발표자료.(2023.11.10.)
손은신, 이상민, 방보람. (2024).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중간연구심의자료.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자료.(2024.06.11.)
이규철, 손은신, 박일향, 김수빈.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임유경, 심경미, 권영란, 방보람. (2020).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체계 구축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장성곤,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4). 105-123.
장성곤. (2023). 일본 한센병 관련 기억유산의 보호와 관리 -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역 중심으로-. 제3회 소록도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 1-57.(2023.12.07.)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정관. https://k-seowon.or.kr/data/file/regulation/01.pdf(검색일: 2024.05.10.)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국립소록도병원 마스터플랜 기획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유산연구원. (2021). 고흥 소록도 역사자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고흥군청.
최관식. (2024). 국립소록도병원,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병원신문. 4월 25일 기사.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83(검색일: 2024.04.26.)
최권일. (2002). 소록도, 개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남도일보. 11월 4일 기사.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70(검색일: 2024.04.26.)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2024). 소록도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방안. 환경부 내부자료.(2024.04.24.)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2). 国立療養所長島愛生園保存活用ビジョン.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3). 2022(令和4)年度 年次報告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ハンセン病療養所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 (2024). 会報誌. 第11号.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2018). 長島愛生園将来構想. ハンセン病療養所の将来構想をすすめる会 · 岡山.
「건축법」 법률 제20194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72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 관리 규정」 문화재청훈령 제742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문화재청훈령 제752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국가유산

청훈령 제2호.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637호.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소록도병원예규 제317호.
「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률 제19704호, 법률 제19796호, 법률 제20077호, 법률 제20286호, 법률 제2036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592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18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33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2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341호.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330호.
「주차장법」 법률 제19686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5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유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2024.05.22.)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검색일: 2024.06.11.)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https://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menu_cd=06_03&depth=hi(검색일: 2024.02.14.)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https://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menu_cd=06_04_00_01&depth=hi(검색일: 2024.04.30.)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398582448(검색일: 2024.04.15., 2024.05.11.)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5423464087(검색일: 2024.05.10.)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gbn=2&pageNo=1_1_2_0&culPageNo=1&ccbaCndt=&searchCondition=&region=1&s_kdcdArr=13&s_ctcdArr=00&ccbaPcd1Arr=99&stCcbaAsdt=&endCcbaAsdt=&ccbaGcodeArr=00&sortType=&sortOrd=(검색일: 2024.06.1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newMap.do?gid=1677&layerNm=CHL_SPCN_AS&pmpg=Y(검색일: 2024.05.10.)

국가유산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mnctrdlist01.jsp&mn=NS_03_05_01(검색일: 2024.02.19.)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MHq12cTNR0v63f3wnsIy1CS7qgfua6SaaJB1aXoRQETZWrLN7nO09OcHLo6zfJNp.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3522&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_01(검색일: 2024.04.15.)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4711&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ea%b7%bc%eb%8c%80%ec%97%ad%ec%82%ac%eb%ac%b8%ed%99%94%ea%b3%b5%ea%b0%84&sdate=&edate=&category=&mn=NS_01_02(검색일: 2024.04.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공개 홈페이지. https://openfinance.seoul.go.kr/jongno/budgetbybusiness?mngId=4&localGovCd=01(검색일: 2024.05.10.)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k-seowon.or.kr/?act=main(검색일: 2024.05.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knou.ac.kr/knou/738/subview.do?epTicket=LOG(검색일: 2024.05.10.)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 생활시설 및 정착마을. http://www.khwa.or.kr/sub.asp?maincode=482&sub_sequence=531&sub_sub_sequence=(검색일: 2024.04.30.)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국유부동산정보. https://www.k-pis.go.kr/selectBasSerList.do#none(검색일: 2024.02.22.)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국유재산 현황. https://www.k-pis.go.kr/addNpSituView.do(검색일: 2024.02.22.)

SUMMARY

A Study on Measures for Designating Sorokdo as Cultural Heritage

Park, Ilhyang
Shin, Chihoo
Son, Eun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scope of designation, custodians, and name, which were controversial in the designation of Sorokdo as Cultural Heritage.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Sorokdo Island, 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which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the second half of 2024, is the scope of the review.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eld trips, interviews and expert advice, we wanted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lternative and propose a road map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Sorokd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heritage type and the distribution of buildings, two measures were proposed: partial designation and step-by-step expans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national registration measur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system. For the custodians, the composi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was proposed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orokdo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reviewing alternatives raised through prior researches, interviews with the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 advice. Regarding the name, it was proposed to give the name which was propos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designation.

Keywords :
Sorokdo, Sorokdo National Hospital, National Land, Cultural Heritage, National Heritage, UNESCO World Heritage Site